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5년 제1호



2025. 6.

주요국의 조세동향

연구진

1부

감수	김문정	세정연구센터장
저자	오현빈	조세·개발협력팀장(요약 및 정책 시사점)
	김세인	선임연구원(프랑스, 캐나다)
	심태완	선임연구원(미국)
	송주영	연구원(일본, 중국)
	안정빈	연구원(중국, 호주)
김민준	위촉연구원(캐나다)	

2부

감수	박주철	세정연구팀장
저자	이희경	특수전문직 2급(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OECD)
	권정교	특수전문직 2급(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김재경	특수전문직 2급(프랑스, 룩셈부르크)
	박하얀	선임연구원(싱가포르)
	이미현	특수전문직 3급(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EU)
	정효림	특수전문직 3급(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문교현	특수전문직 3급(일본, 중국(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김현정	특수전문직 3급(스위스)
	장석민	연구원(미국, 호주, 뉴질랜드)

제1부

주요국의 세무행정 분야 AI 활용 현황

I 조사 개요 / 3

II 미국 / 5

- 1. 조사 개요 5
- 2. 세무행정 분야 AI 도입 현황 5
- 3. 분야별 AI 운영 사례 8
- 4. 운영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보호 13
- 5. 민관 및 국제협력 현황 16
- 6. 소결 16

III 프랑스 / 20

- 1. 조사 개요 20
- 2. 세무행정 분야 AI 도입 현황 20
- 3. 분야별 AI 운영 사례 24
- 4. 운영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보호 31

5. 민관 및 국제협력 현황 33
6. 소결 34

IV 캐나다 / 37

1. 조사 개요 37
2. 세무행정 분야 AI 도입 현황 37
3. 분야별 AI 운영 사례 39
4. 운영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보호 42
5. 민관 및 국제협력 현황 45
6. 소결 45

V 호주 / 50

1. 조사 개요 50
2. 세무행정 분야 AI 도입 현황 50
3. 분야별 AI 운영 사례 53
4. 운영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보호 57
5. 민관 및 국제협력 현황 61
6. 소결 63

VI 중국 / 66

1. 조사 개요	66
2. 세무행정 분야의 AI 도입 현황	67
3. 분야별 AI 운영사례	70
4. 운영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보호	76
5. 민관 및 국제협력 현황	78
6. 소결	82

VII 일본 / 87

1. 조사 개요	87
2. 세무행정 분야 AI 도입 현황	87
3. 분야별 AI 운영사례	91
4. 운영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보호	95
5. 민관 및 국제협력 현황	97
6. 소결	99

VIII 요약 및 정책 시사점 / 103

1. 주요 내용 요약	103
2. 시사점	109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북미 / 113

- 1. 미국 113
 - 가. 청정 전력 추가 세액공제 최종 규정 발표 113
 - 나. OECD 글로벌 조세협정 거부 114
 - 다. 2025년 세금 사기 사례(Dirty Dozen) 발표 115
 - 라. 내부고발자 사무국 운영계획 발표 116
 - 마. One Big Beautiful Bill 법안, 하원 통과 117
 - 바. 아칸소주(州) 전역에 재해세제 감면 적용 122
 - 사. 2026년 건강저축계좌(HSA) 납입한도 상향 123
- 2. 캐나다 124
 - 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일시 보류 124
 - 나. ‘탄소 리베이트’ 비과세 추진 125
 - 다. ‘세입법안’ 제출 126

II 유럽 / 128

- 1. 영국 128
 - 가. 2025년 봄 예산안 발표 128
 - 나. 에너지 이익 부담금 대체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 129
 - 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 초안 발표 130
 - 라. 이전가격 규정의 적용 범위를 중간 규모 기업까지 확장 조치 발표 131

목 차

마.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자 대상 보고지침 발표	132
2. 아일랜드	133
가. 비협조적 관할권 거주 법인에 대한 CFC 면제 부인 지침 발표	133
나. 혁신기업 투자에 대한 감면제도 신규 지침 발표	134
3. 프랑스	135
가. 고소득 자산가에 대한 재산세 도입 논의	135
4. 독일	136
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안 시행	136
나. 주거용 건물 에너지 관련 조치 세금 감면 증명서 통합	137
다.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B2B 전자 인보이스 의무화	138
라. 거래 매트릭스 관련 팩트 시트 발표	138
마. 연방 내각, 460억유로 규모의 기업 조세감면안 승인	139
5. 이탈리아	140
가.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VAT 규정 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 명령 발표	140
나. GloBE 정보보고서 제출을 위한 통지 절차 법령 발표	141
다. 중소기업 대상 부가가치세 특별 제도 관련 분기별 보고서 양식 승인	142
라. 연구 인력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143
6. 벨기에	143
가. OECD 기준 부합 내국 최저추가세액 신고서 초안 발표	143
나. 2025년 세제 개편안 발표	144
다. 저작권 소프트웨어 관련 혁신소득공제(IID) 절차 명확화	147
라. 세제 개편안 제출	149
7. 룩셈부르크	151
가.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액공제 규정 발표	151
8. 오스트리아	152
가. 2025년 「예산동반법」 초안 발표	152
9. 스위스	153
가. 주거용 부동산세 개정안 관보 게재	153

나.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교환 관련 논의 시작	154
10. 스페인	155
가. 「법인세법」 등 세법개정안 승인	155
나. 주택의 임대 및 취득 관련 세금 조치 발표	156
다. 2025년 세금 및 세관 통제 계획 발표	156
11. 포르투갈	157
가. 조세피난처 내 보유한 해외 자산 보고 의무화	157
나. 조세 간소화 조치 승인	158
12. 스웨덴	159
가. DAC8 이행에 관한 공개 협의 개시	159
나. 고용주를 위한 해외 근무 과세 개정안 제안	160
다. 대규모 그룹 내 기업 관련 추가 세법 개정안 발표	161
라.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ROT 공제율 한시적 인상 추진	162
13. 노르웨이	162
가. 관광객 대상 숙박세 도입 법안 발의	162
14. 덴마크	163
가. 각종 세법 개정안 관보 게재	163
나. OECD 행정지침 이행을 위한 세법 개정안 발표	165
다. 신규 녹색자산에 대한 추가 감가상각 허용 법안 협의	166
라. DAC8 이행을 위한 법안 도입	167
마. OECD 최저한세 이행 및 이전가격 간소화 개정안 발의	167
바. OECD 최저한세 지침 준수 및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 간소화	169
사. 주주 대출 과세 완화 및 지속적 용역공급 과세이연 허용	170
15. 핀란드	172
가. 2025년 세제 개편안 발표	172
16. 네덜란드	174
가. 2025년 세금 계획안 승인	174
나. 예정되었던 플라스틱세 취소	175
다. 2026년 세금 계획의 잠정 목록 발표	176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 178

1. 일본	178
가. 적격소재국 추가세 법안 의회 제출	178
나. 세무조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	179
다. 상속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록면허세」 면제 규정 적용기한 연장	180
라. 「방위특별법인세」 시행 발표	180
2. 중국	181
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세금 환급제도 전면 개선	181
3. 홍콩	182
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도입을 위한 법 초안 발표	182
4. 인도	183
가. 증산층에 대한 조세감면 예산안 제안	183
나. 「소득세법」 간소화 법안 의회 제출	184
다. 6% 균등화 부담금 제도 철회 추진	184
라. 1% 원천징수 대상인 사치품 목록(TCS) 발행	185
5. 싱가포르	186
가. 자발적 정보교환 관련 FAQ 발행	186
6. 인도네시아	187
가. 사치품에 대한 VAT 세율 인상,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사치세 인하	187
7. 호주	188
가. 임대용 건물 개발 인센티브 관련 지침 발표	188
나. 녹색 세액공제 법안 상원 통과	189
다. 감사원의 AI 거버넌스 권고안에 동의	190
라. 2025~2026 예산안 발표	191
마. 신규 창업자를 위한 캠페인 “Ready for Business” 발표	192

8. 뉴질랜드	193
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세법 통과	193
나. 체납세액 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 운영	195

IV 국제기구 / 196

1. OECD	196
가. 필라1 Amount B 이행을 위한 가격 자동화 도구 발표	196
나. 필라2 경과적격지위 목록 및 신고서 교환 MCAA 등 발표	197
다. BEPS Action 14 상호합의 절차에 대한 상호 검토 결과 발표	199
라. 필라1 Amount B 관련 통합 보고서 발행	200
마. GloBE 모델규정 통합 주석서 및 사례 보고서 업데이트	200
2. EU	202
가. 미국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최저한세법 개정 검토	202

제1부

주요국의 세무행정 분야 AI 활용 현황

〈표 1-II-1〉 IRS AI 추진 관련 주요 행정명령 및 메모랜덤	7
〈표 1-II-2〉 IRS의 AI 관련 기술 발전과정	9
〈표 1-III-1〉 EU 「인공지능법」 주요 내용	22
〈표 1-III-2〉 AI 적용 공공행정 시스템 관련 EU 및 프랑스 국내법 적용 구조	23
〈표 1-III-3〉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MEFSIN) AI 시스템 기능별 분류	23
〈표 1-III-4〉 조세범칙 식별 및 쿼리 분석 시스템(CFVR) 활용 관련 법령 재·개정	25
〈표 1-III-5〉 AI 시스템 관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EU 및 프랑스 국내법 적용 구조	33
〈표 1-V-1〉 ATO AI 활용 주요 제도적 기반	52
〈표 1-V-2〉 ATO A&AI 전략 수립	59
〈표 1-V-3〉 ATO 데이터 윤리 원칙	61
〈표 1-VI-1〉 금세IV기 프로젝트 주요 내용	68
〈표 1-VI-2〉 BRITACOM 주요 활동	81
〈표 1-VII-1〉 일본 AI 제도적 기반	90
〈표 1-VII-2〉 챗봇이 받은 질문 수	94
〈표 1-VIII-1〉 국가별 세무행정 AI 기술 도입 현황 비교	103
〈표 1-VIII-2〉 국가별 세무행정 AI 기능별 분류	105
〈표 1-VIII-3〉 국가별 세무행정 AI 운영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비교	107
〈표 1-VIII-4〉 국가별 세무행정 AI 기술 협력·파트너십 요약	108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표 2-I-1〉 One Big Beautiful Bill 제11장 구성 요약 120

제1부

주요국의 세무행정 분야 AI 활용 현황

[그림 1-II-1] IRS 챗봇 서비스 화면	13
[그림 1-III-1] 미신고 건축물 적발 시스템(Foncier Innovant) 구조	28
[그림 1-IV-1] 캐나다 국세청(CRA) 챗봇 서비스 화면	41
[그림 1-V-1] ATO 챗봇 ‘알렉스(Alex)’ 화면	56
[그림 1-V-2] ATO AI 전담부서 조직도	58
[그림 1-VI-1] 중국 12366 세무서비스 플랫폼 챗봇 샤오후이	73
[그림 1-VI-2] 중국 세무국 내 AI 탑재 세무 로봇 도입	75
[그림 1-VI-3] 중국 선전시세무국 납세자 학당 AI 라이브 방송	76
[그림 1-VI-4] BRITACOM 위원회 회의	81
[그림 1-VII-1] 일본 「세무행정 미래비전 2023」 모식도	89
[그림 1-VII-2] 일본 국세청 챗봇 ‘후타바’	94
[그림 1-VII-3] ‘국세전문관 B’ 채용 공고	96



제1부

주요국의 세무행정 분야 AI 활용 현황



I

조사 개요

- ▾ 디지털 전환 및 국제조세 환경의 복잡성,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전환은 단순한 과세 논리나 기술의 발전을 넘어, 조세행정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함

- ▾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세무행정의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각국의 세무당국은 AI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의 고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 주요 선진국에서는 올바른 조세분야 AI 기술 활용에 필요한 디지털 플랫폼 개발, 정책, 법안, 행정명령 발표 등을 토대로 지속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중임
 - ▶ 각국 국세청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세무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탈세를 예방하며,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함
 - 국가별 세부적인 AI 기반 기술사항은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세무조사 지원, 과세당국 내부행정 효율화, 챗봇 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음

- ▾ 이에 2025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반기보고서(주요국의 조세동향 Part I)는 OECD 회원국 및 비회원 협력국을 중심으로 세무행정 분야 AI 활용 사례에 대하여 최근 몇 년간의 논의와 발전 현황을 정리함
 - ▶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회원국 중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호주의 사례와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을 선정하여 동향을 조사함
 - ▶ 국가별 AI 기술의 발전 속도, 세무행정 시스템 및 관련 조직의 운영 체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행정지침 및 법제 수립 수준이 상이하기에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 동 보고서의 조사방식은 각 정부의 공식 자료, 특히 과세관청이나 유관기관에서 발간한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하였으며, 이 외에도 발표된 보도자료, 전략지침 및 법령, 각종 국제기구 자료와 학술 문헌을 기반으로 현황을 조사함
 - ▶ 다만 중국의 경우, 정보 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국내 자료 대비 해외 자료를 다수 활용함

- ▣ 조사 내용은 각 국가의 세무행정 AI 기술의 도입 배경, 주요 활용 사례 및 정책 지원 구조, 개인정보보호 이슈, 관련 파트너십 운영, 주요 성과 및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마지막으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함
 - ▶ 각 국가별로 ▲ 조사 개요 ▲ 세무행정 분야 AI 도입 현황 ▲ 분야별 AI 운영 사례 (세무조사, 내부행정 효율화, 대민서비스) ▲ 운영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보호 ▲ 민관 및 국제협력 현황 ▲ 소결로 구성하여 정리함
 - ▶ 해외 주요국의 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한국에 적용할 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II 미국

조사담당자: 심태완 선임연구원

1 조사 개요

- ▣ 본 장에서는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을 세무행정 분야에 어떻게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IRS 및 미국 정부 산하 감사기관에서 발간한 공식 보고서를 주요 내용으로 함¹⁾
 - ▶ IRS는 2023년 4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기반으로 향후 10년간 조직 혁신과 AI 기술 도입의 방향성을 담은 중장기 전략 보고서를 발행함
 - ▶ 미국 재무부 산하 감사기관인 조세행정총괄 재무감사관(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 TIGTA)은 2024년 11월, IRS 내 AI 관련 조직·프로젝트 관리 체계 및 데이터 보호 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함
 - ▶ 이 외에도 IRS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및 정책 브리핑 자료, IRS 관련 행정명령 및 메모 랜덤, 연차별 성과보고서, 관련 연구논문을 참고하여 세무행정 분야에 AI 도입 현황을 분석하였음

2 세무행정 분야 AI 도입 현황

- ▣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도입 초기) IRS는 세무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에 AI 기술을 처음 도입한 이후,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AI 기술로 점차 활용 범위를 확대해 옴

1) 미국 국세청(IRS), Inflation Reduction Act Strategic Operating Plan FY2023-2031, 2023; 조세 행정총괄 재무감사관(TIGTA), Governance Efforts Should be Accelerated to Ensure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24.

- ▶ 특히 2010년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과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시행으로 소득세 신고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IRS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성과를 제고하기 시작함
 - ▶ 이후 IRS는 전자신고의 증가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0년대 중반부터는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하기 시작함
- ▣ (AI 기술의 확대) IRS에서의 AI 기술 확산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으로부터 확보된 대규모 예산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었음²⁾
- ▶ 해당 예산은 노후화된 시스템 개선, 데이터 인프라 구축, 분석 플랫폼 현대화뿐 아니라 AI 기술의 전면적인 확산에 투입됨
 - ▶ IRS는 IRA 예산을 바탕으로 2023년 ‘전략운영계획(Strategic Operating Plan)’을 수립하고, AI 기술을 통한 국세행정 혁신의 중장기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
 - 해당 계획에서는 향후 10년간 고위험 납세자 선별, 납세자 서비스 디지털화, 내부 운영 자동화 등을 AI 기술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전략 목표가 포함됨
 - 실제로 IRS는 2020년 이전까지 총 19건의 AI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으나, 2023년 한 해에만 19건의 신규 AI 프로젝트를 새롭게 착수할 만큼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졌음
- ▣ (AI 도입 관련 제도) 이러한 IRS의 AI 도입 추진은 연방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 미국 행정부는 연방기관 내 AI 기술 활용 확대에 따른 윤리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표함
 - ▶ AI 기술의 활용 확대와 관련된 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운영지침은 백악관 예산 관리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메모랜덤을 통해 수립·제시되고 있음

2) TIGTA, 2024, p. 6.

〈표 1-II-1〉 IRS AI 추진 관련 주요 행정명령 및 메모랜덤

구분	문서번호	발표일	주요 내용
행정명령	13859	2019. 2. 11.	- '미국의 인공지능 선도적 지위 유지 ¹⁾ '를 주요 목적으로, AI 관련 기술 발전과 적용을 촉진하고 차세대 AI 인재 양성 방안 등을 포함함
	13960	2020. 12. 3.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연방정부 내 활용 촉진 ²⁾ '을 주요 목적으로, AI 도입 시 개인정보 및 시민권 보호 원칙에 기반한 책임성 확보를 강조함 - IRS를 포함한 모든 각 기관은 AI 활용 사례(AI Use Case)를 공식 등록하고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요구됨
	14179	2025. 1. 23.	- '미국의 AI 리더십을 위한 장벽 제거 ³⁾ '를 통해 기존 AI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의 AI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방안을 포함함 - 이전의 관련 「행정명령 14110」을 「행정명령 14148」로 폐지하고 이를 대체함 ⁴⁾
메모랜덤	25-21	2025. 4. 3.	- 정부의 AI 활용 가속화를 위한 혁신, 거버넌스, 공공 신뢰 구축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 - 이전 「행정명령 14110」 관련 지침인 「메모랜덤 24-10」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함
	25-22	2025. 4. 3.	- 부처 간 협업 강화, AI 위험 및 성과관리, 경쟁력 있는 AI 시장 조성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함(「메모랜덤 24-18」 보완) - 이전 「행정명령 14110」 관련 지침인 「메모랜덤 24-18」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함

주: 1)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2) Promoting the Use of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ederal Government

3)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4)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이전 행정부의 행정명령 및 조치 78건을 일괄 폐지함

자료: TIGTA 2024, 2025 보고서, 미국 국세청 내부 문서(RAAS-10-0325-0001) 기반 저자 작성

▣ (제도 외 모니터링) IRS의 AI 도입은 연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속에서 추진되고 있음

▶ GAO와 TIGTA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공공 부문 내 활용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책임 있는 AI 사용과 제도 준비의 필요성을 주제로 다양한 감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AI: 연방 및 기타 조직 대상 책임성 프레임워크³⁾' 보고서에서는 책임감 있는 거버넌스, 데이터 품질, 성과 평가, 지속적 모니터링 등 AI 관리·감독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함

3) Artificial Intelligence: An Accountability Framework for Federal Agencies and Other Entities, 2021.

- ‘AI: 연방기관의 도입과 주요 요건 충족의 필요성’⁴⁾ 보고서는 AI 거버넌스와 혁신,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함
- ‘AI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⁵⁾ 보고서는 IRS의 AI 기술 활용 현황과 관련 정책·거버넌스 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및 AI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함

3 분야별 AI 운영 사례

- ▣ (IRS AI 프로젝트 현황) IRS는 2008년에 처음으로 AI를 세무행정에 도입한 이후, 2024년 2월 2일 기준으로 총 30건의 AI 관련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38건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음

 - ▶ 전체 68개의 프로젝트는 세무 집행 역량 강화(27건), 내부 운영 효율화(29건), 납세자 편의 제고(12건) 등으로 목적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 ▣ (IRS AI 기술 발전 과정) IRS는 추진 중인 AI 관련 프로젝트를 기술적으로 ▲ 업무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 지능형 자동화(Intelligent Automation) ▲ AI 및 분석기법 활용(Use of AI and Analytics)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 IRS의 AI 기술 활용은 초기 업무 자동화 단계에서 출발하여 자연어 처리 등 지능형 자동화를 거쳐,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분석 및 머신러닝 기법 활용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음
 - ▶ 다만 현재 OMB는 「메모랜덤 25-21」을 통해 사람이 정의한 규칙을 따르거나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은 엄밀한 의미에서 AI 기술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표 1-II-2>는 이러한 AI 기술 발전 과정을 도입 목적과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4) Artificial Intelligence: Agencies Have Begun Implementation but Need to Complete Key Requirements, 2023.

5) Governance Efforts Should Be Accelerated To Ensure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24.

〈표 1-II-2〉 IRS의 AI 관련 기술 발전과정

AI 기술 유형	도입 목적	주요 내용
업무 자동화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	- 대량·반복적인 노동집약적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RPA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오류 감소, 내부 통제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남
지능형 자동화	챗봇 및 자연어 처리 기반 자동화	- 납세자를 위한 챗봇을 개발하여 납부 관련 질의 등에 대해 자가 응답 서비스를 제공함
AI 및 분석기법 활용	대규모 파트너십 및 고액 납세자 대상 분석	- AI와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고위험 납세자의 행태와 변화 흐름을 분석하고, 세무조사 확대에 활용 중임

자료: TIGTA, 2024 보고서 기반 저자 작성

가 세무조사

- ▣ (사례 선별) IRS에서는 세무조사 및 징수 업무에서 위험도 예측과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AI를 활용하고 있음

 - ▶ 대표 사례로 ‘서식 1040 분류모델(Issue Recommender F1040 Classification Model)’이 있으며, AI 기반 분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 중 이상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고 감사 인력 배정의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제안하고 있음⁶⁾
 - 과거에는 직원들이 신고서를 일일이 검토해 감사 대상과 의심되는 사례를 선정해야 했으나, 본 모델 도입을 통해 분류 작업이 자동화되어 업무 처리 기간을 수주에서 수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였음⁷⁾
 - 본 모델은 현재 IRS의 중소기업/자영업국(Small Business/Self Employed Division)에서 실질적인 감사 업무에 적용되고 있음
- ▣ (신고 오류 및 탈루 가능성 식별) IRS는 AI를 활용하여 신고 오류 및 탈루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통해 세무집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함

6) TIGTA, 2024, p. 7.

7) IRS, 2021(b), p. 40.

- ▶ IRS는 2015년부터 환급검토 프로그램에 AI 및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부당 환급 사례를 조기에 탐지하고 있음⁸⁾
 - 해당 시스템은 신고 단계에서 사기 가능성이 있는 환급 건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차단하며, 이를 통해 IRS는 2021년까지 약 130억달러(약 18조 726억원⁹⁾)의 부당 환급을 사전에 방지한 것으로 보고됨
- ▣ (표본조사) 매년 무작위로 납세자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표본조사(National Research Program)에서도 IRS는 AI 기반 표본추출 모델을 시범 도입하여 운영 중임¹⁰⁾
 - ▶ 본 모델은 신고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표본을 기존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파일럿 결과 실제로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서를 더 효과적으로 식별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세수 추계 정확도 제고, 과다·과소지급 오류 탐지, 납세자 행태 분석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기여하고 있음¹¹⁾
 - ▶ IRS는 고소득자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감사 대상 선정 모델의 도입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소득·고자산 개인으로부터 약 5억 2천만달러(약 7,229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함¹²⁾

나 내부행정 효율화

- ▣ (자료 검토 자동화) IRS는 AI 및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내부 행정업무의 생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음
 - ▶ 대표 사례로는 항소 자료 검토 시스템(Appeals Case Memorandum)이 있으며, 자

8) IRS, 2021(a), p. 14.

9) 이후 국가별 환율은 2025년 8월 13일 환율 기준임.

10) GAO, 2024, p. 2.

11) TIGTA, 2024, p. 7.

12) IRS, "IRS releases Strategic Operating Plan update outlining future priorities; transformation momentum accelerating following long list of successes for taxpayers," <https://www.irs.gov/newsroom/irs-releases-strategic-operating-plan-update-outlining-future-priorities-transformation-momentum-accelerating-following-long-list-of-successes-for-taxpayers>, 검색일자: 2025. 5. 30.

언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항소심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자동 요약하고 있음¹³⁾

- ▶ 본 시스템은 결정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법적 쟁점, 판례, 결과 등을 추출·분석함으로써 유사 사건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항소 담당자의 사례 분석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조사 및 판단의 일관성과 품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내부 직원 역량 강화) IRS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부 직원의 다국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계번역 시스템(Machine Translation Project)을 도입하여 운영 중임¹⁴⁾

- ▶ 해당 시스템은 상용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기존 문서의 텍스트를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번역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 IRS는 본 시스템을 통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내부 직원의 문서 이해도 및 다국어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포용적인 납세자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함

다 ▶ 대민서비스

▣ (납세자 문의 대응) IRS는 국민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기관으로서 납세자 서비스 접근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 현재 운영 중인 12건의 대민서비스 관련 AI 프로젝트 중 10건은 IRS 웹사이트 또는 전화 음성응답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챗봇(Chatbot) 또는 음성봇(Voicebot) 형태로 구현되어 있음¹⁵⁾
- ▶ 대표 사례로는 환급 및 세액공제 관련 챗봇(Wage and Investment Refunds Chatbot Project)이 있으며, IRS 웹사이트를 통해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실시간 응답을 제공하고 있음

13) TIGTA, 2024, p. 22.

14) IRS, 2023(a), p. 1.

15) TIGTA, 2024, p. 9.

- IRS 챗봇은 생성형 AI가 아닌 사전 정의된 질문·응답 흐름도에 기반하여 작동하며, AI는 납세자의 자유 형식 질문을 적절한 응답과 정확히 매칭하는 역할을 수행함
- 중소기업/자영업국은 납부 관련 챗봇을 통해 납세자에게 즉시 납부, 분할 납부 계획 수립, 구제 신청 절차 등 다양한 납부 옵션과 정보를 안내하고 있음
- ▶ IRS는 주요 전화 상담라인에도 음성봇을 도입하여 납부 또는 고지서 관련 단순 문의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응답하고 있음¹⁶⁾
 - 자녀세액공제(Advance Child Tax Credit) 및 경기부양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 관련 전화 라인에 음성봇을 적용하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안내에 음성봇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도입 효과) IRS는 챗봇과 음성봇 도입을 통해 단순문의 응대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적 자원을 절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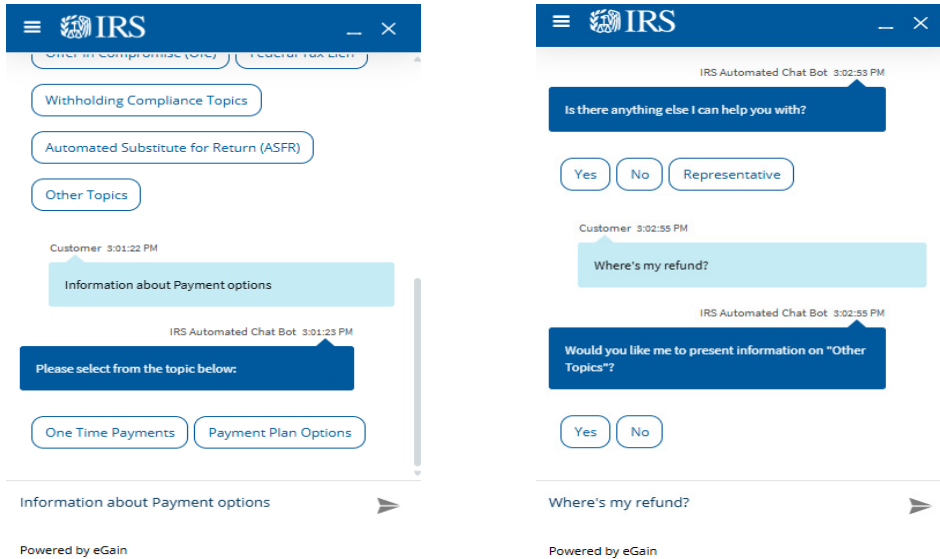
- ▶ 2023년 세금 신고 기간 중 대표전화의 평균 대기 시간을 기존 28분에서 3분으로 대폭 단축하였으며, 고객서비스 만족도 역시 87%까지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음¹⁷⁾
- ▶ 2024년 기준 챗봇 이용 건수는 83만 2천건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하였으며, 음성봇 기반 콜백 옵션을 통해 납세자의 전화 대기 시간을 총 140만시간 이상 절감한 것으로 나타남¹⁸⁾

16) IRS, "New voice bot options mean faster service and less wait time for taxpayers," <https://www.irs.gov/newsroom/new-voice-bot-options-mean-faster-service-and-less-wait-time-for-taxpayers>, 검색일자: 2025. 5. 28.

17) IRS, "Inflation Reduction Act 1-year report card: IRS delivers dramatically improved 2023 filing season service, modernizes technology, pursues high-income individuals evading taxes," <https://www.irs.gov/newsroom/inflation-reduction-act-1-year-report-card-irs-delivers-dramatically-improved-2023-filing-season-service-modernizes-technology-pursues-high-income-individuals-evading-taxes> 검색일자: 2025. 5. 28.

18) IRS, "IRS delivers strong 2024 tax filing season; expands services for millions of people on phones, in-person and online with expanded funding," <https://www.irs.gov/newsroom/irs-delivers-strong-2024-tax-filing-season-expands-services-for-millions-of-people-on-phones-in-person-and-online-with-expanded-funding>, 검색일자: 2025. 5. 30.

[그림 1-II-1] IRS 챗봇 서비스 화면



자료: IRS, <https://www.irs.gov/payments>, 검색일자: 2025. 5. 30.

4 운영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보호¹⁹⁾

가 운영 거버넌스

- ▣ (AI 도입 초기) IRS는 초기 AI 도입 당시 별도의 전담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지 않고 기존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체계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왔음
 - ▶ 그러나 AI 기술의 특성과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독립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1년 빅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OCA를 창설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음²⁰⁾

19) IRS, "Organization, Finance, and Management," <https://www.irs.gov/irm/part1>, 검색일자: 2025. 5. 30. 참고하여 작성

20) 정규연, 2021, p. 43.

- OCA는 환급 사기와 신분 도용 방지 등 주요 탈세 대응 업무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AI 기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함

▣ (RAAS 조직의 출범) 이후 IRS는 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전체의 연구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1월 기존의 연구·분석·통계 부서(Research, Analysis, and Statistics, RAS)와 OCA를 통합하여 연구·응용분석·통계 부서(Research, Applied Analytics, and Statistics, RAAS)를 공식 출범함

▶ RAAS는 IRS의 핵심 연구 및 분석 조직으로서 계량모형, 예측분석, 준수연구, 입법 영향 평가 등을 통해 기관 전체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6개의 주요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²¹⁾

▶ RAAS는 각 사업부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연구 운영 부서와는 구별되며, 전사적 또는 조직 간 영향력을 미치거나 IRS 전체의 요구와 책임을 반영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둠

- 각 사업부 내 연구 기능과 협력하여 정보 및 분석 기법을 공유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함

▣ (전략위원회 및 자문그룹 구성) 2019년에는 데이터 분석 운영모델을 수립하고, 데이터 분석 전략위원회(Data and Analytics Strategic Integration Board, DASIB)와 자문그룹(Data and Analytics Advisory Group, DAAG)을 구성하여 범기관적 협업과 전략적 목표 달성을 추진함

▶ DASIB는 데이터 및 AI 전략의 수립, 우선순위 조정,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의사결정 기구임

▶ DAAG는 각 부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IRS 내 데이터 관련 의사결정의 실행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함

▣ (AI 거버넌스 현황) IRS는 행정명령 13960호 발효 이후, AI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인 ‘데이터 및 분석 거버넌스 프로그램관리국(Enterprise Data and Analytics

21) 데이터탐색부(Data Exploration and Testing Division), 데이터관리부(Data Management Division), 지식개발부(Knowledg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Division), 소득통계부(Statistics of Income Division), 전략경영부(Stratgy and Business Solutions Division), 운영지원부(Management and Engagement Division)

Governance Program Management Office)'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²²⁾

- ▶ 해당 조직은 기존 거버넌스 체계와 구분되는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며, AI 정책 수립 및 운영지원을 전담하게 될 예정임
- ▶ IRS는 2025년 3월에 데이터 및 분석 최고책임자(Chief Data and Analytics Officer, CDAO)를 AI 책임 담당관(Responsible AI Official, RAIO)으로 공식 지정하고, IRS의 모든 AI 활용에 대한 책임 있는 거버넌스 및 승인 권한을 부여하였음
 - 이는 행정명령 13960 제8조(c)에 따라 연방정부 각 기관이 RAIO를 지정하도록 요구한 규정을 이행한 것으로, IRS는 해당 조항에 부합하는 조직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나 개인정보보호

- ▣ (개인정보보호) IRS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엄격한 법적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 납세자 데이터 사용은 승인된 연구 프로젝트에 한해 권한이 부여된 인력에게만 제한되며 반드시 검증된 데이터만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개인정보 정책을 다룬 규정에서는(IRM 10.5) 모든 AI 활용 사례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연방 세무 정보(Federal Tax Information) 및 개인식별 정보(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를 연방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GAO 및 TIGTA도 IRS의 AI 활용과 관련하여 정기적 감사를 수행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권고를 제시함

22) TIGTA, 2024, p. 16.

5 민관 및 국제협력 현황

- ▣ (민관 협력) IRS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 활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 IRS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은 2013년 데이터 마이닝 전문기업인 Palantir와 5년간 약 3천만달러(약 417억원)의 계약을 맺고, 조세 데이터를 네트워크화하여 탈세 패턴 식별에 활용하였음²³⁾
 - Palantir의 분석 소프트웨어는 IRS 수사관들이 1페타바이트(PB)가 넘는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복잡한 탈세 조직을 적발하는 데 기여함
 - ▶ 이후 2018년 약 1억달러(약 1,390억원) 규모의 7년 추가 계약을 통해 자료 탐색 및 데이터 마이닝 기법 등 분석 역량을 확대하였으며, 현재는 RAAS 부서에서 조사자료 검사(Investigative Data Examination Application), 사례 분석(Lead and Case Analytics), 신고 분석 프로그램(Return Review Program) 등 다양한 분석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음²⁴⁾

- ▣ (국제협력) 한편 IRS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와 탈세 대응을 위해 2018년부터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와 함께 글로벌 조세동맹(Joint Chiefs of Global Tax Enforcement, J5)을 체결하고 협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AI 기술 관련 국제협력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6 소결

- ▣ (IRS의 성과) IRS는 AI 기술을 세무행정 전반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기술의 고도화와 프로젝트 확산을 통해 세무조사·내부행정·대민서비스 등 주요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23) Bloomberg Tax, "Palantir Deal May Make IRS 'Big Brother-ish' While Chasing Cheats,"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palantir-deal-may-make-irs-big-brother-ish-while-chasing-cheats>, 검색일자: 2025. 5. 29.

24) 정규연, 2021, p. 46.

- ▶ AI 기술은 초기 단순 업무 자동화에서 출발해, 기계학습·자연어처리 등 지능형 분석 기술로 발전하며 활용 수준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
 - ▶ AI 프로젝트는 도입 초기 소규모 프로젝트로 운영되어 왔으나, 빠르게 확산되어 다양한 세무행정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 세무조사, 내부행정 효율화, 대민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 오류 탐지, 문서 자동 요약, 챗봇·음성봇 기반 민원 응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 ▣ (한계점) 다만 AI 기술 도입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기에 거버넌스, 개인정보보호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함
- ▶ TIGTA 감사 결과, IRS는 AI 프로젝트 전담조직 설립을 추진 중이나 아직 완비되지 않은 거버넌스 체계로 인해 전사적 수준의 책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음²⁵⁾
 - ▶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재무부 정보 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가 민감 데이터 보호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 해당 지침의 이행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데이터 활용·보호 간 균형이 과제로 남음²⁶⁾
- ▣ (보완 방향) IRS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AI 기술의 효율성뿐 아니라 윤리적 책임성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중심에 두고 2023년 ‘전략운영계획’을 수립함
- ▶ 2031년까지 총 42개의 중장기 과제를 설정해 AI를 세무행정 전반에 통합하는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고위험 납세자 선별, 디지털 납세자 서비스 확대, 내부 프로세스 자동화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함
 - ▶ 특히 ‘과제 4.7’을 통해 딥러닝 기반 세무 분석, 자연어 처리 기반 문서 처리, 기계번역 시스템을 통한 비영어권 납세자 대응 향상 등 AI 기술을 통해 납세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²⁷⁾
 - ▶ IRS 청장은 AI는 납세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IRS의 AI 도입 방향이 신뢰·책임·공공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줌

25) TIGTA, 2024, p. 18.

26) TIGTA, 2024, p. 14.

27) IRS, 2023(b), p. 98.

참고문헌

1. 문헌자료

정규언, 「빅데이터와 AI발전에 따른 세무행정의 대응: 국세청과 미국 IRS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세무학연구』, 제38권 제1호, 2021, pp. 41~67.

IRS, *Annual Key Insights Report: Fiscal Year 2021 Successes and Accomplishments*, 2021(a).

___,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 Annual Performance Report and Plan FY2021*, 2021(b).

___, *Taxpayer Accessibility Program Machine Translation, MT*, 2023(a).

___, *Internal Revenue Service Inflation Reduction Act Strategic Operating Plan*, 2023(b).

GAO, *Tax Gap IRS Should Take Steps to Ensure Continued Improvement in Estimates*, 2024.

TIGTA, *Governance Efforts Should be Accelerated to Ensure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24.

2. 행정명령 및 지침

미국, “Executive Order 13859: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___, “Executive Order 13960: Promoting the Use of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ederal Government”

___, “Executive Order 14148: Initi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

___, “Executive Order 14179: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___, “Memorandum 25-21: Accelerating Federal Use of AI through Innovation, Governance, and Public Trust”

___, “Memorandum 25-22: Driving Efficient Acquisi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Government”

3. 온라인 자료 및 데이터

Bloomberg Tax, “Palantir Deal May Make IRS ‘Big Brother - ish’ While Chasing Cheats,”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palantir-deal-may-make-irs-big-brother-ish-while-chasing-cheats>, 검색일자: 2025. 5. 29.

IRS, “IRS releases Strategic Operating Plan update outlining future priorities; transformation momentum accelerating following long list of successes for taxpayers,” <https://www.irs.gov/newsroom/irs-releases-strategic-operating-plan-update-outlining-future-priorities-transformation-momentum-accelerating-following-long-list-of-successes-for-taxpayers>, 검색일자: 2025. 5. 30.

___, “New voice bot options mean faster service and less wait time for taxpayers,” <https://www.irs.gov/newsroom/new-voice-bot-options-mean-faster-service-and-less-wait-time-for-taxpayers>, 검색일자: 2025. 5. 28.

___, “Inflation Reduction Act 1-year report card: IRS delivers dramatically improved 2023 filing season service, modernizes technology, pursues high-income individuals evading taxes,” <https://www.irs.gov/newsroom/inflation-reduction-act-1-year-report-card-irs-delivers-dramatically-improved-2023-filing-season-service-modernizes-technology-pursues-high-income-individuals-evading-taxes> 검색일자: 2025. 5. 28.

___, “IRS delivers strong 2024 tax filing season; expands services for millions of people on phones, in-person and online with expanded funding,” <https://www.irs.gov/newsroom/irs-delivers-strong-2024-tax-filing-season-expands-services-for-millions-of-people-on-phones-in-person-and-online-with-expanded-funding>, 검색일자: 2025. 5. 30.

___, “Organization, Finance, and Management,” <https://www.irs.gov/irm/part1>, 검색일자: 2025. 5. 30.

III 프랑스

조사담당자: 김세인 선임연구원

1 조사 개요

- ▣ 본 장은 2024년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및 국회 재정·경제·예산감사위원회(Commission des finances, de l'économie générale et du contrôle budgétaire)가 발표한 조세 및 재정분야 AI 활용 보고서를 주요 내용으로 함
 - ▶ 회계감사원은 2024년 7월,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Minist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et numérique, MEFSIN) 내 AI 도입과 정책성과를 평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였음
 - ▶ 프랑스 국회는 2024년 6월 공공재정총국(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DGFIP)의 세무조사 분야에서의 AI 활용 현황을 다룬 정보보고서를 발표함
 - ▶ 이 외에도 관련 법령 및 정부자료, 학술 문헌을 통해 최신의 정보를 보완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 현재 프랑스 정부는 조세 분야에서의 AI 시스템 도입 현황, 법제도, 재정규모 및 담당 조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 기술사항은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함

2 세무행정 분야 AI 도입 현황²⁸⁾

- ▣ (도입 배경) MEFSIN은 2010년대 초반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효율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018년 프랑스 정부의 '국가 AI 전략(Stratégie nationale pour l'intelligence artificielle, SNIA)' 채택에 따라 관련 투자를 더욱 활성화함

28) Cour des comptes, 2024.

- ▶ MEFSIN은 공공행정 부문의 AI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 및 공공지출의 통제를 목표로 함
 - ▶ 각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관리는 하위 기관 및 부서가 직접 소관하며, 2014년 DGFiP의 ‘조세범칙 식별 및 쿼리 분석(Ciblage de la fraude et valorisation des requêtes, CFVR)’ 시스템이 최초로 시행됨
- ▣ (일반 현황) DGFiP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MEFSIN 내 AI 시스템 개발 예산 약 6,630만유로(약 1,070억원) 중 91%를 지출하였으며, 총 35개 시스템 중 13개를 개발함
- ▶ MEFSIN은 개발 예산의 45.6%를 프랑스 정부의 ‘공공행정 혁신기금(Fonds pour la transformation de l’action publique, FTAP)’을 통해 조달하였으며 총 조달액 중 약 88%가 DGFiP 프로젝트에 사용됨²⁹⁾
 - FTAP는 부처별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에 공동자금(co-financing) 형태로 지원하며, 디지털 전환 및 AI 자동화 프로젝트를 우선 대상으로 함
 - ▶ 2023년 기준 MEFSIN의 AI 시스템 중 13개(37%)가 과세 및 조세범칙 방지 목적에 해당하였음
 - 모든 시스템은 DGFiP가 소관하며, 13개 중 6개가 개발 및 운영 중이고 7개는 타당성 검토 단계임
 - ▶ 조세분야에서의 AI 활용은 초기 세무조사, 세금신고 효율화 시스템 개발에서 법률 분석 지원, 지자체 회계관리 시스템 개선 등으로 확대 중임
- ▣ (법제도) 프랑스는 AI 기반 공공행정 시스템 개발에 있어 국내법 및 기관별 시행규칙의 제·개정에 근거하여 왔으며, 2024년 8월 EU의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이 발효되면서 프랑스에도 공통의 기준이 적용됨
- ▶ EU 「인공지능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으로, 적용대상 및 AI 시스템의 분류를 정의하고, 시스템 위험도에 따라 의무사항을 명시함³⁰⁾

29) 2017년 신설된 공공행정 혁신기금(FTAP)은 프랑스 정부의 대규모 투자계획(Grand Plan d’Investissement)의 일환으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및 행정 효율화, 정부 운영비 절감 및 성과기반 행정 강화 등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행정혁신 프로젝트에 보조 지원하였으며, 특히 디지털혁신, AI 기반 자동화, 업무 효율화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함.

30) EU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ai-act-explorer/>, 검색일자: 2025. 4. 11.

- 「인공지능법」은 AI 시스템의 사용 목적과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규제하며, 범용 AI 모델(general-purpose AI model)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무를 부과함
- AI 기술은 기본권 침해, 사회적 영향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위험 기반(risk-based)을 분류하며, 각 단계별 차등적인 규제가 적용됨
- ▶ 과세자료 및 개인정보 등 구체적인 데이터 처리를 포함하는 시스템은 기관별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관리하고, 그 외 AI 기반 시스템은 일반 법령에 근거함

〈표 1-III-1〉 EU 「인공지능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대상	EU 역내·외 AI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provider), 배포자(deployer), 수입·유통 업체 등
분류 및 규제	금지(unacceptable): EU 기본권 침해 위험 시스템 ¹⁾ - 원천 금지
	고위험(high risk): 의료, 공공서비스 등 핵심인프라 사용 시스템 - 적합성 평가 및 모니터링, 기본권 영향 평가(공공서비스 대상)
	제한적 위험(limited risk): 조작, 사칭 등의 위험 시스템(챗봇, 딥페이크, AI 생성 콘텐츠 등) - 사용자 대상 AI 기술 표기, 저작권 적용된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등
	최소 위험(minimal/low risk): AI 기반 일반 애플리케이션 - 별도 규제 없음
범용 AI 의무 ²⁾	투명성 의무, 기술문서 제공, 저작권 보호 의무 등
과징금 부여	(금지 시스템) 3,500만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의 7% (그 외) 1,500만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의 3% 등
적용시기	2024. 8. 1. 발효 및 2026. 8. 2. 전면 시행 예정

주: 1) AI 시스템의 기본권 침해는 개인 및 집단의 취약점 악용, 사회적 점수(social scoring) 도출, 개인의 범죄 가능성 예측, 직장 및 교육기관에서의 개인 감정의 추론,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 사용 등을 포함(제5조)

2) 범용 AI 모델은 그 출시 형태와 상관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AI 모델을 포괄하며, 기본적인 투명성 의무 및 위험 분류 대상 시스템에 통합되는 경우 해당 수준의 의무사항을 함께 따름

자료: EU 「인공지능법」 기반 저자 작성

〈표 1-III-2〉 AI 적용 공공행정 시스템 관련 EU 및 프랑스 국내법 적용 구조

구분	주요 내용
EU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2024)
프랑스	「행정절차법(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 제L311-3-1조 알고리즘 기반 행정결정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명시 신설(2016) 「예산법(Loi de finances)」, 행정규칙(Décret), 부처별 시행규칙(Arrêté) 등 관련 법령

주: EU법은 프랑스를 포함한 회원국의 국내법 보다 우선 적용함
자료: 해당 법령 기반 저자 작성

- ▣ (기능 분류) 프랑스 회계감사원(2024)은 MEFSIN의 AI 시스템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조세분야는 주로 텍스트 분석형·예측형·이미지 인식형 AI를 활용함
 - ▶ MEFSIN 내에서도 기관 간 AI 기술 공유는 제한적이나,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공통된 필요 기능에 대하여 시스템 공유 및 공동 개발이 이루어지는 추세임

〈표 1-III-3〉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MEFSIN) AI 시스템 기능별 분류

AI 기능별 분류	정의	DGFIP 활용 예시
텍스트 분석형(11)	신고서, 공문서, 법령 개정, 피드백 내용 분석	- 납세자 챗봇(AMI) - 예산 수정안 분석 (LLaMmendements)
예측형(10)	사기행위, 기업 재무위험, 부서 내부 IT 문제 예측	- 조세법칙 식별 및 쿼리 분석 (CFVR) - 정보시스템 이상감지 (AGATHE) - 중소기업 조기경보 시스템 (Signaux Faibles)
이미지 인식형(3)	사기행위 탐지 및 수기문서 디지털화	- 미신고 건축물 적발 (Foncier Innovant)
생성형(7)	민원 및 공무원 질의응답 지원	-
기타(4)	프로그래밍 코드 자동 변환 등	-

주: MEFSIN 내 AI 활용 시스템 35개를 기능별로 분류하였을 때, DGFIP의 주요 시스템은 텍스트 분석형·예측형·이미지 인식형에 해당함
자료: Cour des comptes, 2024; Trescher, 2025 기반 저자 작성

3 분야별 AI 운영 사례

가 세무조사

1) 조세범칙 식별 및 쿼리 분석 시스템(CFVR)³¹⁾

- ▣ (도입 배경) DGFIP는 2013년 AI를 활용한 CFVR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2023년 까지 총 3,450만유로(약 557억원)를 투입하여 개발을 완료함
 - ▶ 프로젝트는 납세자의 행동패턴을 모델링하고, 조세범칙 행위의 예방·탐지·적발·처벌의 전 과정의 체계화 및 정밀화를 목적으로 함
 - ▶ CFVR 시스템은 데이터 규모, 대상 납세자 등을 고려할 때, DGFIP의 가장 대표적인 AI 기반 세무행정 시스템임

- ▣ (적용 범위) 2014년 CFVR 개발 및 운영에 대한 DGFIP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래 적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모든 개인 및 법인의 조세범칙행위 식별에 CFVR 시스템이 활용됨³²⁾
 - ▶ CFVR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이상 징후와 사기 행위 탐지에 최초 사용됨
 - ▶ 현재 모든 개인 및 법인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과세용 자료 외에도 디지털 플랫폼 내 공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허용됨

31) Commission des finances, de l'économie générale et du contrôle budgétaire, 2024.

32) 프랑스 「조세범칙 행위 대응을 위한 자동화된 '조세범칙 식별 및 쿼리 분석' 개발에 대한 공공재정총국 시행규칙」,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28684963>, 검색일자: 2025. 4. 11.

〈표 1-III-4〉 조세법칙 식별 및 쿼리 분석 시스템(CFVR) 활용 관련 법령 재·개정

시기	주요 내용
2014	- 「조세법칙 행위 대응을 위한 자동화된 조세법칙 식별 및 쿼리 분석(CFVR) 개발에 대한 공공재정총국(DGFiP) 시행규칙」 제정
2015	-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서 기업과 재무적 관계가 있거나 일정한 지위를 보유한 개인(자연인) 까지 법칙행위 분석대상 확대
2017	- 일반 개인에 대한 법칙행위 분석 허용(2017) 및 분석대상 영구 적용(2019)
2020	- 과세관청의 온라인 플랫폼 공개정보 수집 분석 허용(「2020년 예산법」 제154조)
2024	- 기업 소득누락 및 불공정 경쟁 행위 탐지 목적 소셜미디어 데이터 수집, 활용 허용 (「2024년 예산법」 제112조)

주: 과세관청의 온라인 공개정보 수집 권한은 프랑스 예산법으로 별도 규정함
 자료: 해당 법령 기반 저자 작성

▣ (활용기술) CFVR 시스템은 전통적 리스크 분석(risk assessment)과 AI 기반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를 핵심 방식으로 활용하며, 두 결과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함³³⁾

- ▶ 쿼리 기반(query-based) 분석은 리스크 분석의 일환으로 사전에 설정된 규칙(rule)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탐지함³⁴⁾
 - 과세관청은 리스크 분석과 최종 세무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쿼리 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규칙을 개선함
- ▶ AI 분석은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을 통한 패턴 인식,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을 통한 이상 식별, 탈세자 간 관계망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등의 기법을 활용함³⁵⁾
- ▶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통해 수집 및 처리되며, 웹 스크래핑(web scraping), 퍼지 매칭(fuzzy matching), 그래프 데이터베이스(graph database),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등의 기술이 활용됨

33) 전통적 리스크 분석은 규칙 기반(rule-based) 방식에 기반하며, 데이터 사이언스 도입에 따라 학습 기반(learning-based) AI 분석 방식을 함께 적용함.
 34) 기본 규칙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질의)를 수행하여 특정 데이터를 추출 및 분석하며, 사후단계의 쿼리 최적화까지 포함함.
 35)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활용기술 중 하나로 지도 학습 및 비지도 학습을 포함함.

- ▣ (사용 현황) 2023년 전체 세무조사의 55.9%가 CFVR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되었으며, 이 중 환수액 실적은 전체 추징금 및 과태료의 13.8%였음
 - ▶ CFVR 기반 세무조사 비중은 2018년 13.9%에서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52.3%에서 2023년 55.9%로 3.6%p 상승함
 - ▶ 총 세무조사 건수는 2018년 3만 4,200건에서 2022년 11만 6,934건으로 약 3.2배 증가하였음
 - ▶ 2023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추징금 및 과태료 총 15.2억유로(약 2조 4,540억원) 중 CFVR 기반 환수액은 2.1억유로(13.8%, 약 4,341억원)로, 조사대상 선정 활용도에 비해 환수 실적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2) 세무조사 정보시스템(PILAT)³⁶⁾

- ▣ (도입 배경) DGFIP 2018년부터 세무조사 운영 효율화를 위한 ‘세무조사 정보시스템 (Pilotage et analyse du contrôle, PILAT)’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 DGFIP 내 다수의 AI 시스템 개발이 병행되면서 시스템 간의 이질성, 분절 등의 문제가 제기됨
 - ▶ PILAT 프로젝트는 세무조사 전 과정(기획, 조사, 징수, 소송)의 연속화, 내부 업무의 간소화 및 현대화, 세무조사 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분석 강화를 목표로 추진됨
- ▣ (활용기술) PILAT 시스템은 기능별 모듈(module)로 설계되어 있으며, CFVR 시스템 등과의 연계성을 통해 단계별 세무조사 절차에 활용됨
 - ▶ CFVR 시스템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하고, 해당 정보는 PILAT 시스템과 연동되어 모듈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 자동 배정됨
 - PILAT은 CFVR로 도출한 후보 목록을 지역, 우선순위, 조사분야 등 기준에 따라 적절한 세무공무원에 배정함
 - ▶ PILAT의 주요 모듈 중 하나인 ‘GALAXIE’는 CFVR 데이터를 기반으로 납세자 간 네트워크 및 자산 정보의 시각화에 활용됨

36) Trescher, 2025; Cour des comptes, 2024.

- GALAXIE는 2022년 DGFIP의 별도 시행규칙 근거하여 도입되었으며,³⁷⁾ 법인 및 개인 간의 재무·법률적 관계 등을 시각화함
- GALAXIE는 PILAT 프로젝트 산하에서 개발되었으나 기술적으로는 독립된 시스템으로, CFVR와도 직접 연동되어 과세정보 및 시각화 데이터를 교환함

▣ (개발 현황) PILAT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나 개발 일정의 지연과 예산초과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 초기 예산은 3,600만유로(약 581억원)였으나, 2024년 기준 1억 2,300만유로(약 1,986억원)를 초과하여 약 3배가 증가함
- ▶ 프랑스 국회 재정·경제·예산감사위원회(2024)는 이와 관련해 DGFIP 정보시스템 전반의 기술 부채(technical debt)를 지적하고, 구조적인 관리 대응을 권고함

3) 미신고 건축물 적발 시스템(Foncier Innovant)³⁸⁾

▣ (도입 배경) DGFIP는 2022년 미신고 건축물 적발 시스템인 ‘Foncier Innovant’을 도입하였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항공사진 분석을 통하여 재산세 신고 누락을 적발함³⁹⁾

- ▶ 본 프로젝트는 재산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및 지방정부의 직접세 세수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됨

▣ (활용기술) DGFIP는 AI 기반으로 공개 항공사진을 분석한 후 세무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해당 납세자에 통지 및 징수하는 절차를 따름

- ▶ 프랑스 국토정보청(Institut national de l'information géographique et forestière, IGN)이 제공하는 공개 사진을 활용하며, DGFIP 전용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에서 1차 연산 후 내부 보안망으로 전송하여 최종 분석함

37) 프랑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GALAXIE’에 대한 공공재정총국 시행규칙」,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5442868>, 검색일자: 2025. 4. 11.

38) DGFIP, 2022.

39) MEFSIN, “Détection des fraudes, analyse de données... : comment l'IA a fait son entrée à Bercy,” <https://www.economie.gouv.fr/actualites/detection-des-fraudes-analyse-de-donnees-comment-lia-fait-son-entree-bercy>, 검색일자: 2025. 4. 11.

- 1차 연산 시 건축물의 윤곽선 추출 등의 비식별 분석만을 수행하고 이후 내부 시스템에서 도시계획 자료 및 세금 신고 정보 등과 연계하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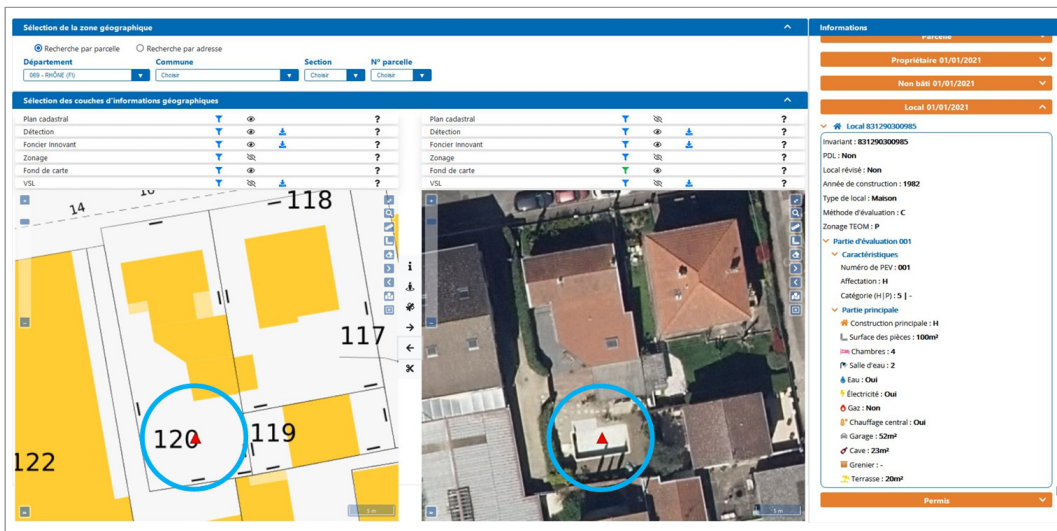
- ▶ AI 분석에서 이상 징후가 탐지될 경우 자동 분류되며 모든 분석 결과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여 최종 판단함

▣ (사용 현황) 2022년 일부 지역의 수영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약 14만건의 미신고 수영장을 적발함

- ▶ 시범운영 당시 2만건 이상의 미신고 수영장이 신규 과세대상으로 등록되었으며, 시스템 분석 정확도는 약 94%로 평가됨⁴⁰⁾

- ▶ 2023년 지방정부는 미신고 수영장에 대해 4,000만유로(약 646억원)의 재산세를 추가 징수하였으며, 향후 수영장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물에도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그림 1-III-1] 미신고 건축물 적발 시스템(Foncier Innovant) 구조



주: 건축물(수영장)의 도시계획도, 항공사진, 등록정보를 연계하여 분석함
자료: DGFiP, 2022.

40) MEFSIN, “Détection des fraudes, analyse de données... : comment l’IA a fait son entrée à Bercy,” <https://www.economie.gouv.fr/actualites/detection-des-fraudes-analyse-de-donnees-comment-lia-fait-son-entree-bercy>, 검색일자: 2025. 4. 11.

나 내부행정 효율화

▣ DGFIP는 세무조사 및 대민서비스 분야 외에도 내부의 행정 효율화를 위한 AI 시스템 개발 및 기관 간 공동 활용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AI 기술을 활용한 직원의 고부담 업무 대체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한 행정 효율화 등을 목표로 함

1) 예산 수정안 분석 시스템(LLaMandements)⁴¹⁾

▣ (도입 배경) DGFIP는 국회의 예산 수정안(amendement)의 검토 효율화를 위하여 대형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에 기반한 'LLaMandements' 시스템을 개발함

▶ 프랑스의 예산안은 국가재정운용 편성내역 외에도 세법개정안을 포함하며, 기존에 직원 수작업으로 수정안 검토를 처리하여 왔음

▣ (활용기술) LLaMandements 시스템은 메타(Meta)의 LLM을 기반으로 하며,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를 통해 텍스트의 이해 및 생성의 기능을 구현함

▶ 자동화를 통해 의미 분석(semantic analysis), 항목 식별 및 분류, 요약 등을 수행함

▣ (사용 현황) LLaMandements는 MEFSIN의 조세입법국(Direction de la législation fiscale, DLF)에서 2024년도 예산안 분석에 최초로 사용하였음

▶ 약 5,400건의 수정안이 자동 분류되었으며, 10분 미만의 처리 속도와 94%의 자동 귀속 정확도를 기록함

2) 중소기업 조기경보 시스템(Signaux Faibles)⁴²⁾

▣ (도입 배경) 중소기업의 재무 위험을 조기 감지하기 위한 'Signaux Faibles' 시스템은 프랑스 경제총국(Direction générale des entreprises, DGE)을 중심으로, DGFIP 등

41) Gesnouin et al., 2024.

42) Cour des comptes, 2024.

다수의 기관이 협력하여 개발함

- ▶ 이는 MEFSIN 산하의 DGE, DGFIP, 프랑스 통계청(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 외에도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사회보험 징수공단(Unions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URSSAF), 공공투자은행(Banque Publique d'Investissement, Bpifrance) 등 주요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함
- ▣ (활용기술) DGFIP는 과세정보 데이터를 제공하고 시스템 분석 결과를 통해 구조적 위기 징후를 보이는 납세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 Signaux Faibles 시스템은 DGFIP의 데이터 레이크(data lake)를 기반으로 하며, 현재 법인 및 사업자 정보는 220만건 구축되어 있음
 - ▶ 승인된 공무원은 보안 플랫폼을 통해 관할 지역 내 기업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기 기업에 대한 사전적 조치 및 추적이 가능함

다 대민서비스

- ▣ 현재 AI 기술이 조세분야 대민서비스에 활용되는 사례는 제한적이며, DGFIP는 민원 응대 및 피드백 분석의 일환으로 챗봇 서비스인 'AMI'를 운영 중임⁴³⁾
 - ▶ DGFIP는 2019년 민원 응답 자동화 시스템인 'e-contact'의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에는 대화형 챗봇 AMI를 도입함
- ▣ (활용기술) AMI는 납세자의 전자 민원에 대해 키워드 및 시나리오 기반(keyword-and scenario- based)으로 응답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AI 기능을 활용함
 - ▶ 기본 구조는 키워드 및 조건 기반 시나리오에 따라 링크 안내, 양식 연계 등을 제공함
 - ▶ 사전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납세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의도 분류(intent analysis), 문맥 이해(semantic analysis) 등 일부 AI 텍스트 분석 기능이 적용됨

43) MEFSIN, 2022.

- ▶ 납세자는 개인 메시지함(e-contact)에서 AMI에 접속할 수 있으며, 챗봇이 응답하지 못하는 문의는 메시지로 전환하여 직원이 수기 회신하는 구조임

▣ (사용 현황) 2021년 AMI 도입 이후 안정적인 사용 증가를 보였으며 세무 공무원의 민원 대응 편의성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⁴⁴⁾

- ▶ AMI는 2021년 도입 후 1년간 총 230만건의 대화를 처리하였고,⁴⁵⁾ 2022년에는 주당 최대 6만건의 대화가 발생함
- ▶ 다만 복잡한 질문이나 비정형의 민원에 대해서는 분석 효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4

운영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 보호

가 운영 거버넌스⁴⁶⁾

▣ (전담부서) DGFIP의 AI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구조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CFVR 시스템의 경우 2024년 4월 전담부서인 SJCF-1D를 신설함

- ▶ SJCF-1D는 법률 안정성 및 세무조사과(Service de la sécurité juridique et du contrôle fiscal, SJCF)의 하위부서로, CFVR 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를 전담함
 - 기존에는 DGFIP의 중앙 행정부서에서 관리하였으나 제도적 책임성 및 보안 강화를 위해 정식 조직으로 개편함
- ▶ SJCF-1D의 주요 업무는 납세자 쿼리 관리, AI 모델 개선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IT 인프라 및 데이터 관리 등으로 구성됨
 - 통계청(INSEE) 파견 직원을 포함하여 조세, 데이터 사이언스, IT, 통계 분야 전문인력 34명으로 구성됨

44) MEFSIN, 2022.

45) MEFSIN, "Impôts: bilan de la campagne de déclaration 2022 des revenus 2021," <https://www.economie.gouv.fr/impots-bilan-campagne-declaration-2022-revenus-2021>, 검색일자: 2025. 4. 11.

46) Commission des finances, "de l'économie générale et du contrôle budgétaire," 2024.

- ▣ 한편 프랑스 국회 재정·경제·예산감사위원회(2024)는 세무조사의 결정 및 데이터 중앙화의 측면에서 SJCF-1D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함
 - ▶ 현재 프랑스의 세무조사 방식은 지역별 데이터 분석 및 대상 선별 방식에서, 중앙의 분석 결과를 지역 세무서가 이행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
 - ▶ 이에 위원회는 SJCF-1D에 대한 독립 규제위원회 설치, AI 기술 편향 여부에 대한 정기적 검증, 지역 세무조사 조직의 재배치 등을 권고하였음

나 개인정보보호

- ▣ (법제도) 프랑스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2018년 시행된 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따르며, 이는 공공행정의 AI 기술 활용과 관련된 데이터 처리에도 적용됨
 - ▶ 「일반정보보호규정」의 제22조는 전적으로 자동화된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을 금지하며, 민감정보의 자동 처리에 대한 제한과 보호조치를 명시함
 - ▶ 프랑스는 2019년 EU 기준에 따라 국내법인 「정보, 자료 및 자유에 관한 법률(Loi Informatique et Libertés)」을 개정하였음
- ▣ (전담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집행 및 감독 권한은 독립기관인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에 부여되어 있으며, 부처별 시행규칙 등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여 준수함
 - ▶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있어 CNIL의 감독, 해당 기관의 사전 통지 및 정기보고 등 의무사항을 관련 법령을 통해 명시함
 - 예를 들어 과세관청이 과세를 목적으로 온라인 공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예산법」에 따라 세부 수집목적, 범위, 내용을 CNIL에 정기적으로 보고함⁴⁷⁾
 - ▶ DGFiP는 시행규칙을 통해 데이터 접근 권한의 제한과 의무사항을 자체적으로도 규정함

47) 프랑스 「2024년 예산법」에 따라 DGFiP 및 관세 및 간접세 총국(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DGDDI)을 포함함.

〈표 1-III-5〉 AI 시스템 관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EU 및 프랑스 국내법 적용 구조

구분	주요 내용
EU	「일반정보보호규정 (GDPR)」(2018): 제22조 자동화된 개별 결정에 관한 규정 포함
프랑스	「정보, 자료 및 자유에 관한 법률(Loi Informatique et Libertés)」: EU법 GDPR 이행을 위한 개정 및 시행(2019)
	「예산법」, 행정규칙, 부처별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등

자료: 해당 법령 기반 저자 작성

5 민관 및 국제협력 현황

- ▣ DGFIP는 자체 AI 시스템 구현에 있어 구글, 메타 등의 인프라 및 모델을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민간 기업과의 구체적인 협업 여부는 공개된 바 없음

- ▣ 한편 프랑스를 포함한 EU 주요국은 세무행정 정상회의(Tax Administration European Union Summit, TADEUS)를 통해 고위급 정책 합의, 중장기 전략수립(Multi-Annual Strategic Plan for Taxation, MASP-T), 공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함⁴⁸⁾
 - ▶ TADEUS는 EU 27개국 국세청장이 참여하여 조세분야 협력의 우선순위 및 신규 프로젝트 등을 설정함
 - ▶ 이 일환으로 EU의 세무행정 협력 프로그램인 ‘Fiscalis’ 등을 통해 실제 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함⁴⁹⁾
 - Fiscalis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약 2억 6,900만유로(약 4,341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세무행정 분야에서 국가 간 협업을 추진함

- ▣ 2024년 TADEUS 회의를 통해 AI 기술, EU 행정협력지침(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DAC) 데이터 활용, 디지털 보안이 핵심 협력분야로 선정함⁵⁰⁾

48) European Commission, “Tax Administration EU Summit (TADEUS),”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taxation/tax-transparency-cooperation/tadeus_en, 검색일자: 2025. 5. 15.

49) European Commission, “Fiscalis Programme,”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about-us/eu-funding-customs-and-tax/fiscalis-programme_en, 검색일자: 2025. 5. 15.

50) TADEUX, 2024; European Commission, 2024.

- ▶ 과세 목적의 AI 활용은 리스크 분석 및 납세자 서비스 활용에 해당함
- ▶ 관련해 국가 간 사례 공유 및 Fiscalis를 통한 공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 중이나 세부 공개된 사항은 없음

6

소결

- ▣ 프랑스는 세무행정 분야에 AI 기술을 활발히 도입해 왔으며, EU 차원의 디지털 전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 DGFIP는 MEDEF 산하 최초의 AI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세무조사, 과세 행정 효율화 등 AI의 활용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여 왔음
 - ▶ 최근 EU 차원의 AI 법체계가 구체화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한 신속한 반영 및 이행을 추진함
- ▣ 그러나 AI 기술을 공공행정 시스템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법체계의 복잡성과 시스템 간의 낮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등의 문제가 병존하고 있음⁵¹⁾
 - ▶ 프랑스는 국내법 제·개정을 통해 AI 관련 규율을 정비해 왔으나, 그 누적으로 인한 복잡성 및 중첩이 발생함
 - ▶ 또한 DGFIP 내부 시스템을 비롯해 부처 간 시스템 분절로 인한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시스템 연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 그 밖에 AI 시스템 개발의 확대 대비 DGFIP 내 기술 인재 확보 및 내부 역량 격차 해소가 향후 과제로 평가됨
 - ▶ DGFIP 전체 직원의 25%가 데이터 전문가이나 다수가 계약형 근무이며 공공기관 소속의 낮은 매력도로 고정 인력 확보가 어려움
 - ▶ 또한 중앙 조직과 지역 세무서 또는 직무 간 등 AI 기술 이해도 및 운용 역량 차이가 존재하여, 직원 재교육 및 균형 있는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제시됨

51) Commission des finances, de l'économie générale et du contrôle budgétaire, 2024.

참고문헌

1. 문헌자료

Bruno Trescher, “L’appréhension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par la fiscalité française”, *Studi Tributari Europei*, 14, I.13 - I.24, 2025.

Commission des finances, de l’économie générale et du contrôle budgétaire, *Rapport d’information sur l’usage des nouvelles technologies dans le contrôle fiscal*, 2024.

Cour des comptes, *Observations définitives - L’intelligence artificielle dans les politiques publiques: l’exemple du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2024.

DGFIP, *L’intelligence artificielle au service de la lutte contre la fraude: bilan de l’expérimentation « Foncier innovant »*, 2022.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Fiscalis programme Annual Progress Report 2023*, 2024.

Gesnouin et al., “LLaMandement: Large Language Models for Summarization of French Legislative Proposals”, *arXiv*, 2024.

MEFSIN, *Rapport N° 2022-M-034-05, Bilan du contrat d’objectifs et de moyens de la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a période 2020-2022*, 2022.

TADEUS, *TADEUS 2024 Outcomes Statement*, 2024.

2. 법령

EU,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____,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프랑스, 「2020년 예산법(Loi de finances)」

____, 「2024년 예산법(Loi de finances)」

____,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GALAXIE’에 대한 공공재정총국 시행규칙(Arrêté du 11

mars 2022 portant autorisation par la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du traitement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dénommé GALAXIE)」

- _____, 「정보, 자료 및 자유에 관한 법률(Loi Informatique et Libertés)」
- _____, 「조세범칙 행위 대응을 위한 자동화된 ‘조세범칙 식별 및 쿼리 분석’ 개발에 대한 공공재정총국 시행규칙(Arrêté du 21 février 2014 portant création par la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d'un traitement automatisé de lutte contre la fraude dénommé « ciblage de la fraude et valorisation des requêtes »)」
- _____, 「행정절차법(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3. 온라인 자료 및 데이터

- European Commission, “Fiscalis Programme,”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about-us/eu-funding-customs-and-tax/fiscalis-programme_en, 검색일자: 2025. 5. 15.
- _____, “Tax Administration EU Summit(TADEUS),”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taxation/tax-transparency-cooperation/tadeus_en, 검색일자: 2025. 5. 15.
- Maire Info(프랑스 시장협회), “Taxe foncière : la détection des piscines non déclarées a rapporté 40 millions d'euros au bloc communal,” <https://www.maire-info.com/taxe-fonciere-la-detection-des-piscines-non-declarees-a-rapporte-40-millions-d-euros-au-bloc-communal%EF%BF%BD-article2-28723>, 검색일자: 2025. 4. 11
- MEFSIN, “Détection des fraudes, analyse de données... : comment l'IA a fait son entrée à Bercy,” <https://www.economie.gouv.fr/actualites/detection-des-fraudes-analyse-de-donnees-comment-lia-fait-son-entree-bercy>, 검색일자: 2025. 4. 11.
- _____, “Impôts : bilan de la campagne de déclaration 2022 des revenus 2021,” <https://www.economie.gouv.fr/impots-bilan-campagne-declaration-2022-revenus-2021>, 검색일자: 2025. 4. 11.

IV 캐나다

조사담당자: 김세인 선임연구원, 김민준 위촉연구원

1 조사 개요

- ▣ 본 장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분야 AI 활용과 관련한 정책 기준, 법제도를 중심으로 세무행정 측면의 활용 사례를 다루고, 주요 주정부(퀘벡, 온타리오)의 대응을 함께 검토함
 - ▶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전략 및 정책 문서, AI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주정부 차원의 대응 현황을 비교함
 - ▶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의 세무행정 효율화 및 조직관리를 위한 AI 기술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국제협력 현황을 검토함
- ▣ 본 조사는 캐나다 정부의 공식자료 및 국제기구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함
 - ▶ 최신 현황 반영을 위하여 2024년 이후 업데이트된 공식 문서를 활용하였으나, 세부 시스템에 대한 공개 자료가 부재함
 - ▶ OECD 등 국제기구 자료 및 학술 문헌, 정책 보고서를 보조 자료로 활용함

2 세무행정 분야 AI 도입 현황

- ▣ (국가 전략)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7년 국가 차원의 AI 전략인 ‘범캐나다 AI 전략(Pan-Canadian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을 기점으로 AI 혁신과 책임 있는 도입을 위한 전략 발표를 꾸준히 제시해 오고 있음
 - ▶ 연방정부의 AI 전략은 1단계(연구·인재 양성)를 바탕으로 2단계(표준화·상업화·공공

부문 책임성)로 진화하고 있으며, 단순 연구를 넘어 다각적 생태계 조성 및 상용화 및 책임 있는 AI 확산에 집중하고 있음⁵²⁾

- ▶ 2025년 3월, 연방정부는 ‘공공서비스 AI 전략 2025-2027(AI Strategy for the Federal Public Service 2025-2027)’을 추가로 발표하여 공공부문의 AI 전략 및 책임성 강화를 추진 중임⁵³⁾

- 4대 우선순위로 중앙집중형 AI 역량, 정책·거버넌스, 인재, 투명성·시민참여를 설정함

▣ (연방 지침) 2019년 제정된 「자동화 의사결정 지침」은 AI 기술을 행정 의사결정에 활용함에 있어 모든 연방 부처 및 산하기관 간 일관된 기준과 책임 원칙을 제시함⁵⁴⁾

- ▶ 주요 원칙은 알고리즘 영향 평가(Algorithmic Impact Assessment, AIA), 투명성 및 데이터 품질 보증, 정보 출처 공개, 시스템 사용 기록 및 보고에 해당함

- AIA는 AI 기반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행정 결정에 사용하는 경우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사전평가이며, 예상되는 영향에 따라 수준별 대응 조치를 규정함⁵⁵⁾

- ▶ 투명성 원칙은 AI 시스템이 관여한 서비스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explanation)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를 포함함⁵⁶⁾

- 구체적으로 입력 데이터의 출처 및 수집방식, 데이터 평가 및 처리 기준과 절차, 시스템 결과 및 행정 결정 간의 관계,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 이의제기 및 구제수단을 포함함

- 이는 일반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부처별 AIA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함

52) Government of Canada, “Pan-Canadian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https://ised-isde.canada.ca/site/ai-strategy/en>, 검색일자: 2025. 6. 9.

53) Government of Canada, “AI Strategy for the Federal Public Service 2025-2027: Priority areas,” <https://www.canada.ca/en/government/system/digital-government/digital-government-innovations/responsible-use-ai/gc-ai-strategy-priority-areas.html>, 검색일자: 2025. 6. 9.

54) 캐나다 「자동화 의사결정 지침」

55) Government of Canada, “Algorithmic Impact Assessment tool,” <https://www.canada.ca/en/government/system/digital-government/digital-government-innovations/responsible-use-ai/algorithmic-impact-assessment.html>, 검색일자: 2025. 3. 31.

56) 캐나다는 생성형 AI(generative AI)와 구분하여 행정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AI 시스템의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 of AI)의 필요성을 강조함(Canadian Judicial Council, Guidelines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anadian Courts, 2024).

- ▶ 또한 AI 자동화 시스템을 의사결정에 사용하더라도 ‘휴먼 인 더 루프(human-in-the-loop)’에 따라 직원의 실시간 개입 및 검토, 최종 확인의 의무를 명시함⁵⁷⁾
- ▣ (주정부 지침) 캐나다 주요 주(퀘벡, 온타리오)는 연방정부의 지침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주 단위의 특성 및 요구에 맞춘 별도의 전략 및 지침을 수립함
 - ▶ 퀘벡 주정부는 ‘공공행정 AI 통합 전략 2021-2026(Stratégie d’intégration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dans l’administration publique 2021-2026)’을 수립하고, 핵심 조치로 공공기관의 AI 사용을 규제하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채택을 설정함
 - 생성형 AI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AI 시스템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 및 규제하는 필요성을 강조함⁵⁸⁾
 - ▶ 온타리오 주정부는 「AI 책임 사용 지침(Responsibl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irective)」을 2024년 12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 모든 주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AI 도입에 대해 위험관리, 투명성, 영향평가, 보고 의무 등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규정을 도입을 지향함⁵⁹⁾

3 분야별 AI 운영 사례

- ▣ CRA는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프로세스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체계화에 데이터 고도화 및 세무행정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음
 - ▶ 2019년부터 내부 행정 효율화 및 조직 관리를 위한 AI 기술을 도입해 왔으며, 2024년 기준 약 250여개의 AI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⁶⁰⁾

57) 의사결정 과정에 직원 개입 명시(section 6.3.11.)

58) Gouvernement du Québec, “STRATÉGIE D’INTÉGRATION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DANS L’ADMINISTRATION PUBLIQUE 2021-2026,” https://cdn-contenu.quebec.ca/cdn-contenu/gouvernement/SCT/vitrine_numeriQc/strategie_IA/Mesures_cles_IA_2024-2026.pdf, 검색일자: 2025. 6. 9.

59) Government of Ontario, “Responsibl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irective,” <https://www.ontario.ca/page/responsible-use-artificial-intelligence-directive>, 검색일자: 2025. 6. 9.

60) Young, 2024.

- ▶ 단 CRA의 구체적인 시스템 및 운영체계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가 세무조사

- ▣ CRA는 납세자 이상 행위의 탐지를 위해 리스크 분석을 활용하여 왔으며, 최근 클라우드 기반(cloud-based)의 머신러닝 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 중임⁶¹⁾
 - ▶ 세부 시스템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하되 2025년까지 AI 및 신기술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당 환급 및 공제된 소비세/판매세(Goods and Service Tax/ Harmonized Sales Tax, GST/HST) 총 2억 5천만캐나다달러(약 2,505억원)의 회수를 목표로함⁶²⁾

나 내부행정 효율화

- ▣ (업무 자동화) CRA는 세액공제 및 환급처리에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반복 업무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도입하여, 직원이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추진함⁶³⁾
- ▣ (납세자 관리) 또한 근로자 분류 자동화(automated worker classification)에 AI 기술을 활용하여 감사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납세자 신고 관리에 활용함
 - ▶ 근로자 형태를 피고용인(employee) 또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하여 관리함
 - ▶ 이는 규칙 기반 프로그래밍(rules-based programming)을 활용하여 규칙 집합이나 의사 결정 트리를 코드화하여 결과를 결정하는 기술을 활용함

61) Young,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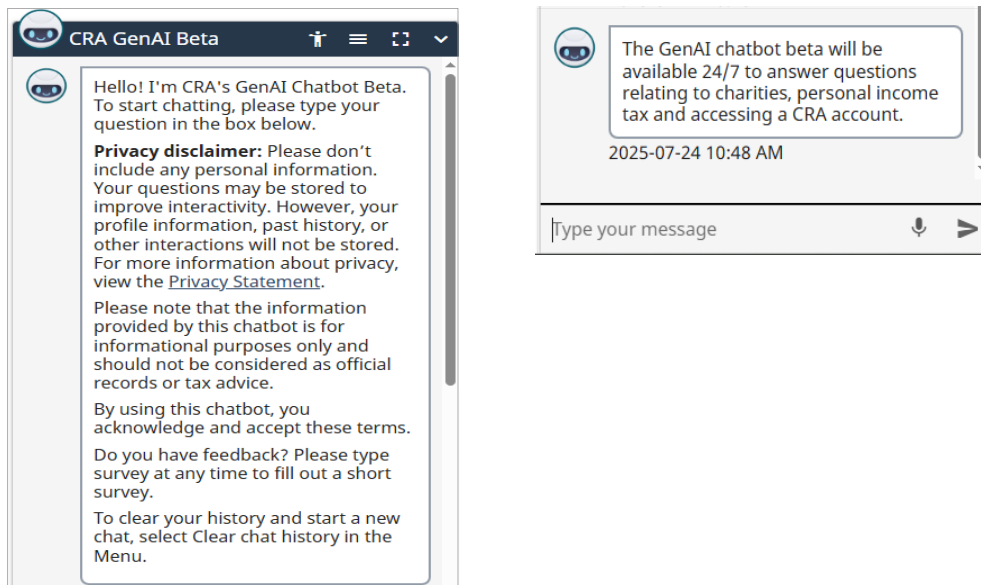
62) CRA, "Canada Revenue Agency's 2024-25 Departmental plan,"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corporate/about-canada-revenue-agency-cra/departmental-plan/2024-25-cra-departmental-plan.html>, 검색일자: 2025. 3. 31.

63) Young, 2024.

다 대민서비스

- ▣ AI 기반의 납세자 서비스로는 2020년 도입된 납세자 챗봇인 ‘Charlie’가 있으며, 2025년 3월부터 생성형 AI를 적용한 버전을 시범운영 중임⁶⁴⁾
 - ▶ 기존 챗봇은 납세자와의 대화에서 일부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최초 도입 후 2024년까지 약 1,250만건의 질의를 처리함⁶⁵⁾
 - ▶ CRA는 최근 생성형 AI 버전의 챗봇을 시범운영 중이며, 개인소득세, 자선단체 및 납세자 계정 관련에 한정하여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함
 -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한 일반 질의 데이터만 수집하며,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입력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 안내를 제공함

[그림 1-IV-1] 캐나다 국세청(CRA) 챗봇 서비스 화면



주: (좌) 생성형 AI 챗봇은 시범운영 사실 및 사용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입력 방지를 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함

(우) 현재 자선단체, 개인소득세, 납세자 계정 관련 서비스만을 제공함

자료: CRA,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html>, 검색일자: 2025. 7. 24.

64) CRA, “GenAI chatbot beta,”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corporate/contact-information/cra-chatbot/genai-chatbot-beta.html>, 검색일자: 2025. 3. 28.

65) Young, 2024.

4 운영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 보호

가 운영 거버넌스

- ▣ (연방기관) 캐나다의 국가 AI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은 혁신과학경제개발부(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ISED)가 맡고 있음⁶⁶⁾

 - ▶ ISED는 캐나다 고등과학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CIFAR), 3대 국립 AI 연구소(Amii, Mila, Vector Institute), 캐나다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Canada's Global Innovation Cluster) 등과 협력해 전방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가 핵심 AI 이니셔티브를 주도함
 - CIFAR는 ISED의 국가 AI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3대 국립 AI 연구소와 협력하여 주요 AI 사업을 수행 중임

- ▣ (과세관청 운영부서) CRA의 모든 시스템은 IT 부서가 담당하며 2022년부터 디지털 변혁 프로그램(Digital Transformation Program, DTP) 운영부서를 별도 운영하고 있음⁶⁷⁾

 - ▶ 기관 전반의 시스템 개발·운영 및 신기술 도입 등의 업무는 IT 부서가 담당함
 - 정규직 기준 IT 부서 인력 규모는 4,330명에 해당함
 - ▶ DTP는 CRA의 디지털 서비스 전략, 거버넌스 관리 및 대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함

- ▣ (주정부 기관) 주정부의 경우 연방정책을 기준으로 주별 자율적인 운영 거버넌스 체계를 지님

66) KOTRA, 「캐나다 인공지능(AI) 전략과 새로운 진출 기회」,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MENU_ID=280&CONTENTS_NO=1&pRptNo=13828#, 검색일자: 2025. 6. 11.

67) CRA,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governance,"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corporate/about-canada-revenue-agency-cra/ministerial-transition-2021/organization/organizational-structure-governance.html>, 검색일자: 2025. 7. 24.

- ▶ 퀘벡주는 주정부 산하 혁신위원회(Conseil de l'innovation du Québec, CIQ)와 디지털 전환 담당 부처가 AI 및 데이터 프로젝트의 윤리·투명성·공공 기준을 감독함⁶⁸⁾
- ▶ 온타리오주는 「AI 책임 사용 지침」 아래 각 부처 및 기관 자체의 내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⁶⁹⁾

나 개인정보보호

- ▣ (연방 운영지침) 캐나다는 2024년 기존의 관련 지침을 대체하는 「개인정보보호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시 포괄적 관리방안과 의무사항을 정의함⁷⁰⁾
 - ▶ 지침은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일관된 관리 방안과 공개 의무를 규정함
 - ▶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정확성, 공유, 보존·폐기 등을 비롯하여, 기관의 직원 교육, 침해 대응, 개인정보 영향 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PIA), 웹 분석 시 보호 기준, 기관 책임사항 등을 명시함
- ▣ (과세관청 시스템) CRA는 주요 연방지침에 따라 AI 활용을 내부 행정 보조에 한정하고 있으며, 데이터 보호를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함⁷¹⁾
 - ▶ 직원의 납세자 정보 오남용 방지와 이상 징후 식별을 위하여 'Monitoring of Electronic Access to Taxpayer Information'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⁷²⁾

68) Conseil de l'innovation du Québec, "Prêt pour l'IA : Le Conseil de l'innovation du Québec propose l'adoption d'une loi sur l'IA," 2024.

69) Government of Ontario, "Responsibl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irective," <https://www.ontario.ca/page/responsible-use-artificial-intelligence-directive>, 검색일자: 2025. 6. 10.

70) 「개인정보보호 운영 지침」은 기존의 「개인정보 영향 평가 지침(Directive on Privacy Impact Assessment)」을 대체하며 「개인정보법(Privacy Act)」 하위의 행정기관 지침임.

71) Young, 2024.

72) CRA, "Monitoring of Electronic Access to Taxpayer Information v3.0,"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about-canada-revenue-agency-cra/protecting-your-privacy/privacy-impact-assessment/monitoring-of-electronic-access-to-taxpayer-information-v3.html#Overview>, 검색일자: 2025. 3. 28.

- 이를 통해 납세자 정보에 접근 가능한 CRA 직원을 대상으로 접근 시점, 조회 정보, 직무 관련성, 이상 징후 및 타 직원과의 연관성 등을 모니터링함
- 직원의 정보 접근 기록은 자동 수집되며 분석 시스템에 의해 이상 접근으로 분류될 경우 경보가 발동되거나 계정이 비활성화됨
- 시스템 자체가 AI 기술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PIA가 실시됨

▶ 현재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이 행정 의사결정에 직접 사용된 바는 없음⁷³⁾

▣ (주정부 지침 1) 퀘벡주는 자체 법인 「개인정보 접근법(Loi sur l'accès)」에 제65.2조를 추가하여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에 기반한 의사결정에 대한 특별 규칙을 설정함⁷⁴⁾

▶ 이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 발생 시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요청 시 ▲ 결정에 사용된 개인정보의 종류 ▲ 결정에 이르게 한 주요 요인 및 논리 ▲ 개인정보 정정 요청 권리를 제공해야 함

▣ (주정부 지침 2) 온타리오주는 「디지털 보안 및 신뢰 강화법 2024(Enhancing Digital Security and Trust Act 2024)」의 신설과 「정보의 자유·개인정보 보호법(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의 주요 개정을 포함한 Bill 194를 2024년 5월 온타리오주 의회가 발의 및 공개함⁷⁵⁾

73) 현재 CRA에서 공개한 AIA 결과 없음.

74) Gouvernement du Québec, "Décision fondée exclusivement sur un traitement automatisé," <https://www.quebec.ca/gouvernement/travailler-gouvernement/travailler-fonction-publique/services-employes-etat/conformite/protection-des-renseignements-personnels/technologie-et-droit-a-la-protection-des-renseignements-personnels/decision-traitement-automatise>, 검색일자: 2025. 6. 10.

75) Law Commission of Ontario, "Law Commission of Ontario Submission To Government of Ontario Bill 194 Consultations," 2024.

5 민관 및 국제협력 현황

- ▶ 캐나다는 정부 차원의 민간 AI 활용 비즈니스 촉진 등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으나 세무행정 분야에서의 직접적인 협업 등은 공개된 바 없음
- ▶ 캐나다는 OECD 조세행정포럼(Forum on Tax Administration, FTA)이 주도하는 ‘Tax Administration 3.0’에 적극 참여하며 조세행정 디지털화를 주도함
 - ▶ ‘Tax Administration 3.0’은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실시간 자동화된 방식으로 정부와 납세자 간의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프레임워크임
 - ▶ 캐나다는 자문 및 견인 그룹(Advisory and Drafting Group, ADG)으로 디지털 전환 성숙도 모델, 글로벌 전자세금 계산서, 디지털 신원확인 등 주요 활동의 설계 및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음

6 소결

- ▶ 캐나다는 AI 분야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세무행정 분야도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함
 - ▶ 2010년대에는 국가 전략 및 관련 지침 제정과 연구개발에 집중하였으며, 2020년대 부터는 공공부문의 AI 활용 확대와 함께 구체적인 책임성·표준화 등을 강조하고 체계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음
 - ▶ 연방정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주정부도 방향을 함께하고 있으며, AI의 책임 있는 사용과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는 형태를 보임
- ▶ 관련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야의 적절한 전문인력의 고용 및 기존 인력의 역량 부족 등의 과제는 존재함
 - ▶ 캐나다는 ‘공공서비스 AI 전략 2025-2027’에서 연방정부 기준 AI 및 디지털 직무필요 인력 대비 30%가 공석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함⁷⁶⁾

- ▶ OECD는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캐나다의 AI 인재 채용이 둔화됨을 지적한 바 있음⁷⁷⁾
- ▣ 최근 캐나다 정부는 AI 활용을 통한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계획으로 재정비를 시사함
- ▶ 2024년 AI 분야 24억캐나다달러 규모의 투자 조치 방향성을 유지하여 주요 산업 AI 적용 가속화, 인력 교육, AI 및 데이터 관련 법 집행 강화를 목표로함⁷⁸⁾
- ▶ 관련 집행계획의 구체화에 따라 공공부문 AI 활용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한 기술 주권 확보가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음

76) Government of Canada, AI Strategy for the Federal Public Service 2025-2027: Priority areas, <https://www.canada.ca/en/government/system/digital-government/digital-government-innovations/responsible-use-ai/gc-ai-strategy-priority-areas.html>, 검색일자: 2025. 6. 11.

77) OECD,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Papers: AI Skills and Capabilities in Canada. Vol 35. 2025.

78) Prime Minister of Canada, Securing Canada's AI advantage, <https://www.pm.gc.ca/en/news/news-releases/2024/04/07/securing-canadas-ai>, 검색일자: 2025. 6. 12.

참고문헌

1. 문헌자료

- Conrad Young, “Tax and Technology: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Perspectives on Tax Law & Policy*, Vol. 5. 2024.
- OECD,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Papers: AI Skills and Capabilities in Canada,” Vol. 35. 2025.
- OECD Forum on Tax Administration. “Tax Administration 3.0 and Electronic Invoicing: Initial Findings,” 2022.

2. 법령

- 캐나다, 「개인정보보호 운영 지침(Directive on Privacy Practices)」
 _____, 「자동화 의사결정 지침(Directive on Automated Decision-Making)」
- 온타리오주, 「디지털 보안 및 신뢰 강화법 2024(Enhancing Digital Security and Trust Act 2024)」
 _____, 「정보의 자유·개인정보 보호법(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_____, 「AI 책임 사용 지침(Responsibl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irective)」
 퀘벡주, 「개인정보 접근법(Loi sur l'accès aux documents des organismes publics et sur la protection des renseignements personnels)」

3. 온라인 자료 및 데이터

- Canada 2020, “Getting Big Things Done: From Ambition to Action,” <https://canada2020.ca/>, 검색일자: 2025. 6. 13.
- CRA, “Canada Revenue Agency 2022-23 Departmental Plan,”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corporate/about-canada-revenue-agency-cra/>

- departmental-plan/2022-23-cra-departmental-plan.html, 검색일자: 2025. 7. 24.
- _____, “Canada Revenue Agency's 2024-25 Departmental plan,”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corporate/about-canada-revenue-agency-cra/departmental-plan/2024-25-cra-departmental-plan.html>, 검색일자: 2025. 3. 31.
- _____, “GenAI chatbot beta,”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corporate/contact-information/cra-chatbot/genai-chatbot-beta.html>, 검색일자: 2025. 3. 28.
- _____, “Monitoring of Electronic Access to Taxpayer Information v3.0,”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about-canada-revenue-agency-cra/protecting-your-privacy/privacy-impact-assessment/monitoring-of-electronic-access-to-taxpayer-information-v3.html#Overview>, 검색일자: 2025. 3. 28.
- Gouvernement du Québec, “Décision fondée exclusivement sur un traitement automatisé,” <https://www.quebec.ca/gouvernement/travailler-gouvernement/travailler-fonction-publique/services-employes-etat/conformite-protection-des-renseignements-personnels/technologie-et-droit-a-la-protection-des-renseignements-personnels/decision-traitement-automatise>, 검색일자: 2025. 6. 10.
- _____, “STRATÉGIE D’INTÉGRATION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DANS L’ADMINISTRATION PUBLIQUE 2021-2026,” https://cdn-contenu.quebec.ca/cdn-contenu/gouvernement/SCT/vitrine_numeriQc/strategie_IA/Mesures_cles_IA_2024-2026.pdf, 검색일자: 2025. 6. 9.
- Government of Canada, “Algorithmic Impact Assessment tool, <https://www.canada.ca/en/government/system/digital-government/digital-government-innovations/responsible-use-ai/algorithmic-impact-assessment.html>, 검색일자: 2025. 3. 31.
- _____, “AI Strategy for the Federal Public Service 2025-2027: Priority areas,” <https://www.canada.ca/en/government/system/digital-government/digital-government-innovations/responsible-use-ai/gc-ai-strategy-priority-areas.html>, 검색일자: 2025. 6. 9.

- _____, “Better data and approaches help the Canada Revenue Agency identify Canadians trying to hide their assets oversea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2018/11/better-data-and-approaches-help-the-canada-revenue-agency-identify-canadians-trying-to-hide-their-assets-overseas.html>, 검색일자: 2025. 6. 10.
- _____, “How the Canada Revenue Agency (CRA) works with other tax authoritie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ternational-non-residents-tax/how-canada-revenue-agency-works-tax-authorities.html>, 검색일자: 2025. 6. 10.
- _____, “Pan-Canadian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https://ised-isde.canada.ca/site/ai-strategy/en>, 검색일자: 2025. 6. 9.
- KOTRA, 「캐나다 인공지능(AI) 전략과 새로운 진출 기회」, https://dream.kotra.or.kr/kotra_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MENU_ID=280&CONTENTS_NO=1&pRptNo=13828#;, 검색일자: 2025. 6. 11.
- Prime Minister of Canada, “Securing Canada’s AI advantage,” <https://www.pm.gc.ca/en/news/news-releases/2024/04/07/securing-canadas-ai>, 검색일자: 2025. 6. 12.

V 호주

조사 담당자: 안정빈 연구원

1 조사 개요

- ▣ 본 장은 호주의 세무행정 분야 AI 활용 및 도입 현황을 다루며 다른 국가 사례들과 구별되는 호주만의 AI 운영 사례, 기술 활용 범위, 제도적 기반, 거버넌스 체제, 협력 체계 등을 조명함
- ▣ 주요 활용된 공식 문건 및 보고서는 호주 정부 발간 보고서와 공식 사이트, 의회 자료, 정부 시스템 포털 등이 있음
 - ▶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을 비롯한 정부 보고서 및 자료와 언론 보도, 논문 및 저서 등을 통합해 AI 세무행정 관련 문헌을 수집함
 - ▶ 그러나 본 장에서 다루는 소수의 AI 모델에 반해 2024년 5월 14일 호주 국가 감사원(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ANAO)이 공개한 ATO 인하우스(in-house) 개발 진행 및 완료인 모델이 총 43개인바, 대다수의 기술을 비공개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됨

2 세무행정 분야 AI 도입 현황

- ▣ 호주 사례는 국가 조세 징수 기관인 ATO에서 AI 설계, 개발, 배치,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호주 재무부(Treasury)와 세제 전반과 연금제도의 공동 관리 책임을 맡고 있음⁷⁹⁾

79) ATO-Treasury Protocol, <https://www.ato.gov.au/about-ato/new-legislation/ato-and-treasury-roles/ato-treasury-protocol>, 검색일자: 2025. 6. 11.

- ▣ (AI 도입 초기) 호주 AI 세무행정 관련 논의는 ATO에서 2015년 디지털 우선 원칙(Digital by Default)을 주창하며 본격화되어 ‘2019-2020 ATO 전략계획(2019-2020 ATO Corporate Plan)’에 처음 자동화·AI가 등장해 투자계획을 밝힘
 - ▶ 디지털 우선 원칙을 비롯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약 1억 3,090만호주달러(약 1,180억원)의 최초 운영 자금을 배정받음⁸⁰⁾
 - ▶ 디지털 우선 원칙 선언 후 2016년에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약 3,600만건의 납세자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것을 기점으로 본격화됨⁸¹⁾
 - ▶ 2019-2020 ATO 전략계획에서 ATO는 납세자 경험(Client Experience)과 세무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동화와 AI에 적극 투자 중임을 밝힘

- ▣ (ATO 디지털 전략) 특히 ‘ATO 디지털 전략 2022-25(ATO Digital Strategy 2022-25)’을 기획 및 구상해 총 4개 필라를 달성함으로써 세무행정 내 전방위적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함
 - ▶ (디지털 성숙도) 디지털 로드맵을 구상하고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상함
 - ▶ (지속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해 지속 투자하고 효율성과 활용 가치를 극대화함
 - ▶ (고객과 직원 맞춤형 서비스) AI와 자연어를 통해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제3자 및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 (디지털 생태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유지하며 사기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함

- ▣ ATO는 자동화와 인공지능(Automation and AI) 기술 활용 시 OECD에서 제시한 AI 정의⁸²⁾를 따르는 지침이며, 자동화 절차의 경우 AI 없이도 구현할 수 있는 특징을 강조함⁸³⁾
 - ▶ ATO는 규칙 기반 분석(Rules-Based Analytics)⁸⁴⁾은 AI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

80) Commonwealth of Australia, Budget 2015-16, Budget Measures: Budget Paper No. 2. 2015.

81) ANAO,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t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2025, 검색일자: 2025. 4. 11.

82) Digital Transformation Agency(DTA), “Policy for the responsible use of AI in government,” September 2024.

83) ATO, ATO AI Transparency Statement

84) 규칙기반 시스템(Rules-based)은 AI의 단계 중 하나로 사전에 정의된 기업 규칙에 의존한 분석 및 결정 체계인데, 반대되는 개념인 AI 기반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체계임.

- ▶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생성형 AI 등의 사례를 AI로 칭하며 입력값으로부터 출력값을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둠
- ▣ (연방정부 AI 지침) ATO AI 세무행정은 호주 공공 부문 범용 규정을 적용해 ▲ 디지털 전략 ▲ 공공부문 AI 도입 ▲ AI 윤리적 활용에 지침으로 삼고 있음(〈표 1-V-1〉 참고)
 - ▶ 정부는 2024년 12월 16일, 산업계와 함께 국가 AI 비전에 대한 계획을 담은 국가 ‘AI 계획(National AI Capability Plan)’을 발표할 예정임을 알림
 - ▶ (디지털 전략) 2023년 5월, 호주 정부는 ‘데이터와 디지털 정부 전략(Data and Digital Government Strategy)’을 발표해 2030까지 개인과 기업에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및 디지털 역량 청사진을 제시함
 - ▶ (공공부문 AI 도입) 2024년 6월, 호주 재무부는 ‘정부 AI 활용 신뢰성 보장을 위한 프레임워크(National Framework for the assur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government)’를 발표해 지침을 제시함
 - ▶ (AI 윤리적 활용) 2024년 9월, 디지털혁신청(Digital Transformation Agency, DTA)에서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정책(Policy for the responsible use of AI in government)’을 발표함

〈표 1-V-1〉 ATO AI 활용 주요 제도적 기반

구분	제도 및 정책	주요 내용
디지털 전략	데이터와 디지털 정부 전략 (Data and Digital Government Strategy)	- 신기술 적극 도입: ▲ AI ▲ 양자 기술 ▲ 디지털 트윈 기술 - 공공부문 서비스 수요 예측, 근거 기반 (Evidence-based) 의사결정 지원, 운영 효율 및 사용자 경험 향상 등 포함
공공부문 AI 도입	정부 AI 활용 신뢰성 보장을 위한 프레임워크(National Framework for the assur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government)	- 공공기관과 정부 기관 AI 도입 사례 개발·조달·배포 모범 사례 포함 - 원칙 기반(Principles-based) AI 접근 방법 강조
AI 윤리적 활용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정책 (Policy for the responsible use of AI in government) ¹⁾	- 안전과 책무를 다한 AI 활용 - 정부 기관들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과 필수 요소를 담음

주: 1) 지침서는 정부 부처에 AI 전담 부서 지정과 투명 선언문 발표의 필수 조치 사항을 요구한 바 있는데, ATO는 두 개의 필수 조치를 모두 반영함으로써 위 정책을 준수함
 자료: ‘데이터와 디지털 정부 전략’, ‘정부 AI 활용 신뢰성 보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정책’ 참고 저자 작성

3 분야별 AI 운영 사례

가 세무조사

- ▣ (세무조사 전담TF 신설) 호주 정부는 2016년, ATO에 다국적 및 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상 회계감사를 위한 조세회피 TF(Tax Avoidance Taskforce) 신설을 주도해 최초 운영 자금으로 약 6억 7,900만호주달러(약 6,120억원)의 예산을 배정함⁸⁵⁾

 - ▶ ATO는 TF팀 성과에 대한 인정으로 2019년에 추가 10억호주달러(약 9,020억원)를 배정받고, 연이어 예산안이 편성됨에 따라 2025년 기준 총 누적 약 53억호주달러(약 4조 7,806억원)로 운영 중임⁸⁶⁾
- ▣ (방법론) 2022년부터 ATO는 기존 방법론과 새로운 AI 기법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비즈니스-법칙 방법론(Business-Rule)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관심 대상 납세자 선정이 있음⁸⁷⁾

 - ▶ (비즈니스-법칙 방법론) 사업자 등록 정보, 기업의 성숙도, 세금 신고 내역, 이상 상황, 산업별 벤치마크 등 데이터를 총합한 분석 모델임
 - ▶ (머신러닝 모델) 축적된 빅데이터 중 의심 정황 및 패턴을 포착하고 고위험도 납세자를 추적할 뿐만 아니라, 관련 시나리오를 구성해 결과를 예측함
- ▣ (활용 기술/모델-1) 그중에서도 ATO는 초고소득자와 법인을 주 대상으로 도입한 앤지(Automated Network and Grouping Identification Engine, ANGIE)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 앤지는 2019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머신러닝 및 딥러닝 일환인 그룹핑(Grouping) 기술을 통해 복잡한 거래 내역과 법인 네트워크 시각화를 도움

85) Tax Avoidance Taskforce, <https://www.ato.gov.au/about-ato/tax-avoidance/tax-avoidance-taskforce>, 검색일자: 2025. 5. 7.

86) Australian Government, "Budget 2025-26: Tax Avoidance Taskforce," Taskforce Funding 2025.

87) Data Leaders Who's Who: Driving Innovation with Data, Marek Rucinski Deputy Commissioner fo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2021.

- ▶ 앤지는 법인 간 복잡·다각화된 연결고리와 관계성을 정립해 의심할 만한 정황을 구조화해 세무 당국의 조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함
 - ▶ 시각화된 결과를 기반으로 ATO는 심화 회계감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세밀하고 정교한 분석을 위해 고도화 중인 AI 모델임
- ▣ (활용 기술/모델-2) 추가로 머신러닝 기법의 하나인 그라디언트 부스팅(Gradient Boosting Machine, GBM) 기술을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탈세 정황 포착에 활용하고 있음
- ▶ 그라디언트 부스팅 기술은 순차적 모델 갱신을 구축해 최신형이 이전 모델의 오류를 줄여 나가도록 학습해 개선된 결과물을 도출하는 머신러닝 기법임
 - ▶ ATO는 2022년 기준 5만 3,000명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고지 절차를 진행했으며, 약 25억호주달러(약 2조 2,550억원)에 이르는 부정 환급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⁸⁸⁾
 - ▶ 위 모델은 GST 범칙 패턴과 행동학 예측을 지원하고 있으며 회차를 거듭할수록 정확도 높은 예측 결과를 통해 GST 과다 환급을 포착함
- ▣ (활용 기술/모델-3) ATO는 2018년부터 자연어 처리 모델(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을 활용해 파나마 페이퍼스⁸⁹⁾를 분석했는데, 이 과정에서 약 2억 4,200만호주달러(약 2,180억원)의 부채를 포착해 책정함⁹⁰⁾
- ▶ NLP 모델은 광학 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⁹¹⁾과 함께 사용되었는데, 약 1,150만건의 대량 자료를 분석하는 데 활용됨
 - ▶ 2023년에 책정액 중 약 6,000만호주달러(약 541억원)를 징수했으며, 535건의 감사를 시행해 완료함

88) Australia Financial Review(AFR), "ATO captures billions of dollars from tax cheats with AI," August 1st, 2023. <https://www.afr.com/technology/ato-captures-billions-of-dollars-from-tax-cheats-with-ai-20230727-p5drnf>, 검색일자: 2025. 4. 11.

89) 파나마 페이퍼스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입수한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내부 문서를 분석하고 공개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각국 전·현직 지도자들과 정치인, 유명 인사들의 조세회피 의혹이 담긴 문서들임.

90) Financial Review, "Government Services Summit, Marek Rucinski, Deputy Comissioner of Smarter Data,"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91) ATO는 2025년 ANAO 보고서를 통해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구조화하기 위해 OCR 기술을 도입했다고 밝힌 바가 있음.

나 내부행정 효율화

- ▣ (자동화 기술) ATO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로봇틱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를 대량의 단순 서류 작업을 간소화하고 중요도에 따라 자료 분류해 주는 작업에 범용하고 있음⁹²⁾

 - ▶ 세무공무원이 단순노동으로부터 탈피해 회계감사의 본격 단계인 분석과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에 도움을 줌
 - ▶ ATO에 따르면 RPA로 많은 서류 작업이 자동화됨에 따라 수동 작업이 약 5% 감소했고 각각의 납세자 사례에 집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⁹³⁾

- ▣ (분석 모델) ATO는 연말정산 및 소득신고 과정에서 납세자 공제 비용으로 제출되는 자료들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AI 모델을 가용 중임

 - ▶ 호주의 연말정산 및 소득신고 체계는 납세자의 직업과 관련한 비용(Work-Related Expenses, WRE)만이 공제 대상으로,⁹⁴⁾ 관련 세부 항목을 선택해 공제 신청 및 증빙을 해야 하는 구조임⁹⁵⁾
 - ▶ (증빙 리스크 모델, Substantiation Risk Model) 직업 관련 비용 신고 내역이 ATO 내부 기준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확률을 분석함
 - ▶ (넥서스 모델, Nexus Model) 신고 항목이 납세자의 직업군과 연관성 높은 소비인지를 판별하는 모델로, 올바른 항목을 선택해서 신고했는지 여부 분석에 도움을 줌

- ▣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과 자연어 처리(NLP)를 활용한 증빙 자료 이해(Document Understanding)는 납세자 증빙 자료에 세밀한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데, 2021년 시범운영을 개시한 바 있으나 재학습이 필요하다는 진단하에 확대되지는 않음⁹⁶⁾

92) OECD, Tax Administration 2022.

93) ibid.

94) 이는 한국과 다른 점인데 연말정산을 재직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기본 사항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 개인 납세자 혹은 세무사 의뢰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절차임. 신고 기간인 7월부터 10월에 접속해서 입력 및 증빙을 해야 하는 구조임. 다만 호주는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매우 보편적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도 공제 가능 항목 중 하나임.

95) 모든 비용은 자신의 직업 및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공제 대상이며, 개인적인 용도는 공제 대상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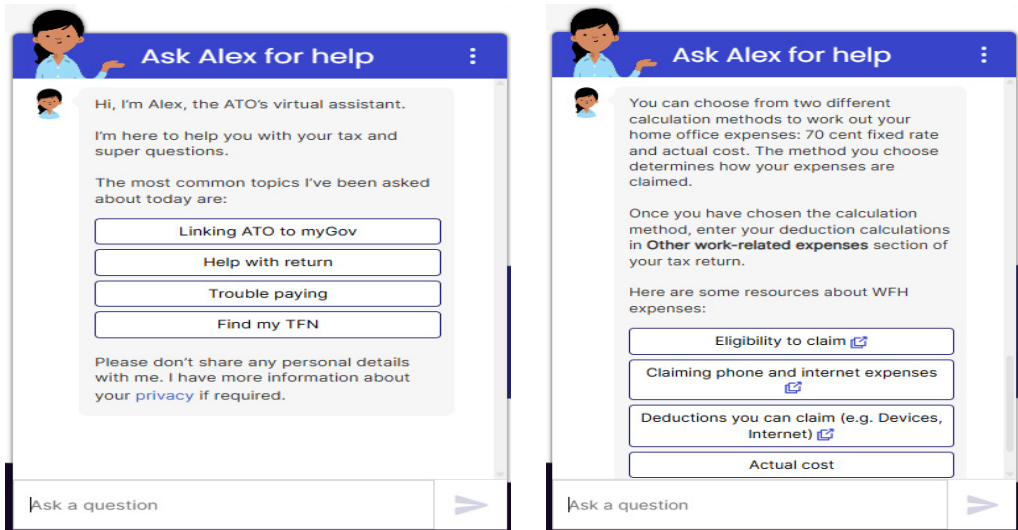
96) ANAO,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t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2025.

- ▶ 납세자 제출 자료 이해를 돕는 장치 중 하나인 그래픽 처리 장치(Graphic Processing Unit, GPU)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부족으로 재조정을 거쳐 심화 개발 중임

다 대민서비스

- ▣ (챗봇 도입 및 활용 기술) ATO AI 챗봇 서비스 알렉스(Alex)는 NLP, 대화형 AI, 문제 해결 전략들을 습득해 2016년에 첫 도입 및 시행됨
 - ▶ 알렉스는 맥락적 이해(Contextual Understanding)를 동반한 AI 챗봇으로, 납세자들은 신속한 정보와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 알렉스의 신규 도입으로 문의 사항 중 약 79%가 추가 상담 없이 해결되었으며 ATO 콜센터 연결이 8~10%가량 감소함⁹⁷⁾
 - ▶ 2021년 기준 56만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했고 전체 문의 중 약 93.4%가 최초 대화 작용으로 해결된 성과를 거둠⁹⁸⁾

[그림 1-V-1] ATO 챗봇 ‘알렉스(Alex)’ 화면



자료: ATO

97) Nuance(2021), “Australian Tax Office deploys new virtual assistant.”

98) Deloitte, “Client Story: From data to society,” <https://www.deloitte.com/global/en/Industries/financial-services/case-studies/transforming-tax-returns-into-compelling-data-sets.html>, 검색일자: 2025. 5. 9.

- ▣ 음성인식기술(Speech Recognition Technology)과 머신러닝을 통해 콜센터 문의 내용을 기록 및 모니터링하고 있음⁹⁹⁾
 - ▶ 콜센터 문의 내용 중 특정 트렌드 및 패턴을 감지함으로써 납세자 정보 제공에 도움을 줌
 - ▶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통화량을 모니터링하며 특정 시기와 시간대별로 데이터를 축적해 수신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민원이 급증하는 시기를 분석해 납세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함임

4 운영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보호

가 운영 거버넌스

- ▣ (AI 전담 부서) 2015년 ATO는 데이터와 AI를 개발하는 전담 부서인 스마트 데이터(Smarter Data)는 인하우스 자동화와 AI 모델 설계 및 개발을 맡고 있음([그림 1-V-2]참고)
 - ▶ 스마트 데이터 프로그램은 고객관계그룹(Client Engagement Group)에 속해 있는 부서이며, 고객관계그룹은 납세자들의 납세 의무 준수 문화를 위한 지원, 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함
 - ▶ AI를 활용해 조세범칙을 식별하고 포착하는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고객관계그룹에 배정된 것으로 보임

99) Australia Taxation, 3rd Edition, Wiley, 2024.

[그림 1-V-2] ATO AI 전담부서 조직도



주: 2025년 5월 23일 기준 자료임

1) 일선운영그룹(Frontline Operations): 납세자 서비스를 최전선에서 지원 및 관리하는 부서임

2) 법령 설계 및 실무 그룹(Law Design and Practice Group): 세법 준수를 통해 납세 의무를 지원하는 부서임

자료: ATO Organizational Structure 참고해 저자 작성

▣ (AI 전담 내부 위원회) ATO 내부 위원회 중 데이터와 분석(Data&Analytics)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략위원회(Stratgy Committee)는 ATO 자동화와 인공지능(Automation & AI Strategy)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표 1-V-2> 참고)

▶ 전략위원회는 고객관계그룹과 법률 설계 및 실무 그룹의 차석국장(Second Comissioner)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원은 ATO 전 부서 중 8개의 부청장(Deputy Comissioner)이 포함됨

- ▶ A&AI 전략 실행은 스마트 데이터(Smarter Data) 소관이며 데이터 사이언스 차장 (Assistant Commissioner)이 주 담당자로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V-2〉 ATO A&AI 전략 수립	
시기	주요 내용
2020년 9월	- A&AI 전략 수립 첫 시동
2022년 12월	- ATO 위원회 조직개편으로 업무 이관되며 재승인 작업 거침
2024년 2월	- A&AI 전략 월간 보고서를 처음 작성하기 시작해 ATO 부청장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공람
2024년 3월	- 내부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인 전략실무그룹(Strategic Working Group, SWG)에 A&AI 전략에 대한 개요, 진행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제공
2024년 5월	- ATO 전략위원회는 A&AI 실행을 전담 부서인 스마트 데이터 프로그램에 추가 예상 배경으로 지속할 것을 권고함

자료: ANAO 감사보고서와 SWG 회의록 기반 저자 작성

- ▣ (ATO 자체 AI 거버넌스 현황-1) ATO는 현재 ‘데이터 관리와 거버넌스 정책(Data Management and Data Governance Policies)’을 적용해서 AI 모델을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에 특화된 위험성 및 리스크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임
 - ▶ AI 기술과 특화된 리스크 관리가 부재하고, 사용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으며, AI와 데이터에 대한 내부 역량 격차가 매우 큰 편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함
 - ▶ 특히 인공지능 활용 시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024년 4월에 내부 감사를 시행한 바 있는데, 가장 낮은 수준의 성숙도라고 자가 진단함
 - AI 거버넌스 체계와 운영 관리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ATO는 2024년 9월 ANAO에 자원적 한계 탓에 대응책이 지연되고 있음을 밝힘¹⁰⁰⁾¹⁰¹⁾

- ▣ (ATO 자체 AI 거버넌스 현황-2) ATO는 AI 정책과 리스크관리 지침(AI Policy and Risk Management Guidance)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이었던 발간 예정일이 내부 협의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발표하는 것으로 유예된 바가 있음¹⁰²⁾

100) ATO는 2024년 4월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의 데이터 성숙도 평가도구(Data Maturity Assessment Tool)를 적용해서 내부 감사를 했으며, ATO에서 활용되는 AI 기술은 전문적이고 특화된 관리 감독 방법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내림.

101) ibid.

102) ibid.

- ▶ ATO 인하우스 AI 모델의 디자인 설계, 개발, 배치,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침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이상의 필요성이 제기됨
 - ▶ 분야별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 ATO 내 주요 거버넌스 위원회, 직원이나 노동조합, ATO 집행부 등의 협의 절차를 거친 부분임
- ▣ (AI 거버넌스 체계 감사) ANAO는 ATO 내 가동 중인 AI 모델 전반의 성과 평가 체계(Monitoring&Evaluation, M&E)가 부재하다고 진단했는데, ▲ 모델 성과 ▲ 문제 기록 및 관리 ▲ 인력 교육 ▲ 윤리 사항 모니터링 ▲ 평가 및 효과 실현으로 항목을 나누어 평가함
- ▶ (모델 성과) 세무 리스크, 납세자 순응도, 직원 업무 효율화 등 항목에서 AI 모델이 미친 영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함
 - ▶ (문제 기록 및 관리) 운영 및 모니터링 계획, AI 모델 배포 이후 문제 식별, 시정 조치 수행 등의 단계에서 별도의 문서화된 기록이 부재함
 - ▶ (인력 교육) 다수의 경우에 AI 모델을 사용하는 인력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 가이드라인이 없음
 - ▶ (윤리 사항 모니터링) 신뢰성, 공정성,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 (평가 및 효과 실현) AI 모델 성과를 검토할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모델이 대부분이고 종결 문서(Closure Documentation)만 존재함
- ▣ ATO는 2026년 12월을 목표로 AI 모델 성과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M&E) 체제를 고안할 예정임
- ▶ 인하우스 AI 모델 접속 시스템이 중앙화되지 않아 다량의 정보를 추출하는 데 비효율적인 수작업이 요구된다는 시간 및 비용적 한계점이 드러남
 - ▶ 더불어 특정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동 중인지 판별하는 기준이 없으므로 재학습 또는 폐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나 개인정보보호

- ▣ (정책) ATO는 2022년 발표한 「데이터 윤리 원칙(Data Ethics Principles)」을 통해 납세자 개인정보보호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명시함¹⁰³⁾
 - ▶ 인하우스 개발과 외부 도입된 AI 모델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ATO 임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정책임
 - ▶ ATO 내부에서 데이터 수집·활용·공유에 대한 윤리적 원칙을 다루고, 정책 준수는 스마트 데이터 부서 부처장의 소관 및 관할임

〈표 1-V-3〉 ATO 데이터 윤리 원칙

구분	주요 내용
공익 실현과 개인 배려	- 세금·연금 체계와 기업 등록 시스템 오류 없이 관리 보장 - 명확한 데이터 수집·관리·공유·활용 시 목적성
개인정보, 보안, 적법성 준수	- 납세자 개인정보 존중과 규범 및 법체계 범위 내 안전하게 보호
명확한 설명과 투명한 소통	- 개방되고 투명한 데이터 소통 방법을 통한 신뢰성 확보
목적성 뚜렷한 데이터 수집	- ATO 법적 기능 수행만을 위한 데이터 수집, 관리, 공유 및 활용
인간 감독 체제	- 최종 판단 및 책임은 인간에게 부여
데이터 수탁 책임 준수	- 납세자 정보 보호와 사용 목적과 보안 유지 방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구축

자료: 「데이터 윤리 원칙(Data Ethics Principles)」 참고해 저자 작성

5 민관 및 국제협력 현황

- ▣ (민간 협력) ATO는 Austender를 통해 민간 기업에 AI 관련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개발 입찰 협력으로 AI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음

103) How we use data and analytics, <https://www.ato.gov.au/about-ato/commitments-and-reporting/information-and-privacy/how-we-use-data-and-analytics>, 검색일자: 2024. 4. 11.

- ▶ 2025년 3월, AI 기반 조세범탐지 시스템(AI-Powered Fraud Detection System)을 구축할 업체 선정 공고문을 발표함
 - ▶ 2021년 6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타트업인 타이거그래프와 협업을 결정해 내부 데이터 분석 모델을 정교화하고 있음
 - ▶ 2016년 12월, 미국 뉘앙스 커뮤니케이션과 개발한 가상 챗봇 알렉스(Alex)가 보급되어 현재까지 ATO 공식 사이트에서 활용 중임
- ▣ (국제협력) ATO는 세무 전문가, 당국, 학자, 법률가 등 연사를 초청해 국제 ATAX 세무행정 회의(International ATAX Tax Administration Conference)를 주관하는데, 조세 분야의 지식과 경험 공유 창으로서 역할을 함
- ▶ 2025년 제16회 회의에서는 세무행정 바로알기(Tax Administration: Getting it Right)를 주제로 AI와 디지털 세무행정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음
 - Shaping the Digital Future of Tax Administration: AI, From IRL to URL: The ATOs AI Overhaul and What It Means for WAs and SMEs 등이 있음
 - ▶ 국제회의 후원기관은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호주세무연구소(The Tax Institute),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New South Wales University, Sydney), 텍스노트(taxnotes) 등임
- ▣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세무행정 및 연구 협의체(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SGATAR) 내에서 TF팀 위원 활동, 태평양 지역 대표 역임, 연례 회의 주최국 등 주도적 행보를 보임
- ▶ SGATAR 6대 주요 의제 중 디지털 전환과 세무행정이 있는데,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무행정 혁신을 다뤄 국가별 사례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됨¹⁰⁴⁾
 - ▶ 그 외에도 2024년 다자적 파트너 프로그램 워크숍을 개최해 SGATAR 회원국은 물론이고 OECD, IMF, ADB, WB를 초청해 조세회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함

104) 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SGATAR), Digital Transformation of Tax Administration.

- ▾ 호주는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와 함께 대기업 5 협력 프로그램(Large Business Five Engagement Programme)에 참여 중이며 데이터 활용, 세무대리인 행동, AI의 윤리적 활용 관련 내용을 상의함¹⁰⁵⁾

6 소결

- ▾ 호주 세무행정 분야에서의 AI 기술 도입은 자동화에서 머신러닝·자연어 처리까지의 영역까지 발전했다는 점에서 지난 약 10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
 - ▶ ATO는 세무조사, 대민서비스, 내부행정 효율화 영역에서 납세자 편의와 세무 시스템 신뢰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AI 기술을 적극 추진함
 - ▶ 특히 ANAO의 정기적인 감사와 모니터링에 관한 권고사항을 최대 수용해 기관의 투명성과 데이터 정합성을 향상함

- ▾ 그럼에도 수기 관리·감독 체제가 필수적인 세무행정 체계를 고려해 ATO는 내부 보급한 AI 모델에 대한 명확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ANAO의 권고에 따라 AI 설계·개발·도입 전 과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임
 - ▶ 더불어 AI 활용에 대한 M&E 체계를 적극 개발 중임

- ▾ 추가로 ATO는 더욱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글로벌 AI 및 신기술 도입을 대비해 자체 자동화·AI(A&AI) 전략을 고안하고 데이터와 AI 모델에 대한 윤리성과 책무성 보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됨
 - ▶ 일례로 ATO에서 개발 중인 43개의 AI 모델 중 가장 심화 기술 분야인 딥러닝에 대한 전례가 적어 이에 대한 사전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105) Transparency Portal, Our Progress in 2023-24, 2024.

참고문헌

1. 문헌자료

-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Annual Report 2023-24, 2024.
- _____, “ATO digital strategy 2022-25,” <https://www.ato.gov.au/about-ato/managing-the-tax-and-super-system/ato-digital-strategy/ato-digital-strategy-2022-25>, 검색일자: 2025. 4. 11.
- Australia National Audit Office(ANAO), “Govern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t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2025.
- Bevacqua, John, Marsden Stephen, Morgan Annette, Morton Elizabeth, Devos Ken, Verma Swapna, *Australian Taxation*, 3rd Edition, Wiley, 2024.
- Commonwealth of Australia, Budget 2025-26, 2025.
- _____, National Framework for the assur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government, 2024.
- Digital Transformation Agency(DTA), Policy for the responsible use of AI in government, September 2024.
- _____, Data and Digital Government Strategy, May 2023.
- Nuance, “Australian Tax Office deploys new virtual assistant,” Press Release, December 5th, 2017.
- OECD, Tax Administration 2022, 2023.
- 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SGATAR), “Digital Transformation of Tax Administration,” <https://sgatar.org/focus/mne-risk/> 검색일자: 2025. 6. 11.
- TalentInsights, “Data Leaders Who’s Who: Driving Innovation with Data,” March 21, 2022, <https://www.talentinsights.com.au/media/mmqfhuaf/dataplus-leaderspluswhospluswhoplus-plusmarekplusrucinski.pdf> 검색일자: 2025. 5. 9.

2. 온라인 자료 및 데이터

Australia Financial Review(AFR), “ATO Capture billions of dollars from tax cheats with AI,” August 1st, 2023, <https://www.afr.com/technology/ato-captures-billions-of-dollars-from-tax-cheats-with-ai-20230727-p5drnf>, 검색일자: 2025. 4. 11.

_____, “AI auditors let the ATO find millions in unpaid tax and super,” February 26th, 2024, <https://www.afr.com/technology/ai-auditors-let-the-ato-find-millions-in-unpaid-tax-and-super-20240217-p5f5r4>, 검색일자: 2025. 4. 11.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Treasury Protocol,” <https://www.ato.gov.au/about-ato/new-legislation/ato-and-treasury-roles/ato-treasury-protocol>, 검색일자: 2025. 06. 11.

_____, “AI Transparency Statement,” <https://www.ato.gov.au/about-ato/commitments-and-reporting/information-and-privacy/ato-ai-transparency-statement>, 검색일자: 2025. 6. 11.

_____, “Tax Avoidance Taskforce,” <https://www.ato.gov.au/about-ato/commitments-and-reporting/information-and-privacy/ato-ai-transparency-statement>, 검색일자: 2025. 5. 7.

_____, “How we use data and analytics,” <https://www.ato.gov.au/about-ato/commitments-and-reporting/information-and-privacy/data-and-analytics/how-we-use-data-and-analytics>, 검색일자: 2025. 4. 11.

Deloitte, “Client Story: From data to society,” <https://www.deloitte.com/global/en/Industries/financial-services/case-studies/transforming-tax-returns-into-compelling-data-sets.html>, 검색일자: 2025. 5. 9.

VI 중국

조사담당자: 송주영, 안정빈 연구원

1 조사 개요

- ▣ 본 장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에서 발표된 세무행정 현대화 관련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세무 당국 내 AI 도입 현황과 체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함

 - ▶ 2021년 3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은 「조세 징수 및 행정 개혁 심화를 위한 의견(关于进一步深化税收征管改革的意见)」을 발표하여 중국 세무행정 현대화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공표함
 - ▶ 중국 AI 세무행정 관련 정책 및 법규는 중국 정부의 공식 정책 문서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
 - ▶ 그 외에도 일부 해외 도서 및 논문, 언론, 국제기구 보고서 등을 활용해 작성됨

- ▣ 본 장에서 중국 AI 세무행정 현황 조사를 위해 가용한 자료는 크게 중국 국내 자료와 해외 자료로 나눌 수 있음

 - ▶ 중국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문서 및 자료를 일차적으로 사용하되, 해외에서 발표된 논문 및 도서, 국제기구 보고서, 중국 내외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에서 발간한 보고서 및 기고문, 언론 자료 등을 함께 참고함

- ▣ 중국 AI 세무행정 관련 정책 및 법규는 중국 정부의 공식 정책 문서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

 - ▶ (중국 정부 공식 문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 및 국무원(國務院)에서 공식 발표한 정책 문서를 참고했으며,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홈페이지 내 설명과 보도자료를 참고함

▶ (중국 법령) 중국 국가법률법규데이터베이스(国家法律法规数据库)를 통해 중국 법령 원문을 참고함

▣ 중국 AI 세무행정 분야별 운영사례는 ▲ 해외 논문과 도서 ▲ 국제기구 보고서 ▲ 회계법인 보고서와 기고문 ▲ 해외 언론 기사 ▲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보도자료 등을 활용함

2 세무행정 분야의 AI 도입 현황

▣ (디지털 세무행정 목표 발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20년 10월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 강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¹⁰⁶를 통해 디지털 세무행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

▶ 제21장 제2절에서 ‘세무행정 시스템의 개혁을 심화하고, 스마트 세무를 구축하며, 조세 징수 및 관리의 현대화를 촉진’할 것을 밝힘으로써 전자 세무정보 관리 시스템인 ‘금세IV기(金稅四期, The Fourth-phase Golden Tax Project)’ 프로젝트 추진의 전략적 배경을 제공함

▣ (금세 프로젝트)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020년 11월 ‘금세 프로젝트(金稅工程)’¹⁰⁷의 IV기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정부 조달 의향 공고를 발표함으로써 스마트 세무 시스템(智慧稅務) 구축에 본격 착수함¹⁰⁸

▶ 금세 프로젝트는 세수징수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4년부터 시작된 국가급 프로젝트이며, 중국 세무행정 시스템 현대화의 시작으로 평가됨

106)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https://www.gov.cn/xinwen/2021-03/13/content_5592681.htm, 검색일자: 2025. 6. 12.

107) ‘금세 프로젝트’란 세수 징수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4년부터 시작된 국가급 정보화 프로젝트로서 국세 및 지방세 데이터, 전자세금계산서, 납세정보, 거래정보 등을 연동하여 세금징수의 통일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전자 세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108) PWC Taiwan, 「中國大陸「金稅四期」政策下 企業及個人應有的認知與因應建議」, <https://www.pwc.tw/zh/topics/tax/taxation-20230426.html>, 검색일자: 2025. 6. 9.

- 국세 및 지방세 데이터, 전자세금계산서, 납세자 정보, 거래정보 등을 연동해 세금 징수 통일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함

▶ 금세Ⅲ기의 주요 목표가 중앙과 지방정부 간 데이터 통합을 통해 통일된 국가 조세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었다면, 금세Ⅳ기의 주요 목표는 ▲ 세무데이터 모니터링 고도화 ▲ 정보 공유 체계 수립 ▲ 정보 검증 기능 강화를 통한 스마트 세무 시스템의 구축¹⁰⁹⁾임(〈표 1-VI-1〉 참고)

▶ 금세Ⅳ기 프로젝트는 2023년 초 광둥, 산둥, 허난 등 지역에서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속 확장 중임¹¹⁰⁾

〈표 1-VI-1〉 금세Ⅳ기 프로젝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세무데이터 모니터링 고도화	- 세무 관련 항목에 머물렀던 개인 및 법인 납세자 정보를 사회보험 납부 내역까지 확대
통합 정보 공유 체계 수립	- 중앙·지방 정부 간 데이터 통합을 넘어 정부 부처, 위원회 은행 등 유관기관 전체 간 정보 공유 및 검증 체계 구축
정보 검증 기능 강화	- 법인 납세자: 대표, 재무 담당자, 세무 대리인 등의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록 정보 검증 자동화 과정으로 확인

자료: BRITACOM, 해외로펌, 외신 등 참고해 저자 작성

▣ (세무행정 고도화 전략)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은 2021년 3월 ‘조세 징수 및 행정 개혁 심화를 위한 의견(关于进一步深化税收征管改革的意见)’¹¹¹⁾을 통해 세무행정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함

▶ (지능형 세무 시스템 구축 가속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인터넷 등 기술을 활용하여 세무 정보를 자동 수집 및 통합하고, 세무 정책 및 과업을 AI가 자동 분류 및 전송하게 함으로써 세무 조직 및 자원배분의 최적화 달성을 목표로 함

109) China Briefing, “China’s Golden Tax System Phase IV: An Explainer,” <https://www.china-briefing.com/news/chinas-golden-tax-system-phase-iv-an-explainer/>, (accessed: June 10, 2025)

110) SBA Stone Forest, <https://www.sbasf.com/resources/china-s-latest-developments-in-tax-inspection>, 검색일자: 2025. 6. 12.

111)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关于进一步深化税收征管改革的意见」,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21/content_5598114.htm, 검색일자: 2025. 6. 12.

- 특히 2023년까지 세무 공무원에 대한 전 과정 자율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현하고, 2025년까지 세무 집행, 서비스, 감독 업무와 빅데이터 AI를 융합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세무 빅데이터 공유 및 분석 기능 강화) 사회보험료 징수 및 부동산 거래·등기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세무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데이터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강화하고, 국가와 관련 부처 정보시스템 간의 상호 연결을 촉진하고자 함

- AI 기술 및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납세자 및 세무 담당자의 행동을 자동으로 분석 예정임

- 특히 경제 및 사회 관리 부문에서 AI 세무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강화할 계획임

▶ (전자세금계산서 전면 도입) 2021년부터 AI에 기반한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의 자동 발행, 자동 제출 및 실시간 검증을 지원하고자 함

▶ (지능형 납세 서비스 체계 구축) AI 기반 ‘12366 세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스마트 상담 및 전국 단위의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오프라인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도모할 예정임

▣ (법제도) 중국은 「세수징수관리법(税收征收管理法)」 제6조¹¹²⁾에 근거하여 세수 징수 및 관리 분야에서 AI의 활용 및 정보 수집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제6조는 국가의 역할로 ▲ 각급 세무기관의 정보기술 현대화 ▲ 세수 징수 및 관리 정보시스템 현대화 ▲ 세무기관과 정부 기타 관리기관 간 정보 공유 제도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 및 원천징수·대납과 관련된 정보를 세무기관에 사실대로 제공할 것을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유관기관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음

112) 중국 국가법률법규데이터베이스(国家法律法规数据库), 중국 「세수징수관리법《税收征收管理法》」, 제6조, <https://flk.npc.gov.cn/detail2.html?MmM5MDImZGQ2NzhiZjE3OTAxNjc4YmY3OGNmZjA3ODU>, 검색일자: 2025. 6. 12.

3 분야별 시 운영사례

가 세무조사

1) 스마트 세무조사

☞ (도입, 활용 기술 및 현황) 중국 국가세무총국 선전시세무국(深圳市税务局)은 2020년 12월 세무조사 행정관리와 법 집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세무조사(智慧稽查, Smart Tax Inspection)’ 버전 1.0에 대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2021년 6월 버전 2.0을 출시함

▶ 스마트 세무조사 시스템은 ▲ 위법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모니터링 ▲ 위법 단서에 대한 지능적 분석 ▲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경고가 가능함

- 해당 시스템은 세무조사의 사건 선정, 조사, 심사, 집행 등의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37개의 사후 자동 스캔 및 모니터링 지표를 갖추고 있음

- 이에 따라 사건이 정해진 세무 업무 절차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사건의 업무를 차단하고 사건의 관할 기관 및 책임자에게 경고가 발송됨¹¹³⁾

▶ 스마트 세무조사 버전 1.0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11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함¹¹⁴⁾

-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능형 분석, 데이터 연계, 시각화 분석, 원격 지휘, 신속한 증거 수집 등을 지원함

- 해당 시스템은 데이터 수집 및 조사·관리 상호 작용 모듈을 탑재해 세무국 내·외부 및 제3자의 데이터 자원을 통합 및 연계함

113) OECD, 2023, p. 104

114) Allbright Law Offices, 「税务稽查内在逻辑深入解析—从执法逻辑出发构建易受稽查的企业画像」, https://www.allbrightlaw.com/CN/10475/e3b1a36c6ca50ec.aspx?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5. 6. 12.

나 내부행정 효율화

1) LeQi 플랫폼

- ▣ (도입, 활용 기술 및 현황) LeQi 플랫폼(乐企平台, LeQi Direct Connection Platform)은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내부 시스템과 기업의 재무 시스템을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전자 세금계산서 업무를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임
 - ▶ LeQi 플랫폼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술에 기반하고 있으며,¹¹⁵⁾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중국 국가세무총국과 기업 재무 시스템을 연결시킴으로써 최소한의 작업으로 e-Fapiao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함
 - ▶ 2023년 12월 기준, LeQi 플랫폼은 e-Fapiao 전면 도입 지역 중 24곳에서 사용할 수 있음¹¹⁶⁾
 - ▶ 전년도 매출이 5천만위안(CNY) 이상이고, 납세 신용 A/B 등급의 기업이 해당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관할 세무서 승인을 받으면 2년간 사용할 수 있음
 - ▶ 해당 플랫폼은 기업에 정밀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무당국은 기업의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받음으로써 기업이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세무 공무원 스마트 오피스 플랫폼¹¹⁷⁾¹¹⁸⁾

- ▣ 중국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세무국은 세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2024년 10월

115) Zhang, "Thoughts on Tax Administration Reform to Support the Construction of China's Unified National Market," *Open Journal of Social Sciences*, 2025, pp. 301~310.

116) More Regions Joining the Fully Digitized E-Fapiao Programme and the Introduction of Leqi Platform, <https://www.tungstenautomation.com/compliance-overview/country-updates/country/china/more-regions-joining-the-fully-digitized-e-fapiao-programme-and-the-introduction-of-leqi-platform?complianceCountry=China&sortBy=relevance&sortOrder=asc>, 검색일자: 2025. 6. 11.

117) China Briefing, "Tax Digitalization in China: Impact on Corporate Tax Risk Management," <https://www.china-briefing.com/news/tax-digitalization-china-impact-on-corporate-tax-risk-management-compliance/> 검색일자: 2025. 6. 10.

118) 中国国家税务总局, 「国家税务总局上海市税务局新电子税局及慧办平台推广上线实施服务的中标公告」, <https://shanghai.chinatax.gov.cn/xxgk/zfcg/202407/t472667.html>, 검색일자: 2025. 6. 12.

세무 공무원 스마트 오피스 플랫폼(税务人端智慧办公平台, Smart Office Platform for Tax Personnel) 업그레이드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

- ▶ 세무 공무원 스마트 오피스 플랫폼은 세무 인력 정보를 각 조직과 개별 직원 단위로 정리하여 업무 효율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음
- ▶ ‘하나의 부서(One Bureau)’ 및 ‘하나의 멤버(One Member)’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세무총국, 성(省) 세무국, 시(市) 세무국, 현(縣) 세무국, 분국 등 5단계 세무 기관과 60만명 이상의 세무 인력 정보를 수집할 예정임

다 대민서비스

1)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e-Fapiao’

- ▣ (도입, 활용 기술 및 현황)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021년 12월부터 상하이, 광둥, 내몽골 등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2024년 11월 ‘디지털 전자세금계산서 전면 도입에 대한 공고(国家税务总局关于推广应用全面数字化电子发票的公告)¹¹⁹⁾를 발표하고, 2024년 12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인 ‘e-Fapiao’를 전국적으로 도입함
 - ▶ 금세IV기 프로젝트와 맞물려 e-Fapiao는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2026년 완성을 목표로 함¹²⁰⁾
 - ▶ e-Fapiao 시스템은 QR코드, 세금계산서 번호, 발행일자, 구매자 정보, 판매자 정보, 품목명, 사양 및 모델, 수량, 단가, 금액, 세율·징수율, 세액, 합계 금액, 세금 총액, 비고 등의 내용을 포함함
 - ▶ e-Fapiao 시스템을 통해 조세 회피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확장된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위해 데이터 암호화 및 접근 통제 조치를 도입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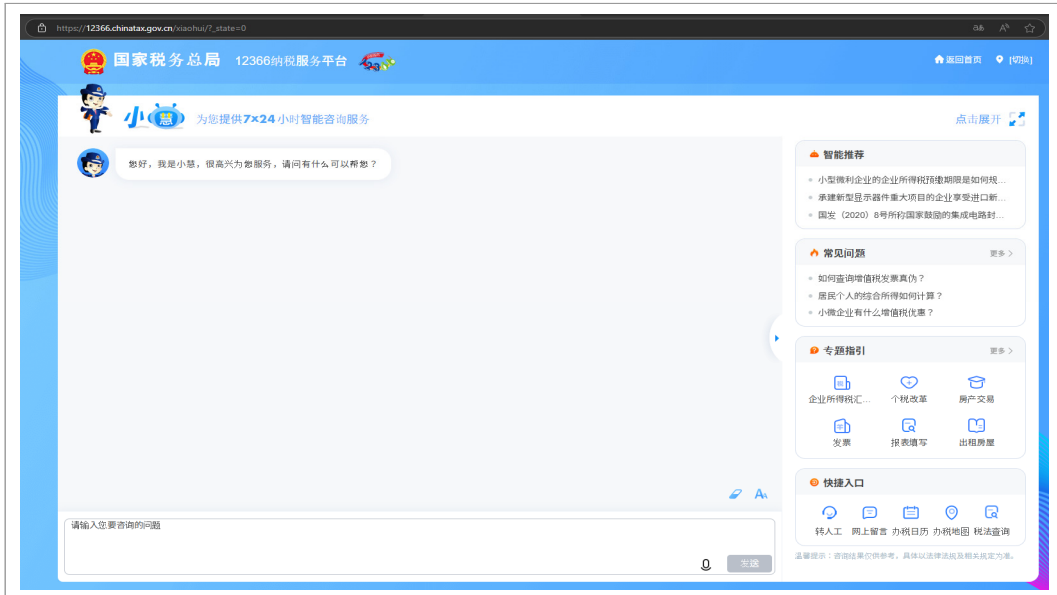
119)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国家税务总局关于推广应用全面数字化电子发票的公告」,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411/content_6989164.htm, 검색일자: 2025. 6. 12.

120) South Morning China Post, “Chinese taxman’s secret weapon to crack down on evasion: phase IV of the Golden Tax System,” August 17, 2024, <https://www.scmp.com/economy/economic-indicators/article/3274806/chinese-taxmans-secret-weapon-crack-down-evasion-phase-iv-golden-tax-system> (accessed June 11, 2025).

2) AI 기반 챗봇 세무 상담

- ▶ (챗봇 도입 및 기능)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기존 유선 및 홈페이지를 통해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던 12366 세무서비스 플랫폼에 2019년부터 AI 기반 챗봇 ‘샤오후이(小慧)’를 도입하여 24시간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¹²¹⁾
 - ▶ 챗봇 샤오후이는 세무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e-Fapiao 시스템 사용 안내, 기업 규모 및 업종에 따른 맞춤형 세무 상담을 담당하며, 필요시 인력 상담으로 전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함
 - ▶ 챗봇 샤오후이 서비스는 국가세무총국 12366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대중 접근성이 좋은 SNS(WeChat) 혹은 간편결제서비스(Alipay) 내 미니프로그램(小程序)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 ▶ 중국 국가세무총국 12366 베이징 세무 서비스 센터 부국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챗봇 샤오후이는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기술을 통합한 서비스임¹²²⁾

[그림 1-VI-1] 중국 12366 세무서비스 플랫폼 챗봇 샤오후이



자료: 중국 국가세무총국 12366 플랫폼, 12366.chinatax.gov.cn, 검색일자: 2025. 7. 18.

121) 中国国家税务总局 12366, <https://12366.chinatax.gov.cn>, 검색일자: 2025. 6. 12.

122) 中国国家税务总局, 「北京12366: 高速入“云端”」, <https://www.chinatax.gov.cn/chinatax/n810219/n810739/c5158680/content.html>, 검색일자: 2025. 6. 12.

3) 지방 세무국 내 AI 세무 로봇 설치

- ▣ (기능 및 활용 현황) 중국 국가세무총국 산하 일부 지방 세무국은 AI 스마트 세무 로봇 (Tax Robot)을 도입하여 민원인들의 질의 응답과 세무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임¹²³⁾
 - ▶ 광둥성 덴바이구자치현 세무국의 대면 세무 로봇은 납세자 신분증과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1차 신원 확인 소요 시간을 절감해 주고 있음¹²⁴⁾
 - ▶ 베이징시 스징산구 세무국의 로봇 ‘링윈(灵云)’은 세무국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제공 기능을 수행함¹²⁵⁾
 - ▶ 선양시 훈난구세무국의 로봇 ‘샤오팡(小胖)’은 세무국을 현장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세 등 납세자 친화적인 정책들을 소개함¹²⁶⁾
 - ▶ 안산시 첸산세무국의 로봇 ‘샤오주(小助)’는 세무처리 장소, 영수증 발급 여부, 번호 시스템 사용 방법 등 행정업무 관련 문의에 응하고, 세무국 방문 시 길 안내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음¹²⁷⁾

123) Huang, Zhuowen,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axation,”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and Business Management*, 8(8), 2018, 1817-1824.

124) Shakil, Mohammad H and Tasnia, Mashiya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ax Administr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in *Taxation in the Digital Economy: New Models in Asia and the Pacific*, Routledge, 2023, pp. 45~55.

125) Shui5, “AI+税务”将成为税务系统的“黑科技”, <https://www.shui5.cn/article/ef/113244.html>, 검색일자: 2025. 6. 12.

126) 国家税务总局, 「浑南区税务局: 机器人“小胖”为契税大厅吹来“互联网+”春风」, https://liaoning.chinatax.gov.cn/art/2019/4/12/art_1859_13945.html, 검색일자: 2025. 6. 12.

127) 中国机器人网, 「智能机器人设备助力基层纳税服务」, <https://www.sensorexpert.com.cn/article/10972.html>, 검색일자: 2025. 6. 12.

[그림 1-VI-2] 중국 세무국 내 AI 탑재 세무 로봇 도입

〈안산시 첸산세무국 샤오주〉

〈선양시 훈난구세무국 샤오팡〉



자료: 중국 국가세무총국, liaoning.chinatax.gov.cn.
검색일자: 2025. 6. 12.

자료: 中国机器人网, <https://www.sensorexpert.com.cn>, 검색일자: 2025. 6. 12.

4) AI 디지털 휴먼을 활용한 납세 교육¹²⁸⁾

▣ (활용 기술 및 현황) 중국 국가세무총국 선전시세무국 납세자 학당(深圳市税务局纳税人学堂)은 2025년 1월 온라인 상담 및 Q&A 상호 작용을 위한 AI 디지털 휴먼 라이브 방송실을 개설함¹²⁹⁾

▶ AI 라이브 방송은 실사 모델링 복제, 자연어 처리, 실시간 렌더링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 휴먼, 스크립트, 교제 등을 생성함

- 언어모델과 세무 지식모델을 기반으로 디지털 휴먼 강사 ‘선샤오나(深小娜)’와 ‘슈이샤오푸(税小福)’를 통해 실시간 강의 및 질의응답을 24시간 동안 수행함

128) 中国国家税务总局, 「深圳: AI数字人在线辅导为纳税人缴费人答疑解惑」, <https://www.chinatax.gov.cn/chinatax/n810219/n810739/c5238111/content.html>, 검색일자: 2025. 6. 12.

129) 중국 국가세무총국, 「심천: 납세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줄 AI 디지털 휴먼의 온라인 강의(深圳: AI数字人在线辅导为纳税人缴费人答疑解惑)」, <https://www.chinatax.gov.cn/chinatax/n810219/n810739/c5238111/content.html>, 검색일자: 2025. 6. 12.

- ▶ 선전시 납세자 학교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AI 디지털 휴먼 라이브 방송 도입으로 작업 효율성이 3배 이상 향상되어 인력의 약 75%를 절약함
 - 또한 해당 시스템은 납세자들이 작성한 댓글을 분석하여 이들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선전시세무국에서는 특별 인력을 배치하여 더 많은 납세자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임을 밝힘

[그림 1-VI-3] 중국 선전시세무국 납세자 학당 AI 라이브 방송



자료: 중국 국가세무총국, www.chinatax.gov.cn, 검색일자: 2025. 7. 14.

4 운영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보호

가 운영 거버넌스¹³⁰⁾

- ▣ (전담부서) 중국 국가세무총국 공식 조직도 및 설명에 따르면 ‘세무 관리 및 과학 기술 개발국(征管和科技发展司)’ 및 ‘디지털 세무 관리 센터(电子税务管理中心)’에서 AI 세무

130) 中国国家税务总局, <https://www.chinatax.gov.cn/chinatax/n810209/index.html>, 검색일자: 2025. 6. 12.

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추정됨

- ▶ (세무 관리 및 과학 기술 개발국) '세무 관리 및 과학 기술 개발국(征管和科技发展司)'은 세무 업무 및 세무 정보화를 담당함¹³¹⁾
- ▶ (디지털 세무 관리 센터) '디지털 세무 관리 센터(电子税务管理中心)'는 금세 시스템의 운영비 예산 및 기술 보장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행을 담당하고, IT 인력 역량 강화 또한 담당하고 있음¹³²⁾

나 개인정보보호

- ▣ (국가 통합 신원 인증 플랫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국가 통합 신원 인증 플랫폼(国家统一身份认证平台, Unified Identity Management Platform, UIM)'을 사용하여 납세자 및 세무 공무원 등 세무 업무와 관계된 모든 인물의 디지털 신원을 관리함¹³³⁾
 - ▶ 해당 플랫폼은 통합된 신원 관리, 신원 인증, 접근 제어, 비밀번호 및 인증서를 제공함
 - ▶ 해당 플랫폼은 이름, 이메일 계정, 휴대전화 번호, 문자 메시지, 비밀번호, 생체 인식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을 조합하여 5단계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업무 성격에 따른 보안 위험도에 따라 인증 단계를 조정하여 보안성과 편의성을 제공함
 - ▶ 해당 플랫폼은 세무 공무원을 포함한 세무 업무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인의 디지털 신원 추적이 가능하여 중국 국가세무총국 내부 통제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 ▣ (유관 법률)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 「사이버보안법《网络安全法》」, 「데이터보안법《数据安全法》」 등의 법률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131) 세무 업무 관한 법적 문서 초안 작성, 세무 업무의 장기 및 종합 전략 수립, 세수 관리 정보화의 총괄 기획 및 시행 방안 수립 및 실행, 세무 정보화 구축 과정에서의 업무 수요 통합 및 업무 절차 최적화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함.

132) 세무 정보화 발전 계획 수립, 전국 세무 시스템의 응용 운영·유지, 데이터 기술 관리, 기술 지원, 기반 시설 및 보안 보장 등 업무를 총괄하며, 개발 테스트, 운영 유지, 데이터 기술 관리, 기반 시설 및 보안 보장 관련 관리 제도 수립을 담당함.

133)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OECD Publishing, Paris, 2023.

-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둠(제33조)
 - 법령이 정한 직무의 수행을 위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은 법령 및 행정규정이 정한 권한 절차의 범위에 따라 행할 것과 법령이 정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와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제34조)¹³⁴⁾
- ▶ (사이버보안법) 「사이버보안법」은 사이버공간 보안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기본법임
 - 국가는 법률에 따라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네트워크 접근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대중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에 따라 네트워크 정보의 질서 있고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제12조)¹³⁵⁾
- ▶ (데이터보안법) 「데이터보안법」은 전자정부 수립의 적극적 추진을 규정함(제37조)
 - 또한 국가기관이 법적으로 규정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이용 시, 법률과 행정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음(제38조)¹³⁶⁾

5 민관 및 국제협력 현황

- ▣ (텐센트와의 협력 1-지능형 세무랩)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세무행정 분야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 5월 중국 빅테크 기업인 텐센트(腾讯, Tencent)와 지능형 세무랩(Intelligent Tax Lab)을 공동 설립함¹³⁷⁾

134) 중국 국가법률법규데이터베이스(国家法律法规数据库), 중국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 <https://flk.npc.gov.cn/detail2.html?ZmY4MDgxODE3YjY0NzJhMzAxN2I2NTZjYzIwNDAwNDQ%3D>, 검색일자: 2025. 6. 12.

135) 중국 국가법률법규데이터베이스(国家法律法规数据库), 중국 「사이버보안법《网络安全法》」, <https://flk.npc.gov.cn/detail2.html?MmM5MDlmZGQ2NzhiZjE3OTAxNjc4YmY4Mjc2ZjA5M2Q%3D>, 검색일자: 2025. 6. 12.

136) 중국 국가법률법규데이터베이스(国家法律法规数据库), 중국 「데이터보안법《数据安全法》」, <https://flk.npc.gov.cn/detail2.html?ZmY4MDgxODE3OWY1ZTA4MDAxNzlmODg1YzdlNzAzOTI%3D>, 검색일자: 2025. 6. 12.

137) Ołowska, Peshori, Lan, "The Digitalization of Tax Administration in China (People's Rep.), India and Korea(Rep.),"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2020.

- ▶ 지능형 세무랩은 국가세무총국의 e-Fapiao 시범 운영 시기에 도용 및 위조된 세금 계산서를 분별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고안하는 기능을 수행했음¹³⁸⁾
 - ▶ 또한 설립 초기 지능형 세무랩은 블록체인 기술을 동반한 디지털 인보이스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발행 전(全) 과정에 걸친 추적 기능을 탑재하여 정보 위·변조가 불가능한 설계를 제시한 바 있음
- ▣ (텐센트와의 협력 2-스마트세무솔루션) 텐센트는 ‘위챗(WeChat)’을 통해 세무 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는 AI 기반 ‘스마트세무솔루션(Smart Tax Solution)’ 세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금세Ⅳ기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¹³⁹⁾
- ▶ 이는 “정부 WeChat + 기업 WeChat + WeChat”의 3자 협업 모델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소통을 가능케 한 세무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이 보장됨
 - ▶ 사용된 주력 AI 기술은 재무제표 자동 작성을 위한 광학 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¹⁴⁰⁾ 원격 음성 및 영상 추출 기술, 얼굴 인식 기술, 연중무휴 AI 데이터 인력 등이 있음
 - ▶ 이 외에도 얼굴 인증 로그인, 테마별 세무 처리, 세금 신고 및 세금 납부, 인보이스 도우미, 사용 문의 등 약 286개의 모듈 기능을 탑재함
- ▣ 또한 스마트세무솔루션은 민간 기업들의 세무 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를 위해 개발된 민간서비스플랫폼임¹⁴¹⁾
- ▶ (신고 자동화) 세분화된 세금 계산을 자동화하여 세금 보고서를 자동 생성함으로써 납세율을 제고함

138) Shenzhen Gov't Partners With Tencent to Fight Tax Fraud With Blockchain, <https://coin.telegraph.com/news/shenzhen-govt-partners-with-tencent-to-fight-tax-fraud-with-blockchain>, 검색일자: 2025. 6. 11.

139) Tencent, Smart Tax Solution, <https://cloud.tencent.com/solution/smart-taxation>, 검색일자: 2025. 6. 11.

140) 광학문자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은 이미지 내 문자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기술을 의미함

141) Tencent, “Smart Tax Solution,” <https://cloud.tencent.com/solution/smart-taxation>, 검색일자: 2025. 6. 11.

- ▶ (신속한 정보 제공) 조세 제도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 기능을 탑재하여 기업 세무 전략 설계를 지원함
 - ▶ (리스크 관리)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재무제표 불일치 항목과 비정상 거래 감지 등 세무 리스크를 식별하여 사전 대응을 가능하게 함
 - ▶ (보편적 행정지원) 스마트세무솔루션을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구축함으로써 모든 기업에 세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 (국제 협력) 일대일로 세무행정협력기구(一帶一路稅收征管合作機制,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ax Administration Cooperation Mechanism, BRITACOM)는 2019년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일대일로 참여국 간 세무행정 지식 공유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¹⁴²⁾
- ▶ BRITACOM은 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사무국은 연락 사무소 역할을 함
 - 위원회의 위원은 참여국이 직접 선정하게 되며, 2025년 5월 기준 중국, 타지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시에라리온 5개국이 구성함
 - ▶ (포럼) 매년 일대일로 참여국에서 세무행정 포럼(Belt and Road Initiative Tax Administration Cooperation Forum, BRIATCOF)을 개최함
 - 특히 중국은 세무 당국의 주요 이니셔티브를 BRITACOM을 통해 국제 사회에 알리는 통로로 활용하며, 매년 국가세무총국 국장급이 디지털 세무행정에 대한 성과 및 목표를 발표함
 - ▶ (세미나) 연례 세미나를 개최해 일대일로 참여국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
 - ▶ (역량 강화) BRITACOM 내 일대일로 세무행정 역량강화 그룹(Belt and Road Initiative Tax Administration Capacity Enhancement Group, BRITACEG)을 구성해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협업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를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음
 - ▶ (연구 저널 발간) 2020년부터 '일대일로 조세 저널(Belt and Road Initiative Tax Journal)'을 발간함

142) BRITACOM, <https://www.britacom.org>

〈표 1-VI-2〉 BRITACOM 주요 활동

주요 활동	내용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행정 포럼 개최) 위원회에서 매년 주제를 선정해 플래너리, 특별, 기본 세션별로 발표 및 토론을 구성함 - 2025년 제6회를 앞두고 있으며, 관련 성과로는 공동 성명 발표, 액션 플랜 제시, 역량강화 그룹 커리큘럼 기획, 연례 보고서 등이 있음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례 세미나 개최): 납세 서비스, 세무 협력, 디지털화와 세무행정 등 관련 세미나 개최함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 강화 그룹) 참여 세무당국 중 자원을 받아 회원이 되어 세무행정 관련 역량 강화 및 지식 공유를 위한 장임
연구 저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로 조세 저널 발간): 2020년부터 저널을 발간하며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무 행정일반부터 디지털 및 시까지 다양한 리포트가 발간됨

자료: BRITACOM

〈그림 1-VI-4〉 BRITACOM 위원회 회의



자료: BRITACOM

6 소결

- ▣ 중국의 AI 세무행정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에서 결정한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 강요」에 따라 세무행정 시스템의 현대화를 목표로 발전 중임

 - ▶ 특히 「조세 징수 및 행정 개혁 심화를 위한 의견」에서 제시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화에서부터 AI 기술까지 다양한 수준의 세정 서비스를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 있음
 - ▶ 제도적으로는 「세수징수관리법」을 통해 AI 활용 및 정보 수집의 정당성을 확보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등을 통해 AI 활용 및 정보 수집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를 규정함

- ▣ 현재 중국 내 새로운 AI 세무행정 서비스들은 전국적 시행에 앞서 일부 지방 거점 지역에서의 시범 운영을 통해 준비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인 e-Fapiao의 경우 2021년 첫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 12월 1일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례이며, 2026년을 목표로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접목하고 있음
 - ▶ 중국 국가세무총국 내부 시스템과 기업 재무 시스템을 연결하는 LeQi 플랫폼은 2023년 12월 기준 e-Fapiao 전면 도입 지역 중 24곳에서 사용할 수 있음
 - ▶ 스마트 세무조사 시스템의 경우 2000년 12월부터 선전시세무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있음
 - ▶ 세무 공무원 스마트 오피스 플랫폼의 경우 2024년 10월 상하이세무국에서 해당 플랫폼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입찰을 진행함

-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로봇과 SNS에 AI 세무행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빅테크 민간 기업들과의 협업이 두드러짐

 - ▶ 이미 중국 내 여러 지방 세무국에서는 AI가 탑재된 로봇이 세무국을 방문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 및 세무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선전시세무국에서는 AI와 디지털 휴먼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납세자 교육을 시행 중임
 - ▶ 텐센트와 협업을 통해 설립된 지능형 세무랩에서는 사용자 접근성이 좋은 WeChat을 통해 세무 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는 AI 기반의 스마트세무솔루션을 개발 중임
- ▣ 중국은 일대일로 세무행정협력기구를 통해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무행정 지식 공유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스마트 세정의 표준화 및 규범화를 추진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문헌

1. 문헌자료

-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https://www.gov.cn/xinwen/2021-03/13/content_5592681.htm, 검색일자: 2025. 6. 12.
- _____, 「国家税务总局关于推广应用全面数字化电子发票的公告」,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411/content_6989164.htm, 검색일자: 2025. 6. 12.
- _____, 「关于进一步深化税收征管改革的意见」,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21/content_5598114.htm, 검색일자: 2025. 6. 12.
- Huang, Zhuowen,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axation,”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and Business Management*, 8(8), 2018, 1817~1824.
- IMF, “Tax Administration Reform in China: Achievements, Challenges, and Reform Priorities,” 2016.
-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OECD Publishing, Paris, 2023.
- Olowska, Marta, P. K. Peshori, S. Lan, “The Digitalization of Tax Administration in China, India and Korea(Rep.)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74(8), 2020, 465~480.
- SBA Stone Forest, <https://www.sbasf.com/resources/china-s-latest-development-s-in-tax-inspection>, 검색일자: 2025. 6. 12.
- Shakil, Mohammad H and Tasnia, Mashiyat, “Artificial Intellgence and Tax Administr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in *Taxation in the Digital Economy: New Models in Asia and the Pacific*, Routledge, 2023, pp. 45~55.
- Zhang, Huiyu, “Thoughts on Tax Administration Reform to Support the Construction of China’s Unified National Market,” *Open Journal of Social Sciences*, 13(3), 2025, 301~310.

2. 법령

- 중국 국가법률법규데이터베이스(国家法律法规数据库),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个人信息保护法》」, <https://flk.npc.gov.cn/detail2.html?ZmY4MDgxODE3YjY0NzJhMzAxN2I2NTZjYzIwNDAwNDQ%3D>, 검색일자: 2025. 6. 12.
- _____, 중국 「데이터보안법 《数据安全法》」, <https://flk.npc.gov.cn/detail2.html?ZmY4MDgxODE3OWY1ZTA4MDAxNzlmODg1YzdlNzAzOTI%3D>, 검색일자: 2025. 6. 12.
- _____, 중국 「사이버보안법 《网络安全法》」, <https://flk.npc.gov.cn/detail2.html?MmM5MDlmZGQ2NzhiZjE3OTAxNjc4YmY4Mjc2ZjA5M2Q%3D>, 검색일자: 2025. 6. 12.
- _____, 중국 「세수징수관리법 《税收征收管理法》」, 제6조, <https://flk.npc.gov.cn/detail2.html?MmM5MDlmZGQ2NzhiZjE3OTAxNjc4YmY3OGNmZjA3ODU>, 검색일자: 2025. 6. 12.

3. 온라인 자료 및 데이터

- 『뉴시스』, 「중국 정보유출 제한 심각...외국 기업활동 어려움 가중」, 2021. 12. 7.,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11207_0001678806, 검색일자: 2025. 6. 12.
- 中国国家税务总局, 「北京12366: 高速入“云端”」, <https://www.chinatax.gov.cn/chinatax/n810219/n810739/c5158680/content.html>, 검색일자: 2025. 6. 12.
- _____, 「浑南区税务局: 机器人“小胖”为契税大厅吹来“互联网+”春风」, https://liaoning.chinatax.gov.cn/art/2019/4/12/art_1859_13945.html, 검색일자: 2025. 6. 12.
- _____, 「国家税务总局上海市税务局新电子税局及慧办平台推广上线实施服务的中标公告」, <https://shanghai.chinatax.gov.cn/xxgk/zfcg/202407/t472667.html>, 검색일자: 2025. 6. 12.
- _____, 「深圳: AI数字人在线辅导为纳税人缴费人答疑解惑」, <https://www.chinatax.gov.cn/chinatax/n810219/n810739/c5238111/content.html>, 검색일자: 2025. 6. 12.
- 中国机器人网, 「智能机器人设备助力基层纳税服务」, <https://www.sensorexpert.com.cn/article/10972.html>, 검색일자: 2025. 6. 12.

- Allbright Law Offices, 「税务稽查内在逻辑深入解析—从执法逻辑出发构建易受稽查的企业画像」, <https://www.allbrightlaw.com/CN/10475/e3b1a36c6ca50ec.aspx?utm>, 검색일자: 2025. 6. 12.
- BRITCOM, “News,” <https://www.britacom.org/> 검색일자: 2025. 6. 11.
- China Briefing, “China’s Golden Tax System Phase IV: An Explainer,” December 10, 2021, <https://www.china-briefing.com/news/chinas-golden-tax-system-phase-iv-an-explainer/>, 검색일자: 2025. 6. 11.
- _____, “Tax Digitalization in China: Impact on Corporate Tax Risk Management,” November 21, 2024, <https://www.china-briefing.com/news/tax-digitalization-china-impact-on-corporate-tax-risk-management-compliance/>, 검색일자: 2025. 6. 11.
- Cointelegraph, “Shenzhen Gov’t Partners with Tencent to Fight Tax Fraud with Blockchain,” May 28, 2018, <https://cointelegraph.com/news/shenzhen-govt-partners-with-tencent-to-fight-tax-fraud-with-blockchain>, 검색일자: 2025. 6. 10.
- PWC Taiwan, 「中國大陸「金稅四期」政策下 企業及個人應有的認知與因應建議」, <https://www.pwc.tw/zh/topics/tax/taxation-20230426.html>, 검색일자: 2025. 6. 9.
- Tungsten Automation, “More Regions Joining the Fully Digitized E-Fapiao Programme and the Introduction of Leqi Platform,” <https://www.tungstenautomation.com/compliance-overview/country-updates/country/china/more-regions-joining-the-fully-digitized-e-fapiao-programme-and-the-introduction-of-leqi-platform?complianceCountry=China&sortBy=relevance&sortOrder=asc>, 검색일자: 2025. 6. 11.
- Shui5, 「“AI+税务” 将成为税务系统的“黑科技”」, <https://www.shui5.cn/article/ef/113244.html>, 검색일자: 2025. 6. 12.
-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ese taxman’s secret weapon to crack down on evasion: phase IV of the Golden Tax System,” August 17, 2024, <https://www.scmp.com/economy/economic-indicators/article/3274806/chinese-taxmans-secret-weapon-crack-down-evasion-phase-iv-golden-tax-system>, 검색일자: 2025. 6. 11.
- Tencent, “Smart Tax Solution,” <https://cloud.tencent.com/solution/smart-taxation>, 검색일자: 2025. 6. 11.

VII 일본

조사 담당자: 송주영 연구원

1 조사 개요

- ▣ 본 장에서 일본 AI 세무행정 현황 조사를 위해 가용한 자료는 일본 정부 부처 및 공공 기관의 공식 정책 문서와 일본 주요 언론 기사로 나눌 수 있음
- ▣ 일본 AI 세무행정 관련 정책 및 법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정책 문서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
 - ▶ (일본 정부 공식 문서) 일본 국세청(国税庁)을 비롯하여 내각부(内閣府), 총무성(總務省),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에서 공식 발표한 정책 문서를 참고했으며,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내 설명을 참고함
 - ▶ (일본 법령) 일본 'e-Gov 법령검색(法令検索)'을 통해 일본 법령 원문을 참고함
- ▣ 일본 AI 세무행정 분야별 운영사례는 일본 국세청 및 일본 국제협력기구(国際協力機構)의 정책 문서 및 보고서를 참고했으며, NHK 및 니혼케이자이 신문(日本經濟新聞)과 같은 일본 내 주요 언론의 기사를 참고함

2 세무행정 분야 AI 도입 현황

- ▣ (세무행정 미래비전 발표) 일본 국세청은 2017년 6월 '세무행정 미래비전 「稅務行政の将来像」¹⁴³⁾(이하, 비전2017)을 공표하면서 ▲ '납세자 편의성 향상'과 ▲ '과세 및 징수

143) 日本國稅廳, 「稅務行政の将来像」, <https://www.nta.go.jp/information/release/kokuzeicho/2017/syouraizou/pdf/smart.pdf>, 검색일자: 2025. 6. 12.

업무의 효율화 및 고도화'를 두 축으로 하는 세무행정 분야의 디지털화 계획을 발표함

- ▶ 해당 문서는 일본 정부가 세무행정의 디지털화를 선언한 첫 번째 문서로서 세무행정 전반의 구조적 혁신을 의도하고 있음
- ▶ 비전2017에서는 과세 및 징수 업무의 효율화 및 고도화를 위해 '사전 분석 → 자동 판단 → 전자적 실행'의 절차를 거쳐 다음의 각 분야에서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하고자 함
 - (세무조사) 조사 필요성이 높은 고액 또는 악질 사안 선별을 위해 국세청 내부 기록과 정보를 AI 기반 통계 분석 기법과 결합하여 납세자별 조사 필요도를 판단하고, 맞춤형 조사 필요 항목과 최적의 접촉 방법을 도출함
 - (체납 정리) AI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세자의 납부 능력, 과거 체납 이력 및 국세청과의 접촉 이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별 사정을 반영한 최적의 연락 시간과 독촉 방식을 사용할 예정임
 - (공매) 공매 대상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ICT를 활용하여 온라인 정보를 자동 수집하고 AI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판단 및 분석을 수행함

▣ (세무행정 미래비전 고도화) 일본 국세청은 2021년과 2023년에 비전2017을 발전시킨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 세무행정 미래비전 2.0」¹⁴⁴⁾(이하 비전2021)과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 세무행정 미래비전 2023」¹⁴⁵⁾(이하 비전2023)을 연이어 공표함

- ▶ 기존에 제시한 두 가지 정책 축에 '사업자의 디지털화 촉진'을 또 하나의 축으로 추가하여 기업의 전자거래 활성화와 백오피스 디지털화를 유도하여 일본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자 함
- ▶ '사업자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e-Tax 및 마이포털의 사용 확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법정조서 제출, 납세 정보 자동 첨부, 중앙 및 지방정부 간 데이터 통합 등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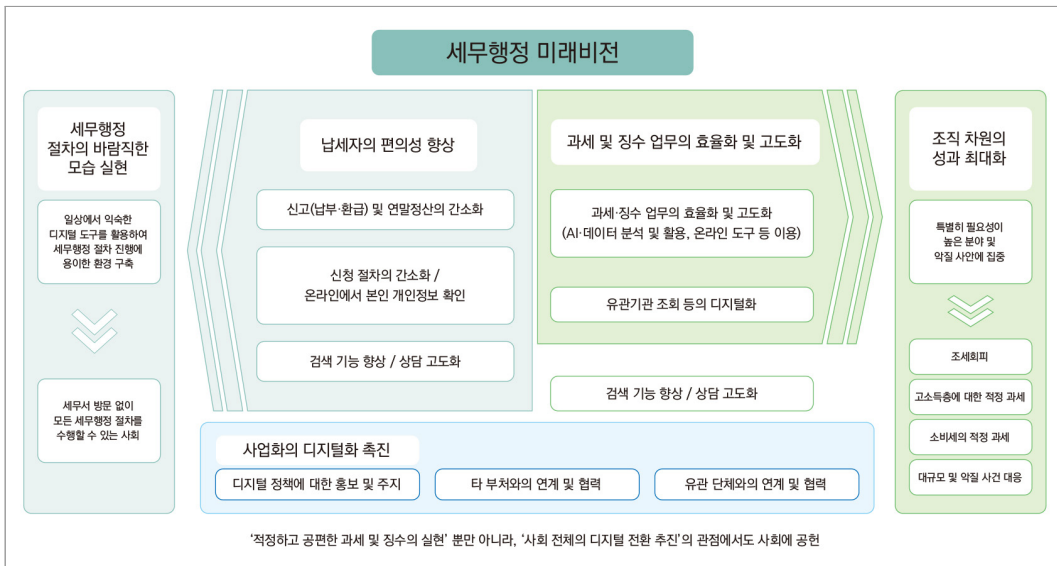
144) 日本國稅廳, 「稅務行政の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 - 稅務行政の将来像2・0」, <https://www.nta.go.jp/about/introduction/torikumi/digitaltransformation/index.htm>, 검색일자: 2025. 6. 12.

145) 日本國稅廳, 「稅務行政の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 - 稅務行政の将来像2023」, <https://www.nta.go.jp/about/introduction/torikumi/digitaltransformation2023/index.htm>, 검색일자: 2025. 6. 12.

- ▶ ‘납세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세금 신고 및 연말정산 간소화, 온라인 개인정보 열람, 챗봇 상담 서비스 강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함
- ▶ ‘과세 및 징수 업무의 효율화 및 고도화’를 위해 AI 및 데이터 분석의 활용, 온라인 상담 및 화상회의 시스템의 활용, 납세신고서의 자동 확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향후 AI 활용 확대를 고려하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식별하고, 체납자의 상황에 따른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등의 절차적 준비를 시작함

- ▣ 비전2017이 디지털화를 전제로 한 업무 재설계를 제시했다면 비전2023에서는 AI, 빅데이터, 자동화 등 기술을 전면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 ▶ 데이터 기반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일본 사회의 업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계획임

[그림 1-Ⅶ-1] 일본 「세무행정 미래비전 2023」 모식도



- ㉓ (제도적 기반) 일본은 아직 세무행정 분야에 특화된 AI 운용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으나, 2019년 내각부에서 채택한 「인간 중심의 AI 사회원칙」 「人間中心のAI社会原則」 및 총무성이 발표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AI活用ガイドライン」, 2024년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AI 사업자 가이드라인(버전 1.0)」 「AI事業者ガイドライン(第1.0版)」 등을 준용하여 공공행정에서 AI 활용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 「인간 중심의 AI 사회원칙」¹⁴⁶⁾은 AI를 포함한 고도화되고 복잡한 정보시스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라 고려해야 할 문제를 다루며 AI 활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인간중심, 교육·리터러시 제고, 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안, 공정한 경쟁, 공평성, 설명에 대한 책임 및 투명 등의 원칙을 제시함
 - ▶ 「AI 활용 가이드라인」¹⁴⁷⁾은 「인간 중심의 AI 사회원칙」에 기반하여, 특히 AI 사업자의 입장에서 AI 도입 전후의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에 대한 해설을 추가한 윤리·거버넌스 지침임
 - ▶ 「AI 사업자 가이드라인(1.0)」¹⁴⁸⁾은 정부 및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의 모든 사업 활동에서 AI를 개발·제공·활용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 이념과 지침을 바탕으로 AI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

〈표 1-Ⅶ-1〉 일본 AI 제도적 기반

발표 연도	주무 부처	문서명	내용
2019	내각부	「인간 중심의 AI 사회원칙」	- AI를 포함한 정보시스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 제시 - AI 활용에 관한 기본 원칙 제시
2019	총무성	「AI 활용 가이드라인」	- AI 사업자의 입장에서 AI 도입 전후의 절차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윤리·거버넌스 지침
2024	경제산업성	「AI 사업자 가이드라인(1.0)」	- AI를 개발·제공·활용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AI 활용시 유의 사항 제시

자료: 해당 문서 기반 저자 작성

146) 日本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推進会議, 「人間中心の AI 社会原則」, <https://www8.cao.go.jp/cstp/ai/aigensoku.pdf>, 검색일자: 2025. 6. 12.

147) 日本 総務省 AI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会議, 「AI 利活用ガイドライン」,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624438.pdf, 검색일자: 2025. 6. 12.

148) 日本経済産業省, 「AI事業者ガイドライン(第1.0版)」を取りまとめました, <https://www.meti.go.jp/press/2024/04/20240419004/20240419004.html?>, 검색일자: 2025. 6. 12.

3 분야별 AI 운영사례

가 세무조사

1) AI를 활용한 소득세 세무조사¹⁴⁹⁾

- ▣ (성과 및 활용 방안) 2024년 11월 일본 국세청은 소득세 세무조사에 AI를 활용한 결과, 1,398억엔(약 1조 3,083억원)의 추정세액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 해당 수치는 2023년 6월까지 1년 동안 60만건 이상의 소득세 세무조사를 AI를 활용해 진행한 결과이며, 전년 동기 대비 30억엔(약 280억원)이 증가한 수치이자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래 가장 높은 금액임
 - ▶ 일본 국세청은 약 1년간 AI에 신고 누락 사례를 학습시켰으며, ▲ 신고서 오류 빈도가 많은 납세자 ▲ 신고 금액이 과도하게 반올림된 납세자 ▲ 현금 수입이 많은 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했음을 밝힘

2) AI를 활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¹⁵⁰⁾

- ▣ (중소기업에 대한 AI 세무조사) 일본 국세청은 2021회계연도부터 전국 세무서에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22회계연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
 - ▶ (AI 세무조사 대상) 일본 국세청은 자본금 1억엔(약 9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AI를 활용하여 법인세, 소비세, 원천징수 소득세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
 - ▶ (AI 세무조사 절차) 해당 AI는 과거 세무조사 사례를 학습한 모델이며 학습된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의 신고 및 결산 정보 등 공개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세금 신고 누락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선별함

149) 『NHK』, 「所得税の追徴課税1398億円余 過去最多に“AI取り入れた結果”」, 2024. 11. 29., <https://www3.nhk.or.jp/news/html/20241129/k10014653461000.html>, 검색일자: 2025. 6. 12.

150) 『日本経済新聞』, 「企業の税務調査でAI駆使 近年最多の追徴3500億円」, 2023. 11. 29.,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E277TW0X21C23A1000000/>, 검색일자: 2025. 6. 12.

-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 누락 위험이 높은 법인에 대해 조사관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고 누락 여부 및 추정세 부과 여부를 결정함
- ▶ (성과)¹⁵¹⁾ 2022회계연도에는 약 6만 2,000건¹⁵²⁾의 법인세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추정액이 2,113억엔(약 1조 9,775억원)을 기록하여 2010회계연도 이후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 2023회계연도에는 2,110억엔(약 1조 9,747억원)이 추정되었으며, 이 중 약 80%에 해당하는 1,665억엔(약 1조 5,582억원)은 AI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판단한 기업에서 발생함

3) AI를 활용한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¹⁵³⁾

- ▣ (도입 배경 및 활용 방안) 일본 국세청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2025년 이후에는 모두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됨에 따라 상속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2025년 7월부터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AI를 활용할 예정임
- ▶ 일본 국세청은 과거 상속세 신고 누락 사례에서 발생한 부정 및 신고 실수의 유형을 학습한 AI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임
 - 해당 AI는 상속세 신고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가가 제출한 자산·채무 기록, 해외 송금 내역, 생명보험 일시금 지급 내역, 금과 매각 시 지급 기록 등을 분석함
 - 분석 결과에 따라 각 사망자(피상속인)의 신고 누락 위험도는 0에서 1 사이의 점수로 환산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고 누락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되어 현장 세무조사 우선순위가 높아짐¹⁵⁴⁾
 - 해당 분석 작업은 일본 국세청 본청에서 수행하며, 최종 세무조사 대상자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 국세국 및 세무서 담당자가 선정함

151) 『日本經濟新聞』, 「「AI国税」が脱税指南を駆逐する 億単位の追徴という末路」, 2025. 2. 28., <https://www.nikkei.com/telling/DGXZTS00014470V20C25A2000000/>, 검색일자: 2025. 6. 12.

152)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8회계연도보다 약 40% 감소한 수치임.

153) 『日本經濟新聞』, 「相続税もAIが調、申告漏れスコア化で狙い絞る」, 2025. 3. 14.,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TG2746X0X21C24A2000000/>, 검색일자: 2025. 6. 12.

154) 다만 점수를 매기는 기준은 공개하지 않음.

나 내부행정 효율화¹⁵⁵⁾

- ▣ (BRP 추진 및 KSK2 재구축) 일본 국세청은 ‘업무 프로세스 혁신(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국의 지방 국세국과 세무서를 연결하는 전산 시스템 ‘종합국세관리시스템(Comprehensive Tax Administration System or Kokuzei Sogo Kanri 2, KSK2)’¹⁵⁶⁾을 재구축 중임

 - ▶ 이는 일본 국세청의 과세 및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정밀성을 향상시키고, 추후 업무에 AI와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함임
- ▣ (AI를 활용한 납세자 분석) 아울러 AI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세자의 납부 능력, 과거 체납 이력, 국세청과의 접촉 이력 등을 분석하여 체납자별로 최적의 연락 시간과 독촉 방식을 선택하여 대응하고 있음

 - ▶ 일례로 AI는 전화, 우편, 방문 등의 접촉 방법 중에서 가장 성공률이 높았던 접촉 방법과 성공률이 높았던 시간대 등을 분석하여 제시

다 대민서비스

1) 챗봇 세무 상담¹⁵⁷⁾

- ▣ (챗봇 후타바) 일본 국세청은 2020년부터 AI 기반 자동 응답 기능을 갖춘 챗봇 ‘후타바(ふたば)’를 도입하여 24시간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서비스 범위) 챗봇 후타바는 ▲ 2019~2024년 소득세 확정 신고 ▲ 2019~2024년 소비세 확정 신고 ▲ 인보이스 제도 ▲ 연말정산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임

155) 일본 국세청, 2024, p. 21.

156) KSK2는 기존 KSK라 불리는 납세자 관련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종합 전상망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서, ▲ 종이 기반이 아닌, 데이터를 중심의 업무 처리 실현 ▲ 세목별로 분리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 응용 시스템의 통합 ▲ 기존 독자적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대형 메인프레임 컴퓨터에서, 상용 및 범용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는 ‘오픈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157) 日本國稅廳, 「チャットボット(ふたば)に質問する」,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chatbot/index.htm>, 검색일자: 2025. 6. 12.

- ▶ (한계) 챗봇 후타바가 제공하는 답변은 일반적인 사례에 한정되므로, 상속 재산에서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나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재차 발생한 경우 등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 (성과) 일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챗봇이 받는 질문 수는 <표 1-VII-2>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표 1-VII-2> 챗봇이 받은 질문 수

(단위: 만건)

서비스 범위	연도	2022	2023	2024
소득세 확정 신고		634	651	887
소비세 확정 신고		-	11	37
인보이스 제도		19	69	
연말정산		56	63	-
정액 세액공제		-	-	50

- 주: 1. 원칙적으로 각 연도 별 수치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치를 합산한 값이나, '연말정산'의 경우, 당해 연도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의 수치를 합산한 값임
 2. 2024년 자료는 5월 31일까지의 값임
 3. 2024년의 '소비세 확정 신고' 및 '인보이스 제도'는 동일한 통합 챗봇으로 운영됨에 따라 수치는 합산된 값임

자료: 일본 국세청, 2024, p. 28.

[그림 1-VII-2] 일본 국세청 챗봇 '후타바'



자료: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4 운영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보호

가 운영 거버넌스¹⁵⁸⁾

- ▣ (전담 부서) 일본 국세청 공식 조직도 및 설명에 따르면 장관관방(長官官房) 내 기획과(企画課) 및 참사관(参事官)이 AI 세무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 ▶ (기획과) 기획과에서는 전자정부 실현 및 첨단 정보 기술 대응, 세무행정 장기 전략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 문서의 초안 작성 등을 담당함
 - ▶ (참사관) 참사관은 국세청의 정보시스템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의 수집, 관리, 분석 및 활용을 수행함

- ▣ (이공계·디지털 인력 채용 확대) 일본 국세청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공계·디지털 계열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국세전문관 B’ 시험을 신설하고, 2024년부터 채용을 시작함
 - ▶ 기존 국세전문관 제도는 주로 법학·문과 계열 인재를 대상으로 했으나 시스템 개발, 데이터 분석, ICT 연구·기술 개발 등 디지털 업무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채용 트랙을 마련함(일본 국세청, 2024:22)

158) 日本國稅廳, 「国税庁の機構」, <https://www.nta.go.jp/about/introduction/shokai/kiko/kikou.htm#kokuzei-shingikai>, 검색일자: 2025. 6. 12.

[그림 1-Ⅶ-3] '국세전문관 B' 채용 공고

理工・デジタル系の方向け！！

国税専門官採用試験(B区分)

国税庁では、税務行政の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に取り組んでおり、ICT分野での活躍が期待される理工・デジタル系の人材を求めています。

国税専門B区分(理工・デジタル系)は、基礎数学、情報数学、情報工学、物理、化学等といった理工・デジタル系の分野の問題が多く設定されており、幅広く、理工・デジタル系の方が受験しやすい試験となっています。

○国税専門官とは…

国税庁は、国の財政基盤を支える内国税の賦課・徴収を行う官庁です。国税専門官は、全国の国税局や税務署で**税のスペシャリスト**として、次のような業務を行います。

国税調査官 納税者から提出された確定申告書等について、適正な申告が行われたかどうかの調査や検査を行うとともに、申告に関する指導などを行います。

国税徴収官 定められた納期限までに納付されない税金の督促や滞納処分を行って、税金を徴収するとともに、納税に関する指導などを行います。

国税査察官 裁判官から許可状を得て、悪質な脱税者に対して捜査や差押えなどの強制調査を行い、刑事罰を求めため検察官に告発します。

令和6年度 国税専門B区分(理工・デジタル系) 募集!

税のスペシャリスト

令和6年度 国税専門B区分(理工・デジタル系) 募集!

専門試験科目に(基礎数学、物理、化学等)を設定
詳細は、国税庁HPを確認!!

数学 ゴルデン

国税専門官 理工・デジタル

자료: 일본 국세청, 2024, p. 22.

나 개인정보보호

▣ (사회보장·세무번호제도)¹⁵⁹⁾ 일본 국세청은 2016년부터 ‘마이넘버(マイナンバー, My Number)’라 불리는 사회보장·세무번호제도(社会保障・税番号制度)를 시행하여 디지털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추진함

- ▶ ‘마이넘버(개인번호)’는 일본 국세청이 일본 국민 및 중·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12자리 고유번호이며, ‘법인번호’는 법인에 부여되는 13자리 번호임
- ▶ 마이넘버는 「번호법 「番号法」¹⁶⁰⁾에 의거하여 ▲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복지수당 신청 등) ▲ 세금(소득세, 주민세 신고, 원천징수 관리 등) ▲ 재난 대응(피해자 지원, 자산 확인 등)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159) Japan National Tax Agency, “National Tax Agency Report 2024,” https://www.nta.go.jp/english/Report_pdf/2024e.pdf (accessed July 15, 2025).

160) 정식 명칭은 「행정절차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 「行政手続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임.

- 또한 세무정보는 국세청, 연금 정보는 연금기구에 각각 저장하는 등 국민의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지 않으므로써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 마이넘버의 경우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법인번호는 마이넘버와 달리 사용 범위에 제한이 없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됨
- ▶ 다만 2024년 2월 기준, 마이넘버 카드의 보유율은 약 73.3%였으나, 카드 보유자의 46.7%가 마이넘버 카드를 휴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실제 활용도가 낮음을 알 수 있음¹⁶¹⁾

▣ (유관 법률)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保護法)」 및 「번호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개인의 세무정보와 관련된 마이넘버의 법적 활용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민감 정보인 마이넘버 취급에 대한 엄격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AI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남용 우려에 대응하고자 함

5 민관 및 국제협력 현황

가 과세당국과 민간협력 사례

- ▣ 세무행정 분야에서 과세당국과 민간이 AI를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협력한 사례는 아직 공개된 바 없으나 세무 데이터의 학술 연구 목적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중임
- ▣ (세무 데이터의 학술 연구 목적 활용)¹⁶²⁾ 일본 국세청은 조세 및 재정 정책의 개선과 고도화를 목적으로 학술 연구자들에게 익명화된 개인 세금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임
 - ▶ 이미 2022년부터 대학교 교수 등 외부 연구자를 일본 세무대학(稅務大學)의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세무 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연구를 진

161) ニッセイ基礎研究所, 「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携行率が約半分という現実に向き合う」, <http://xn--https-g0u/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3D78025?site=nli&utm>, 검색일자: 2025. 7. 25.

162) 『日本經濟新聞』, 「国税庁、税務データを研究者に提供へ・税制の検証可能に」, 2023. 10. 8.,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C022BZ0S3A700C2000000/>, 검색일자: 2025. 6. 12.

행해 음

- 제공되는 데이터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어 기업과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며 카메라가 설치된 세무대학 내 특정 장소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게 함
- ▶ 일본 국세청은 해당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로 외부 연구자를 기간제 공무원으로 고용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나 국제기구 또는 국가간 협력¹⁶³⁾

㉟ (AI 기술을 활용한 ODA 사업 수행) 일본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세무행정 지원에 관한 기초 정보 수집·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세무행정 현황과 빅데이터 및 AI 활용 사례를 조사함

- ▶ (목적) 해당 조사의 목적은 수원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세무행정 문제에 대해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델의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함임
- ▶ (시범 사업) JICA는 인도네시아 민박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과세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세무당국의 내부 정보와 연동하여 조세 갭(Tax Gap)을 산출하는 시범 사업을 수행함
 - 해당 사업에서는 전자상거래와 민박 등의 플랫폼 기반 사업에서 공개된 정보를 AI 및 머신러닝 기술과 연계하여 SNS 등 오픈소스 데이터와 자동 연동시킴으로써 정보의 활용 대상을 특정함
 - 즉 ‘웹 스크레이핑(Web Scraping)’ 기술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신원 및 소득을 추정해 납세자별 유효 과세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을 활용함

163) 独立行政法人国際協力機構(JICA), 「全世界ビッグデータを活用した税務行政支援パイロット実証にかかる情報収集・確認調査ファイナルレポートの要約資料」, https://openjicareport.jica.go.jp/pdf/1000051811_02.pdf, 검색일자: 2025. 6. 12.

6

소결

- ▣ 일본의 AI 기반 세무행정 개혁은 2017년부터 일본 국세청 주도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 2017년 6월 「세무행정 미래비전」을 시작으로,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 세무행정 미래비전 2.0」과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 세무행정 미래비전 2023」을 통해 심화된 세무행정 디지털 개혁 방안이 제시됨
 - ▶ 일본 국세청은 상기 문서에서 디지털 개혁 전략과 함께 세무조사 및 체납 대응 등 주요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AI 활용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 일본은 세무행정의 디지털화를 국가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는 핵심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마이넘버 및 법인번호 제도 도입, 민간 전자거래 촉진, 행정 및 기업 백오피스 디지털화, AI 및 데이터 활용 등을 포괄적으로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추진 중임

- ▣ 일본은 아직 세무행정에 특화된 독립적인 AI 운용 지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2019년 내각부가 발표한 「인간 중심의 AI 사회원칙」 및 총무성에서 발표한 「AI 활용 가이드라인」이 AI 활용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음
 - ▶ 일본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2024년 「AI 사업자 가이드라인(1.0)」을 발표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조직이 AI를 활용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유의사항을 제시함

- ▣ 일본 세무행정에서 AI 활용이 두드러지는 부문은 세무조사이며, 2022 및 2023회계연도의 법인세 및 소득세 세무조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둠
 - ▶ 2022회계연도에는 자본금 1억엔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통해 2,113억엔(약 1조 9,774억원), 소득세 세무조사를 통해 1,398억엔(약 1조 3,082억원)의 추정액을 기록하며 모두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함
 - ▶ 일본 국세청은 2025년 7월부터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작업에도 AI를 도입할 예정임

- ▣ 일본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있음
 - ▶ AI 기반 자동 응답 시스템인 챗봇 후타바를 통해 소득세, 소비세, 인보이스 제도에 관한 24시간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AI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세자의 납부 능력, 과거 체납 이력 및 국세청과의 접촉 이력을 분석하여 체납자별로 최적화된 연락 시점과 독촉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 일본 국세청은 국내 조세 및 재정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기반 확대와 함께 국제협력 차원에서도 AI 세무행정 역량을 활용하고 있음
 - ▶ 일본 세무대학을 통해 외부 연구진에게 익명화된 세무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 JICA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AI 세무행정 개발협력 사업도 추진 중임

참고문헌

1. 문헌자료

- 日本経済産業省, 「AI事業者ガイドライン(第1.0版)」を取りまとめました, <https://www.meti.go.jp/press/2024/04/202404>, 검색일자: 2025. 6. 12.
- 日本国税廳, 「税務行政の将来像」, <https://www.nta.go.jp/information/release/kokuz-eicho/2017/syouraizou/pdf/smart.pdf>, 검색일자: 2025. 6. 12.
- _____, 「税務行政の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 - 税務行政の将来像2・0」, <https://www.nta.go.jp/about/introduction/torikumi/digitaltransformation/index.htm>, 검색일자: 2025. 6. 12.
- _____, 「税務行政の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 - 税務行政の将来像2023」, <https://www.nta.go.jp/about/introduction/torikumi/digitaltransformation2023/index.htm>, 검색일자: 2025. 6. 12.
- _____, “National Tax Agency Report 2024,” https://www.nta.go.jp/english/Report_pdf/2024e.pdf, 검색일자: 2025. 7. 15.
- 日本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推進会議, 「人間中心の AI 社会原則」, <https://www8.cao.go.jp/cstp/ai/aigensoku.pdf>, 검색일자: 2025. 6. 12.
- 日本 総務省 経済産業省, 「AI活用ガイドライン」, <https://www.meti.go.jp/press/2024/04/20240419004/20240419004-1.pdf>, 검색일자: 2025. 6. 12.
- 日本 総務省 AI 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会議, 「AI 利活用ガイドライン」,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624438.pdf, 검색일자: 2025. 6. 12.
- 独立行政法人国際協力機構(JICA), 「全世界ビッグデータを活用した税務行政支援パイロット実証にかかる情報収集・確認調査ファイナルレポートの要約資料」, https://openjicareport.jica.go.jp/pdf/1000051811_02.pdf, 검색일자: 2025. 6. 12.

2. 온라인 자료 및 데이터

- 日本国税廳, 「チャットボット(ふたば)に質問する」,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chatbot/index.htm>, 검색일자: 2025. 6. 12.

- _____, 「国税庁の機構」, <https://www.nta.go.jp/about/introduction/shokai/kiko/kikou.htm#kokuzei-shingikai>, 검색일자: 2025. 6. 12.
- 『日本経済新聞』, 「企業の税務調査でAI駆使・近年最多の追徴3500億円」, 2023. 11. 29.,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E277TW0X21C23A1000000/>, 검색일자: 2025. 6. 12.
- _____, 「「AI国税」が脱税指南を駆逐する 億単位の追徴という末路」, 2025. 2. 28., <https://www.nikkei.com/telling/DGXZTS00014470V20C25A2000000/>, 검색일자: 2025. 6. 12.
- _____, 「相続税もAIが調、申告漏れスコア化で狙い絞る」, 2025. 3. 14.,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TG2746X0X21C24A2000000/>, 검색일자: 2025. 6. 12.
- _____, 「国税庁、税務データを研究者に提供へ 税制の検証可能に」, 2023. 10. 8.,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C022BZ0S3A700C2000000/>, 검색일자: 2025. 6. 12.
- 『NHK』, 「所得税の追徴課税1398億円余 過去最多に “AI取り入れた結果”」, 2024. 11. 29., <https://www3.nhk.or.jp/news/html/20241129/k10014653461000.html>, 검색일자: 2025. 6. 12.
- ニッセイ基礎研究所, 「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携行率が約半分という現実に向き合う」, <http://xn--https-g0u//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3D78025?site=nli&utm>, 검색일자: 2025. 7. 25.

VIII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내용 요약

- ▣ 동 보고서에서는 주요 국가로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호주, 중국을 선정하여 세무 행정 분야 AI 기술의 도입 현황과 운영 사례, 운영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보호 방침, 민관 및 국제협력 현황을 비교 분석함
 - ▶ 각 국가에서는 다양한 행정 여건과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도입 현황) 공통적으로 세무행정 측면의 AI 기술 도입과 확대 적용에 필요한 전략 안, 행정지침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특정 전담부서를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올바른 기술 활용을 도모함

〈표 1-Ⅷ-1〉 국가별 세무행정 AI 기술 도입 현황 비교

국가	주요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IRS의 AI 기술 첫 도입 - (2010~2013) 「해외금융계좌신고법」, 「건강보험개혁법」 등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 필요 - (2011) 빅데이터 분석 및 AI 기술 적용을 위한 분석 전담 조직 개설 - (2015)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된 환급검토 프로그램 운영 - (2020~2025) 연방정부의 각종 행정명령과 예산관리국의 메모랜덤 수립을 통해 AI 기술 활용 확대에 따른 책임성·신뢰성·투명성 확보를 도모 - (2022~2023) 대규모 예산 확보에 따라 AI 기술 적용이 확대되었고, '전략운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DGFIP의 '조세법칙 식별 및 쿼리 분석(CFVR)' 시스템 최초 시행 - (2017) 프랑스 정부에서 신설한 '공공행정 혁신기금(FTAP)'을 통해 AI 시스템 개발 예산을 조달함 - (2018) '국가 AI 전략(SNA)' 채택 - (2023) 과세 및 조세법칙 방지 목적에 집중하고 있으며, 초기 세무조사, 세금신고 효율화 시스템 개발에서 법률 분석 지원, 지자체 회계관리 시스템 개선 등으로 확대 중 - (2024) 8월 발효된 EU의 「인공지능법」이 공통기준으로서 적용되었으며, MEFSIN의 조세분야 시스템은 주로 텍스트 분석형·예측형·이미지 인식형 AI를 활용

〈표 1-Ⅷ-1〉 의 계속

국가	주요 내용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범캐나다 AI 전략' 발표 - (2019) 「자동차 의사결정 지침」과 「개인정보보호 운영 지침」 수립 - (2021) 퀘벡 주정부는 '공공행정 AI 통합 전략 2021-2026'을 수립하여 AI 시스템의 사회적 영향력을 적절히 규제하고, 올바른 활용을 도모 - (2024) 온타리오 주정부는 「AI 책임 사용 지침」을 시행함으로써 AI의 위험관리, 투명성, 영향 평가, 보고의무 등 규정을 마련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ATO의 디지털 우선 원칙 공표 - (2019) '2019-2020 ATO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처음으로 자동화와 AI 기술 활용 계획을 발표 - (2022) 'ATO 디지털 전략 2022-2025' 발표로 전방위적 전자세정 구축 로드맵을 제시하여, AI 기술 활용을 구체화 - (2023) '데이터와 디지털 정부 전략' 발표로 전자정부 구축과 디지털 공공서비스 부문 AI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 - (2024) 'AI 활용 신뢰성 보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공공부문 AI 적용의 확대 및 윤리적 활용을 도모하고, 향후 국가 차원의 'AI 역량 계획'을 발표할 예정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세수징수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과세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AI의 활용 및 정보 수집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 - (2020)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 강요」를 통해 전자세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 - (2020) 1994년부터 시작된 '금세 프로젝트'가 IV기로 접어들면서 스마트 세무행정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으며, 해당 시스템에서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 - (2021)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에서 「조세 징수 및 행정 개혁 심화를 위한 의견」 발표를 통해 더욱 고도화된 플랫폼 구축과 AI 확대 활용을 도모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세무행정 미래비전」 공표를 통해 전자세정 운용계획과 이를 위한 AI 기술의 활용을 강조 - (2021~2023) 「세무행정 미래비전 2.0」과 「세무행정 미래비전 2023」을 연이어 공표하여 AI 기술의 확대 적용을 더욱 구체화

자료: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 (운영 사례) 주로 자연어 처리 챗봇과 같은 민원 상담시스템, 탈세행위, 신고·환급 등 과세오류 탐지, 분석에 활용되는 룰베이스/머신러닝, 미신고 건축물 식별과 같은 이미지 인식형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내부 행정의 효율성 향상뿐 아니라 납세 협력 제고, 과세 사각지대 관리, 납세자 편의 증진 등 다방면의 목적에 기여함

〈표 1-Ⅷ-2〉 국가별 세무행정 AI 기능별 분류

국가	AI 기술 구분				대표 사례
	롤베이스 시스템 (자동화 업무)	머신러닝 (패턴인식, 예측 등)	딥러닝 (이미지 인식, NLP 포함)	생성형	
미국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소득세 신고서 분류모델 - 부당 환급 사례 탐지 - 세무조사 표본조사 - 항소자료 검토 - 기계번역 시스템 - 챗봇/음성봇 서비스
프랑스	○	○	○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법인의 조세범칙행위 식별 및 세무조사 대상 선별 - 세무조사 대상자 식별 및 담당자 배정 - 미신고 건축물 적발 - 국회예산 수정안 분석 - 중소기업 재무위험 조기 감지 - 챗봇 서비스
캐나다	○	○	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및 환급처리 - 납세자의 근로형태 분류 자동화 - 생성형 챗봇 서비스
호주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소득자 및 법인 중심의 거래 패턴 포착과 세무조사 대상 식별 - 부가가치세 탈세 정황 포착 - 연말정산 및 소득신고 적합성 분석 - 이미지 인식과 자연어 처리를 통한 납세자 증빙 분석 - 챗봇/음성인식 서비스
중국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기업 모니터링 및 리스크 분석 - 세무조사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표 1-Ⅷ-2〉 의 계속

국가	AI 기술 구분				대표 사례
	룰베이스 시스템 (자동화 업무)	머신러닝 (패턴인식, 예측 등)	딥러닝 (이미지 인식, NLP 포함)	생성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지원 - 챗봇/세무로봇 상담 서비스 - AI 강사를 통한 납세자 교육
일본	○	○	X	X	- 소득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중소기업의 세금신고 누락 패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납세자의 납부역량 분석 - 챗봇 서비스

주: ○: 명확하게 기능이 있음, △: 계획수립, 개발 혹은 시범운영 중, X: 공식자료를 통해 확인된 기능이 없음
 자료: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 (운영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보호) 전반적으로 중앙정부나 과세당국 내에서 AI 사용과 관련된 전략적 관리, 내부 윤리 기준, 사전 검토 체계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납세자 정보보호를 위한 국내법 또는 국제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그러나 AI의 활용은 비교적 새로운 기술로 여전히 표준화되거나 정립화되지 않은 영역을 발굴 보완 중이며, 특히 윤리적 활용, 개인정보 보안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미비하고, 시행착오가 많은 단계로 여겨짐

〈표 1-Ⅷ-3〉 국가별 세무행정 AI 운영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비교

국가	거버넌스 체계	개인정보보호 법령/지침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빅데이터 분석 및 AI 기반 주요 탈세 대응 업무 전담을 위한 OCA를 창설 - (2016) 연구·응용분석·통계 부서(RAAS) 공식 출범 - (2019) 데이터 분석 전략위원회(DASIB)와 자문 그룹(DAAG)을 구성 - 현재 AI 프로젝트 전담 조직인 '데이터 및 분석 거버넌스 프로그램관리국' 설립을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행정명령 13960」을 통해 연방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 촉진 - 개인정보규정 「IRM 10.5」을 토대로 엄격한 법적 및 내부 규정을 준수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DGFiP의 AI 시스템 부문 운영구조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CVFR 세무 조사 시스템의 경우 전담부서인 SJCF-1D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시행된 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준수 - (2019) 「정보, 자료 및 자유에 관한 법률」을 통해 EU법 GDPR 이행을 위한 개정 및 시행하였고, 그 밖에 「예산법」, 행정규칙, 부처별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적용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가 연방 단위에서 국가 AI 정책을 총괄 - 주별로 자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개인정보보호 운영 지침」과 주별 「AI 책임 사용 지침」, 「개인정보 접근법」, 「디지털 보안 및 신뢰 강화법」, 「개인정보의 자유·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적용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ATO 내 AI 개발 전담 부서로 스마트 데이터를 운영 - ATO 내 전략위원회가 자동화와 AI 전략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데이터 윤리 원칙」 운영 - (2024~2025) AI 정책과 리스크관리 부문 행정지침 수립 예정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당국 내 세무관리 및 과학기술 개발국과 디지털 세무관리센터가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합신원인증플랫폼'을 활용하여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사이버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등 적용 중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당국 내 기획관과 참사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넘버'를 활용하여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번호법」 적용 중

자료: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 (협력·파트너십) 국가별로 정부와 과세당국 차원에서의 조세분야 국제협력 참여도와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 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공유와 민간기업, 특히 자국기업과의 긴밀한 기술 협력을 추진 중임

〈표 1-Ⅷ-4〉 국가별 세무행정 AI 기술 협력·파트너십 요약

국가	주요 내용		
	국가 협력	민관협력	국제협력 네트워크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와 글로벌 조세동맹을 체결하고 있으나, AI 기술 관련 국제협력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S 범죄수사국은 Palantir와 협력하여 탈세 패턴 식별에 AI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 조사자료 검사, 사례분석, 신고 분석 프로그램 등 분석 역량을 더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국제협력 네트워크 사례 없음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를 포함한 EU 주요국은 세무행정 정상회의를 통해 AI 기술, EU 행정협력지침 데이터 활용, 디지털 보안을 핵심 협력분야로 선정하여 협력하고 있으나 세부 프로젝트 내용은 공개된 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GFIP는 자체 AI 시스템 구현에 있어 구글, 메타 등의 인프라 및 모델을 일부 활용 중이나, 민간기업과의 구체적 협력 사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협력 내용과 동일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술 협력이나 관련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정부는 OECD 산하의 조세행정 회의체 의장직, 국가별 과세당국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세정 서비스 개선을 리드 중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와 함께 '대기업을 위한 5대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AI의 윤리적 활용, 데이터 관리 등 주제로 정보를 공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O는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내부행정 데이터 분석 모델 고도화, 챗봇 서비스 개발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최근에는 AI 기반 탈세포착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 공고문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세무행정회의(ATAX) 주관, 아태세무행정 연구협의체(SGATAR) 활동 등을 통해 AI 관련 사례 공유 등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당국에서 '일대일로 세무행정협력기구(BRITACOM)'을 설립함으로써 타지키스탄, UAE, 우루과이, 시에라리온과 함께 세무행정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과세당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인 텐센트와 협력하여 지능형 세무랩 설립 및 스마트 세무 솔루션을 개발하여 AI 기반 세무행정 서비스를 확대 제공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국제협력 네트워크 사례 없음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ICA에서 인도네시아, 몽골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세무행정 지원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과의 AI 활용 관련 직접적인 협력사례는 공개된 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국제협력 네트워크 사례 없음

자료: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2 시사점

가 조사 및 분석의 한계

- ▣ 동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국가별 자료 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나 신뢰성을 검증하는 데 일부 제약이 존재하며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 (중국 내부 자료의 접근 제한) 중국의 세무행정 AI 기술 관련 자료의 경우, 내부 법규에 따른 중국 정부의 모니터링 체제로 인하여 열람이 상당수 제한됨
 - 타 국가 대비 원문자료를 검색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검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해외 논문과 도서, 국제기구, 글로벌 회계법인의 보고서, 언론 기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 ▶ (세부 AI 기술 정보 비공개) 조사 대상국 대부분 세부 AI 기술 활용과 관련된 정보는 민감정보로 여겨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공식 문서상 블러(blur) 처리를 하거나 일부 상세설명이 누락됨
 - 세부 AI 알고리즘의 공개는 정보의 수집, 분류, 분석의 투명성과도 연관될 수 있는데 이용자들이 하여금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거나 여론 왜곡에 동원될 수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 결과적으로 해당 자료의 내용이나 시점에 대한 검증이 용이하지 않고, 정보의 신뢰도를 조사자가 직접 판단하고 정리하는 데 한계가 따름

나 국가별 핵심 쟁점 및 과제

- ▣ 조사 대상 국가들은 기존 세무행정 시스템과 조직 운영만으로는 과세 효율성 및 효과성을 지속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2010~2020년대부터 AI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확대 활용함
 - ▶ 국가별 활용 수준이나 제도적 지원의 차이는 존재하나 AI 기술 활용을 단순한 자동화 수단이 아닌, 디지털 공공행정의 핵심 도구이자 향후 세무행정의 전략적 기반으로 여김

- 원활한 AI의 적용과 운용에 필요한 전담 부서 신설, 행정지침 및 전략안 수립, 관련 플랫폼 개편 등 각종 노력으로 주요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둠

▶ AI 기반 세무행정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AI 기술이 대내외 행정 효율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납세협력 제고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목표까지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함

▣ 그러나 AI 기술의 확대 적용과 안정화에는 더욱 시행착오가 필요한 단계로 보이며, 일부 과제 해결 노력이 필수적임

▶ 특히 대부분의 국가가 개인정보 취급 관련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행정에서 취급되는 데이터의 정당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AI 분석 및 처리 범위와 관련 더욱 심도 있는 접근과 논의가 필요함

▶ AI 기술의 확산과 활용 모델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공고히 하고,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 간 연계, 데이터 정합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발과 이를 위한 내부 교육체계 정비를 요함

▶ 집중적 투자와 R&D가 이뤄지는 신기술 분야인 만큼 정부에서는 민간기업, 부처협업,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을 정례화하여 보다 유연한 기술 이전, 지식 공유, 인재양성 측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복미

1 미국

가 청정 전력 추가 세액공제 최종 규정 발표

[조세동향 25-01호]

미국 재무부(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와 국세청(IRS)은 2025년 1월 8일, 저소득층 거주지역 청정 전력 추가 세액공제 프로그램(Clean Electricity Low-Income Communities Bonus Credit Amount Program)¹⁶⁴⁾을 시행하기 위한 최종 규정¹⁶⁵⁾을 확정하여 발표함¹⁶⁶⁾¹⁶⁷⁾

▶ 해당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연소(combustion)와 가스화(gasification) 없이 청정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구축에 투자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고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¹⁶⁸⁾

- 기존의 청정 전력 투자 세액공제(IRC §48E)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투자 금액의 최소 6%에서 최대 30%임

164) 관련 법 조문은 「내국 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IRC)」 §48E(h)

165) 최종 규정은 시행령과 같으며 법적 효력이 있음.

166)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Releases Final Rules to Expand Clean Energy Investments and Lower Costs in Low-Income Communities," 보도 자료, 2025. 1. 8.,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775>, 검색일자: 2025. 1. 20.

167) IBFD, "Finalized IRS Regulations Boost Clean Energy Access, Tax Credits for Low-Income Communities," 2025. 1.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1-13_us_1.html, 검색일자: 2025. 1. 20.

168) Federal Register, "Guidance on Clean Electricity Low-Income Communities Bonus Credit Amount,"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13/2025-00331/guidance-on-clean-electricity-low-income-communities-bonus-credit-amount-program>, 검색일자: 2025. 1. 20.

- 이상의 프로그램은 청정 전력 생산 시설의 위치¹⁶⁹⁾에 따라 기존의 세액공제 비율을 10%p 또는 20%p 증가시킴

▶ 최종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정 전력 생산 기술과 시설의 범위를 확장한바, 기존의 풍력, 태양광 및 태양열뿐만 아니라 수력, 지열, 해양유체동력, 원자력 생산 기술 및 설비까지 포함됨
- 저소득층 거주지역 개발 프로젝트의 대상을 확장하여 더 많은 가정이 청정 전력 생산 시설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함
- 청정 전력 생산 시설이 주변 지역에 제공해야 하는 금전적인 가치를 명확히 함
- 신규 사업자 및 영세 사업자에게 청정 전력 생산 시설 구축 및 투자와 관련하여 우선권을 부여함

▶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재무부 부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정 전력 추가 세액공제는 오랫동안 소외되고 방치되었던 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개발자들이 지역사회의 경제와 에너지 관련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에 발표된 최종 규정은 모든 미국인이 청정 에너지 경제 발전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임

나 OECD 글로벌 조세협정 거부

[조세동향 25-02호]

▶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미국 재무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주 OECD 미국대표부 대사에게 전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¹⁷⁰⁾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포함한 “OECD 글로벌 조세협정(OECD Global Tax Deal)”¹⁷¹⁾은 미국에서 어떠한 효력이나 효과도 없다고 명확히 밝힘¹⁷²⁾¹⁷³⁾¹⁷⁴⁾

169) 위치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함: 1. 저소득층 거주지, 2. 아메리카 원주민 영토, 3. 저소득층 거주지 개발 프로젝트 현장, 4. 저소득층 경제적 지원 프로젝트 현장

170)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를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 문서임.

171) OECD 글로벌 조세협정: 필라1(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게 하는 방침이 포함됨)과 필라2(다국적 기업에 15%의 최저한세-글로벌 최저한세-를 부과하고자 함)

172) The White House,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 미국 의회가 OECD 글로벌 조세협정을 입법하지 않는 이상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조세협정 관련 정책은 미국 내에서 효력이 없으며, 미국 재무부 장관과 주 OECD 미국대표부 대사는 이를 OECD에 통보할 것을 명함
- ▶ 또한 미국 재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불이행하는 국가 또는 미국 기업에 부당한 조세 정책을 적용하거나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를 조사하고, 이러한 불이행 또는 조세 정책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을 고안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을 명함
 - 미국 재무부 장관은 2025년 1월 20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대응 방안을 보고해야 함

다 2025년 세금 사기 사례(Dirty Dozen) 발표

[조세동향 25-03호]

- ▣ 미국 국세청은 2025년 2월 27일 더티 더즌(Dirty Dozen)으로 불리는 주요 세금 사기 수법을 발표하며, 납세자, 기업 및 세무 전문가들에게 주의를 당부함¹⁷⁵⁾
 - ▶ 더티 더즌은 미국 국세청에서 납세자와 세무전문가의 세금 사기 관련 경각심을 높임과 더불어 이들의 보호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12가지 주요 세금 사기 수법을 소개하고 있음¹⁷⁶⁾

(OECD) Global Tax Deal(Global Tax Deal),” 보도자료,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the-organization-for-economic-co-operation-and-development-oecd-global-tax-deal-global-tax-deal/>, 검색일자: 2025. 2. 6.

- 173) IBFD, “United States Denounces OECD Global Tax Deal,” 2025. 1.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1-21_us_4.html, 검색일자: 2025. 2. 6.
- 174) Bloomberg Law News, “OECD Global Tax Deal Has No Force In US, Trump Says (1),” 2025. 1. 20.,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4T1HRFC000000?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jcite, 검색일자: 2025. 2. 6.
- 175) Internal Revenue Service, “Dirty Dozen tax scams for 2025: IRS warns taxpayers to watch out for dangerous threats,” <https://www.irs.gov/newsroom/dirty-dozen-tax-scams-for-2025-irs-warns-taxpayers-to-watch-out-for-dangerous-threats>, 검색일자: 2025. 2. 28.
- 176) 12가지 수법 : ① 이메일 피싱(Phishing) 및 스미싱(Smishing) ② SNS에서 잘못된 정보 유포 ③ 미국 국세청의 개인 온라인 계정 도용 ④ 가짜 자선단체 ⑤ 허위 유류세 공제(Fuel Tax Credit) 청구 ⑥ 허위 병가 및 가족휴가 공제(Sick Leave & Family Leave Credit) ⑦ 허위 자영업자 세액공제(Self-Employment Tax Credit) ⑧ 허위 가정부 고용세(Household Employment Tax) 신고 ⑨ 원천징수 과장 공제(Overstated Withholding Scam) ⑩ 허위적 절충 납세 합의안(Offer in

- 소개된 사례는 연중 상시적으로 발생하나 세무신고 기간에는 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임
- ▶ 세금 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허위정보를 기반으로 이를 유포하거나 허위 세무 신고(공제 등)가 주를 이루었음
 - 작년의 경우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① 연방 및 주정부 세무당국 ② 민간부문의 소프트웨어 및 금융 회사 ③ 주요 세무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음¹⁷⁷⁾
- ▶ 미국 국세청은 더티 더즌 인식도 제고를 위해 세무제도의 악용을 권장하거나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신고서를 작성하는 이들에 대해 신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모두 접수를 받고 있음

라 내부고발자 사무국 운영계획 발표

[조세동향 25-04호]

- ▣ 미국 국세청의 내부고발자 사무국(IRS Whistleblower Office)은 2025년 4월 18일,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최초의 다년간 운영계획(Multi-Year Operating Plan)을 발표함¹⁷⁸⁾
 - ▶ 내부고발자 사무국은 세법 또는 국세청이 관리, 집행, 조사하는 기타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처리함
 - ▶ 운영계획은 향후 3년간(2025~2027) 추진될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담고 있고, 각 전략은 총 38개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로 구성되어 있음

Compromise, OIC) ⑪ 유령 세금신고 대행자(Ghost Tax Return Preparers) ⑫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 및 신종 고객 사기

- 177)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states, tax industry announce new joint effort to combat growing scams and schemes; ongoing coordination to follow in footsteps of Security Summit's identity theft efforts to help taxpayers and protect revenue," <https://www.irs.gov/newsroom/irs-states-tax-industry-announce-new-joint-effort-to-combat-growing-scams-and-schemes-ongoing-coordination-to-follow-in-footsteps-of-security-summits-identity-theft-efforts-to-help-taxpayers-and>, 검색일자: 2025. 2. 28.
- 178) IRS, "IRS Whistleblower Office releases operating plan outlining integrated approach to advance program," 2025. 4. 18., <https://www.irs.gov/newsroom/irs-whistleblower-office-releases-operating-plan-outlining-integrated-approach-to-advance-program>, 검색일자: 2025. 4. 23.

-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청구 제출(claim submission) 절차 개선
- 높은 가치를 가진 내부고발자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
- 내부고발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 지급
- 내부고발자 대상 청구 현황 및 국세청의 청구 결정 근거 정보 제공
- 내부고발자 및 납세자 정보의 보호
- 직원들에게 효과적인 수단(tool), 기술, 교육 및 기타 자원의 지원
- ▶ 내부고발자로부터 받은 정보는 세법 위반 방지(deterrence) 및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2007년 내부고발자 사무국 설립 이래 내부고발자의 정보로 징수된 금액은 70억달러 이상, 지급된 보상은 13억달러 이상임¹⁷⁹⁾
 - 2024년도에는 총 4억 7,470만달러를 징수했으며 그중 1억 2,350만달러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는데, 이는 사무국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포상금이었음

마 ▶ One Big Beautiful Bill 법안, 하원 통과

[조세동향 25-05호]

- ▣ 미국 하원(House)은 2025년 5월 22일, 'On Big Beautiful Bill 법안'(이하 '법안' 이라 함)을 통과시킴¹⁸⁰⁾
 - ▶ 미국 백악관은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대규모 감세, 불법체류자의 메디케이드¹⁸¹⁾ 혜택 제외, 국경안보 강화, 항공교통관제 현대화, 미성년자의 성전환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 종료 등을 제시함¹⁸²⁾
 - ▶ 본 법안은 총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세 관련 조항은 제11장에 명시되어 있음

179) 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일반적으로 징수 금액의 15~30% 사이임.

180) Congress, "Tax Provisions in H.R. 1,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House-Passed Version," 2025. 5. 27.,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8550?s=1&r=9>, 검색일자: 2025. 5. 28.

181) 메디케이드(medicaid)는 미국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연방과 주정부의 공동 프로그램임.

182) The White House, "The One, Big, Beautiful Bill is a Once-in-a-Generation Chance," 2025. 5. 16.,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2025/05/one-big-beautiful-bill-is-a-once-in-a-generation-chance/>, 검색일자: 2025. 5. 28.

- 조세 관련 조항의 상당수는 「세금감면 및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 TCJA)으로 알려진 공법(Public Law, P.L.) 115-97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참고로 TCJA의 조항 중 개인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조항은 2025년에 만료될 예정임¹⁸³⁾

▣ 제11장은 네 가지 부제(subtitle)로 구성되어 있음

- ▶ 첫 번째 부제는 ‘미국 근로자와 가족의 번영 촉진(Make American Workers and Families Thrive Again)’으로, 미국 가정과 근로자 세금 인상의 영구적 방지(파트 1), 추가 세금 감면(파트 2), 건강 투자 확대(파트 3)로 구성됨
 - **(파트 1)** TCJA에서 개인 및 가족과 관련된 세제 혜택의 적용기간을 연장함¹⁸⁴⁾
 - **(파트 2)** TCJA에서 제공했던 감세 혜택 이상의 추가적인 세금 감면 조치를 개인에게 제공함¹⁸⁵⁾
 - **(파트 3)** 건강 관련 여러 가지 세금 조항을 개정함¹⁸⁶⁾
- ▶ 두 번째 부제는 ‘미국 농촌과 중산층의 성장 촉진(Make Rural America and Main Street Grow Again)’으로, 농촌과 중산층을 위한 TCJA 법안 연장(파트 1), 추가 세금 감면(파트 2)로 구성됨¹⁸⁷⁾
 - **(파트 1)** TCJA에서 만료 예정이었던 기업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함¹⁸⁸⁾
 - **(파트 2)** 기존 TCJA에서 제공한 혜택 이상의 추가적인 세금 감면 조치를 기업에 제

183) Congress, “Expiring Provisions of P.L. 115-97 (the Tax Cuts and Jobs Act): Economic Issues,” 2025. 5. 27.,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8550?s=1&r=9>, 검색일자: 2025. 6. 11.

184) 연장되는 조항은 소득세율 인하, 표준공제액 인상, 개인공제(personal exemptions) 폐지,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확대,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한도 확대, 대체최저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 면제금액 확대, 패스스루(pass-through) 사업소득 공제 등이며, 이 중 일부 조항(소득세율, 개인공제, 패스스루 사업소득 등)은 최근 몇 년 사이 개정이 이루어짐.

185) 추가되는 세금 감면 항목으로는 팁(tip) 소득에 대한 신규 공제, 자격을 갖춘 초과근로에 대한 공제, 미국 내에서 조립된 차량의 자동차 대출이자에 대한 공제 등이 신설됨.

186) 새로운 의료 및 건강보험 구매 제도인 CHOICE 제도를 신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 및 건강보험을 세금상 유리한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187) 파트 3의 경우, 조세 조항(Tax provision)이 아니므로 해당 내용은 본문에서 제외함.

188)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연구개발비(Research and Experimental Expenditures) 공제, 사업이자 공제의 소득 한도 상향 유지, 다양한 국제적 법인세 관련 조항의 연장

공함189)

- ▶ 세 번째 부제는 ‘미국의 재도약(Make America Win Again)’으로, 기득권(Elites)보다 근로 가정의 우선(파트 1), 불법 이민자의 납세자 혜택 폐지(파트 2), 사기, 낭비 및 남용의 방지(파트 3)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됨
 - (파트 1) 기득권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와 같이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에 대한 대응 방안도 포함됨¹⁹⁰⁾¹⁹¹⁾
 - (파트 2) 불법 이민자를 포함한 특정 이민 신분을 가진 개인에 대한 세금 관련 제도의 변경을 통해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¹⁹²⁾
 - (파트 3) 세무행정 및 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는 내용임¹⁹³⁾
- ▶ 네 번째 부제는 ‘부채한도 상향(Increase in Debt Limit)’으로, 공공부채 한도 조정(Section 113001) 하나의 조항을 포함하며, 공공부채의 최대 한도를 4조달러 증액 시킴

189) 보너스(bonus) 감가상각을 추가적인 유형의 자산으로 확대 적용, 소규모 기업이 자주 사용하는 섹션 179 비용 처리의 한도 금액 인상,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Low-Income Housing Tax Credit) 제도 개정, 법률상 “소규모 제조업체(small manufacturing business)”로 인정받는 기준 금액(매출액 한도) 인상, 기회 특구(Opportunity Zone) 세금 혜택 프로그램의 연장 및 개혁 추진 등임.

190) 에너지 관련 주요 세제 혜택으로는 청정 자동차(clean vehicles) 세액공제, 청정 전기(clean electricity)에 대한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공제 한도로는 2026년부터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를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최대 4만달러로 제한하고, 고소득 납세자에게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있음.

191)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위원장인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에 의하면, 해당 파트의 취지는 일반 가정에 더 많은 세금 경감(tax relief)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기득권에 대한 수많은 세금 우대(tax break) 조치를 철폐하는 것임. 더해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외국 세금에 대한 대응 조항의 경우, 미국 내 고용을 유지하며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성장을 목적으로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에 불공정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국내 일자리를 줄이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됨.

192) 건강보험 보조금(premium tax credit)의 자격 제한 강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개인의 해외 송금(remittance transfers)에 대한 소비세(excise tax) 신설, 교육 관련 두 가지 세금 혜택을 신청할 때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규정 신설 등임.

193) 건강보험 보조금(premium tax credit) 관련 규정 개정,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신청 시 인증 요건 강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도입된 직원 유지 세액공제(COVID Employee Retention Credit, COVID ERC)의 조기 종료 및 관련 집행 강화 등임.

〈표 2-I-1〉 One Big Beautiful Bill 제11장 구성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미국 근로자와 가족의 번영 촉진 (Make American Workers and Families Thrive Again)	- 파트 1: 개인 및 가족 관련 세제 혜택 적용 기간 연장 - 파트 2: 개인에게 TCJA에서 제공한 감세 혜택 이상의 추가적 세금 감면 조치 - 파트 3: 건강 관련 여러 가지 세금 조항 개정
미국 농촌과 중산층의 성장 촉진 (Make Rural America and Main Street Grow Again)	- 파트 1: 만료 예정이었던 기업 관련 세제 혜택 연장 - 파트 2: 기업에 TCJA 혜택 이상의 추가적 세금 감면 조치
미국의 재도약 (Make America Win Again)	- 파트 1: 기득권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의 축소 및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세금(DST 등)을 부과하는 국가에 대한 대응 - 파트 2: 특정 이민 신분(불법 이민자 포함)을 가진 개인에 대한 세금 관련 제도의 변경 - 파트 3: 세무행정 및 집행 관련 변화
부채한도 상향 (Increase in Debt Limit)	공공부채 최대 한도 상향(4조달러 증액)

자료: Congress, "Tax Provisions in H.R. 1,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House-Passed Version," 2025. 5. 27.

☞ 법안 제11장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주로 세 번째 부제(‘미국의 재도약’) 파트 1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의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UTPR), DS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미국 내 생산 지원 및 청정연료 세액공제 양도 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이 있음

▶ 법안의 ‘불공정한 외국 세금에 관한 대응 조항(Section 112029)’은 어떤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부과할 경우, 미국에서 활동하는 해당 국가의 개인과 법인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¹⁹⁴⁾

- 법안에서는 차별적 세금을 불공정 외국 세금(unfair foreign tax)으로 칭하며, 주요 대상은 UTPR, DST,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s Tax), 재무부 장관(secretary)이 규정하는 역외세(extraterritorial tax)와 차별세(discriminatory tax), 그리고 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불균형한 세부담을 지는 경우임¹⁹⁵⁾

194) Enforcement of remedies against unfair foreign taxes

195) 다만, ① 미국인 개인 및 사업체(trade or business)에 적용되지 않는 세금 ② 해당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미국인이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 세율 인상의 주요 대상은 외국인 개인 및 법인이 미국에서 얻은 배당, 이자와 같은 수동소득(passive income)에 대한 원천징수세, 외국인 투자자의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외국 사립 재단의 소비세(excise tax), 미국 내 외국계 법인의 기반잠식세(Base Erosion Tax) 등이 제시됨
- 해당 세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의 세율은 5%에서 시작하여 매년 5%p 증가, 최대 20%까지 인상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은 법안 공포일(enactment date)로부터 즉시 발효될 예정임
- ▶ 법안에서의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의 단계적 폐지 및 제한 조항’(Section 112014)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규정하는 특정 물품에 대한 미국 내 생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제한 및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¹⁹⁶⁾¹⁹⁷⁾
 - **(제한 1)** 법안 제정일(enactment)로부터 2년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납세자가 금지된 외국 법인(prohibited foreign entity)에 물질적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지 않음¹⁹⁸⁾
 - **(제한 2)** 납세자가 특정 외국 법인(specified foreign entity)인 경우, 법안 제정일 이후 모든 과세연도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제한 3)** 납세자가 외국 영향 법인(foreign-influenced entity)인 경우, 법안 제정일로부터 2년 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제한 4)** 납세자가 금지된 외국 법인에 배당금 등을 일정 기준 초과 지급 또는 해당 외국 법인과 거래를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라이선스 계약하에 생산하는 경우, 법안 제정일로부터 2년 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¹⁹⁹⁾

196) Phaseout and Restrictions on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197) 특정 물품은 인버터(inverter), 태양광 부품, 풍력 부품, 배터리 부품, 중요 광물(critical minerals) 등임.

198) 금지된 외국 법인이란, 법안에서 정의하는 특정 외국 법인 또는 외국 영향 법인에 해당하는 자임. 특정 외국 법인은 ① FY2021 국방수권법 §9901(8)의 (A), (B), (D), (E)항에 명시된 위험 외국 법인 ②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되어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법인 ③ 공법(Public Law, P.L.) 117-78§2(d)(2)(B)에 따른 목록 중 (i), (ii), (iv), (v)항에 등재된 외국 법인 ④ FY2024 국방수권법 §154(b)에 명시된 법인 ⑤ 외국지배법인(foreign-controlled entity)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외국 법인을 의미함. 외국 영향 법인은 ① 특정 외국 법인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법인의 임원(covered officer) 임명 권한을 가지는 경우 ② 특정 단일 외국법인(single specified foreign entity)이 해당 법인의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경우 ③ 두 개 이상의 특정 외국 법인이 총합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

199) 배당금 외 이자, 서비스에 대한 대가, 임대료, 로열티, 보증금 등이 있음.

- (단계적 폐지) 풍력 부품은 2027년 12월 31일 이후 판매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모든 부품의 경우 같은 날짜 이후 판매분부터 세액공제의 양도가 금지되고 2031년 12월 31일 이후 판매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
- ▶ 법안의 '청정연료 생산 세액공제의 양도 폐지 조항'(Section 112010)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도입한 기업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다른 기업에 합의된 가격에 현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⁰⁰⁾
 -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이전 청정에너지 생산업체는 대기업과 세무 투자 파트너십(tax equity partnerships)을 맺는 형태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양도 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조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생산업체들이 받은 세액공제 가치의 평균 약 15%가 손실되었음²⁰¹⁾
 - 반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양도 제도 도입 이후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양도된 세액공제가 2023년 기준 세액공제 액면금액의 달러당 약 89~95센트에 판매되면서 세액공제 양도 제도 도입 이전 대비 청정에너지 생산자들이 받은 세액공제 가치의 손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²⁰²⁾
 - 법안에서는 2027년 12월 31일 이후 생산된 연료에 적용되는 청정연료 세액공제는 양도가 불가하도록 규정함²⁰³⁾

바 아칸소주(州) 전역에 재해세제 감면 적용

[조세동향 25-05호]

- ▣ 미국 국세청은 2025년 4월 14일, 동년 4월 2일부터 시작된 폭풍, 토네이도, 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아칸소(Arkansas)주 전역의 개인 및 사업체를 위한 세제 감면(tax relief) 조치를 발표함²⁰⁴⁾

200) Repeal of Transferability of Clean Fuel Production Credit

201)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이전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과 세무 투자 파트너십(tax equity partnerships)을 맺고,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선금을 제공받는 대가로 세액공제액의 일부분을 이들 기업에 제공하였음.

202) Crux, "Transferable tax credit market intelligence report," 2023.

203) 본 조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발표한 행정명령 중 IRA을 통해 배정된 예산의 지출을 중단하는 내용이 있는데, 해당 행정명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04) IRS, "IRS: All of Arkansas qualifies for disaster tax relief; various deadlines postponed to

- ▶ 적용 대상은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 지정한 모든 아칸소주 지역임
 - 아칸소주 75개 카운티(counties)²⁰⁵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및 가구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세청에 등록된 주소지가 아칸소 재해 지역인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됨
- ▶ 감면의 주요 내용은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의 연장, 가산세(penalties) 면제, 그리고 재해손실 공제 등임
 - 해당 납세자는 2025년 11월 3일까지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됨
 - 벌금 면제의 경우 2025년 4월 2~17일 사이에 급여세 payroll tax) 및 소비세(excise tax)에 대한 예치금(deposit)이 납부될 경우 적용됨
 - 보험 등으로 보전받지 못한 재해 관련 손실에 대해, 개인 및 사업체는 손실발생 연도(2025년) 또는 전년도(2024년) 신고 시 공제 신청이 가능함
- ▶ 국세청은 재난 지역 외부에 거주하지만 연기된 기한 내 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해당 지역에 있는 납세자와도 협력을 통해 지원할 예정임²⁰⁶

사 2026년 건강저축계좌(HSA) 납입한도 상향

[조세동향 25-06호]

- ▣ 미국 국세청은 2025년 5월 19일, 2026년 회계연도의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 HSA) 납입한도 상향을 발표함²⁰⁷⁾²⁰⁸⁾
 - ▶ 자기 부담(self-coverage) 보험 가입자는 2025년 4,300달러²⁰⁹⁾에서 2026년 4,400

Nov. 3,” 2025. 4. 14., <https://www.irs.gov/newsroom/irs-all-of-arkansas-qualifies-for-disaster-tax-relief-various-deadlines-postponed-to-nov-3>, 검색일자: 2025. 5. 1.

205) 미국에서 쓰이는 행정구역의 단위. 주로 state → county → city/town/village 순임.

206) 본 조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발표한 행정명령 중 IRA을 통해 배정된 예산의 지출을 중단하는 내용이 있는데, 해당 행정명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07) IBFD, “IRS Raises 2026 Health Savings Account Contribution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5-21_us_1.html, 검색일자: 2025. 6. 12.

208) Internal Revenue Service, Internal Revenue Bulletin No. 2025-21, 2025.

209) 2025년 7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84만원임.

달러,²¹⁰ 가족 부담(family-coverage) 보험 가입자는 2025년 8,550달러²¹¹에서 2026년 8,750달러²¹²로 각각 인상됨²¹³)

- ▶ HSA는 개인이 의료비 지출을 위해 개설하는 비과세 신탁(trust) 또는 예탁(custodial) 계좌로, 국세청의 인증을 받은 HSA 신탁기관(HSA trustee)을 통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HSA를 통해 지출하거나 상환하는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며, 정부는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HSA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제한적 소득 공제(tax deduction) 혜택을 부여함
- ▶ HSA 납입한도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됨
 - 3월 31일로 종료되는 전년도 12개월간의 도시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를 지표로 사용하여, 최종 금액은 50달러²¹⁴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정됨
 - 변경된 사항은 2026년(1~12월)에 적용될 예정임

2 캐나다

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일시 보류

[조세동향 25-02호]

- ▣ 캐나다는 2025년 2월 3일, 2025년 2월 4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결정함²¹⁵)

210) 2025년 7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97만원임.

211) 2025년 7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61만원임.

212) 2025년 7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19만원임.

213) Internal Revenue Service, Rev. Proc. 2024-25, 2024.

214) 2025년 7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만 7,900원임.

215) IBFD, "Canada Pauses Tariffs on US Goods after Making Key Border Security Commitments," 2025. 2.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2-04_ca_1.html, 검색일자: 2025. 2. 7.

- ▶ 캐나다 재무부는 2025년 2월 1일,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대상 목록을 공개함²¹⁶⁾
 - 음료, 화장품, 종이 제품, 가정용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과 더불어 자동차, 항공우주 부품, 농산물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도 대상임
 - 동 조치는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응해 2025년 2월 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음
- ▶ 캐나다는 2025년 2월 3일, 미국과 국경 안보 합의에 도달한 후 관세 부과를 우선 보류하기로 함

나 '탄소 리베이트' 비과세 추진

[조세동향 25-03호]

- ▣ 캐나다 재무부는 2025년 2월, 중소기업이 받는 탄소 리베이트(Carbon Tax Rebate)를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²¹⁷⁾
 - ▶ 캐나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 따라 탄소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약 60만개의 중소기업에 환급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2024년 12월 16일 미니 예산안을 통해 수취한 탄소 리베이트를 비과세하겠다고 명시함
 - ▶ 반면 캐나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받는 탄소 리베이트는 과세 대상이라고 통보함
 - 개인이 받는 탄소 리베이트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중소기업이 받는 탄소 리베이트의 경우 비과세로 처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캐나다 독립사업연맹(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FIB)은 2025년 2월 10일, 국세청과 정부의 입장이 상반된다고 지적함
 - ▶ 이에 캐나다 재무부는 탄소 리베이트를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216) Government of Canada, "List of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 subject to 25 per cent tariffs effective February 4, 2025," 2025. 2. 3.,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5/02/list-of-products-from-the-united-states-subject-to-25-per-cent-tariffs-effective-february-4-2025.html>, 검색일자: 2025. 2. 7.

217) Taxnotes, "Canada Says Carbon Tax Rebate Legislation Is Coming," 2025. 2. 24., *Tax Notes International*, Volume 117, Number 8, p. 1317.

-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은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다 '세입법안' 제출

[조세동향 25-06호]

- ▣ 캐나다 재무부는 2025년 5월 27일, 중산층의 세금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입법안 (Ways and Means Motion)을 의회에 제출함²¹⁸⁾²¹⁹⁾
 - ▶ 동 법안은 위원회 검토, 상원 승인을 포함한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임
 - ▶ **(개인 소득세율 인하)** 2025년 7월 1일부터 개인 소득세율을 15%에서 14%로 인하함
 - 이 조치로 약 2,200만명의 캐나다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 **(GST 감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하는 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면제 받을 수 있음
 -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당해 연도 또는 이전 4년 동안 캐나다 내외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대상 주택)** 건설업체로부터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소유하거나 임대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협동조합 법인의 지분을 구매하는 경우 등
 - 100만캐나다달러²²⁰⁾의 주택에 대해 GST를 면제하고 100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부분적으로 면제하며 150만캐나다달러²²¹⁾를 초과하는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음

218) IBFD, "Notice of Ways and Means Motion to introduce a bill respecting certain affordability measures for Canadians and Explanatory Notes," 2025. 6. 5., <https://fin.canada.ca/drleg-apl/2025/ita-lir-0525-eng.html>, 검색일자: 2025. 6. 16.

219) Government of Canada, "Canada Introduces Motion to Cut Middle-Class Taxes, Provide GST Relief for First-Time Home Buyers, Repeal Consumer Carbon Price," 2025. 5.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5-28_ca_2.html, 검색일자: 2025. 6. 16.

220) 2025년 6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0억 160만원임.

221) 2025년 6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5억 240만원임.

- ▶ **(소비자 탄소세 폐지)** 온실가스오염가격법(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의 Part 1인 소비자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함
 - 마크 카니 총리는 취임 직후 4월 1일부터 소비자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산업용 탄소세는 현행대로 유지함

II 유럽

1 영국

가 2025년 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5-04호]

- ▣ 영국은 2025년 3월 26일, 2025년도 봄 예산안(Spring Statement 2025)을 발표함²²²⁾²²³⁾
 - ▶ 본 예산안에는 증세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총세수를 75억파운드²²⁴⁾까지 늘리기 위한 조세회피 방지 및 조세확실성 증대 방안이 언급됨
 - 이번 예산안에서는 주요한 세금 변화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주요 세금 변경 사항은 2025년 가을 예산안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²²⁵⁾
 -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조세회피 조력자(promoters of tax avoidance)에 대한 신규 조치 관련 의견을 수렴함
 - 여기에는 국세청의 추가 권한 및 제재, 조세회피 계획 공개(Disclosure of Tax Avoidance Schemes, DOTAS) 제도의 범위 확대, 보편적 증지 통지 및 조력자 조치 통지 도입 등이 포함되며, 관련 의견수렴은 2025년 6월 18일 마감됨²²⁶⁾

222) IBFD, "United Kingdom - UK Spring Statement 2025: No Tax Increases, but Welfare Cuts Announced, Growth Projection Slashed," 2025. 3. 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3-26_uk_1.html, 검색일자: 2025. 4. 10.

223) GOV.UK., "Speech - Spring Statement 2025 speech," 2025. 3. 26.,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spring-statement-2025-speech>, 검색일자: 2025. 4. 10.

224) 2025년 4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조 311억원임.

225) EY, "UK Spring Statement defers major tax announcements to Budget in Autumn 2025," 2025. 3. 26., <https://globaltaxnews.ey.com/news/2025-0761-uk-spring-statement-defers-major-tax-announcements-to-budget-in-autumn-2025>, 검색일자: 2025. 4. 10.

226) GOV.UK., "Open consultation - Closing in on promoters of marketed tax avoidance," 2025. 3. 26.,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closing-in-on-promoters-of>

- ▶ 조세확실성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승인(advance clearance), 원가분담약정(Cost Contribution Agreements, CCA)에 대한 정상가격 사전승인(APA) 제공 등을 제안함
 -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오류 및 사기 등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승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2025년 5월 26일까지 진행함²²⁷⁾
 - 그룹 내 자산 개발을 위한 약정인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APA 승인을 제공하며,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한 실무 지침은 추후 발표 예정임
- ▶ 주요 세금 변화는 2025년 가을 예산안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세금 정책이 공개될 것임

나 에너지 이익 부담금 대체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

[조세동향 25-04호]

- ▣ 영국은 2025년 3월 5일, 2030년 종료 예정인 에너지 이익 부담금(Energy Profits Levy, EPL)의 대체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²²⁸⁾²²⁹⁾
 - ▶ EPL은 석유 및 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해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익(windfall profits)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도입되었음
 - ▶ EPL 대체 방안은 향후 석유 및 가스 가격 급등에 대한 예측 가능한 대응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됨
 - 첫째, 기준가격(threshold)을 초과하는 총매출(gross revenue)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매출 기반 모델(Revenue-based model)’로, 기업이 기준가격 이상으로 판매

-tax-avoidance/closing-in-on-promoters-of-marketed-tax-avoidance#the-consultation-process, 검색일자: 2025. 4. 10.

227) GOV.UK., “Open consultation -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relief advance clearances,” 2025. 3. 26.,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research-and-development-tax-relief-advance-clearances>, 검색일자: 2025. 4. 10.

228) IBFD, “United Kingdom - UK Consults on Replacement for Energy Profits Levy,” 2025. 3.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3-10_uk_1.html, 검색일자: 2025. 3. 31.

229) GOV.UK., “Open consultation - Oil and gas price mechanism consultation,” 2025. 3. 5.,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oil-and-gas-price-mechanism-consultation>, 검색일자: 2025. 4. 1.

- (세액 계산방식) 수입되는 상품의 직·간접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되며, 국내탄소가격과 수입국의 탄소비용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금액이 결정됨
- (행정절차) 수입자는 영국 국세청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보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탄소 인증서 제출, 회계장부 보관, 검증 절차 등을 수행해야 함
- ▶ 현재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며, 2025년 7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라 이전가격 규정의 적용 범위를 중간 규모 기업까지 확장 조치 발표

[조세동향 25-05호]

- ▣ 영국은 2025년 4월 28일, 이전가격 규정의 적용 범위를 중간 규모의 기업(medium-sized enterprises)까지로 확장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개시함²³²⁾²³³⁾
 - ▶ 현재 영국은 중간 및 소규모 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에 대해 이전가격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음
 - ▶ 금번 개정안은 소규모 기업(small enterprises)에 대한 면제는 유지하되, 중간 규모 기업(medium-sized enterprises)에 대한 면제를 폐지하도록 함
 - 영국의 중간 규모 기업은 직원 수가 250명 이하이고 연간 매출액이 5천만유로²³⁴⁾ 이거나 자산 총액이 4,300만유로²³⁵⁾ 이하인 기업을 의미함

232) Bloomberg Tax, “UK Eyes Bringing Medium-Sized Firms Into Transfer Pricing Rules,” 2025. 4. 29.,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EUMUVCS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ZyY2gvcmVzdWx0cy82NTI0OGNiNTI5MGZjOGU1Yzg2ZjQyYmYzN2UxZDhjMCIjZDQxQ2d4b1b8252b54f24ddc86093cc3def9cbdcd81b&criteria_id=65248cb5290fc8e5c86f42bf37e1d8c0&search32=k9IFFFdFxWDmb69NK2e2iQ%3D%3DE_jqvj0sTuTIW67Cy2b9Tb6ZNpgP6ddCYXAE0vjLaiUNgCuvQbQXOoBjUQ-fU0z xjpKmfAizDwXmmZfeTjOVQ%3D%3D, 검색일자: 2025. 5. 7.

233) GOV.UK., “Open consultation - Transfer pricing scope and documentation,” 2025. 4. 28.,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transfer-pricing-scope-and-documentation/transfer-pricing-scope-and-documentation#amendments-to-the-exemption-for-small-and-medium-sized-enterprises>, 검색일자: 2025. 5. 7.

234) 2025년 5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91억 9,600만원임.

235) 2025년 5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80억 9,007만원임.

- ▶ 영국 국세청은 대부분의 중간 규모 기업이 이미 국제 거래에 있어 다른 국가의 이전 가격 규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가격 규정을 준수할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함
- ▶ 다만 소규모 기업은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이전가격 규정 적용에서 계속 면제될 것임을 밝힘
 - 영국의 소규모 기업은 직원 수가 50명 이하이고 연간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이 1천 만유로²³⁶⁾ 이하인 기업을 의미함
- ▶ 의견 수렴은 2025년 7월 7일까지 진행됨

마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자 대상 보고지침 발표

[조세동향 25-06호]

- ▣ 영국 국세청(HMRC)은 2025년 5월 14일, 영국 내 암호화 자산(crypto asse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규 보고 지침을 발표함²³⁷⁾²³⁸⁾
 - ▶ 본 지침은 OECD의 암호화 자산 보고체계(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에 따라 보고의무가 있는 영국 소재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자(reporting crypto asset service providers, RCASP)의 요건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
 - RCASP는 사용자(개인 또는 법인)를 대신해 암호화 자산을 거래하거나 사용자 간 암호화 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기업(거래소, 중개인, 딜러 등)을 의미하며, 영국 내 설립 또는 운영되는 사업체가 해당됨
 - 영국 소재 RCASP는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자 및 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최초 보고는 2027년 5월 31일까지 HMRC에 제출해야 함
 - ▶ 또한 지침에 따르면 RCASP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되, 영국 거주자 또는 CARF에 가입한 국가의 거주자에 한하여 보고를 수행해야 함

236) 2025년 5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8억 3,490만원임.

237) IBFD, "United Kingdom - HMRC Issues New Reporting Guidelines for UK Crypto Asset Service Providers," 2025. 5.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5-15_uk_1.html, 검색일자: 2025. 5. 27.

238) GOV.UK., "Guidance - Check if you'll need to report cryptoasset data to HMRC," 2025. 5. 14.,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ll-need-to-report-cryptoasset-data-to-hmrc>, 검색일자: 2025. 5. 27.

- ▶ 보고는 XML 스키마 형식으로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 2027년 5월 31일까지 제출되는 내역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 규정 미이행 시 사용자 1인당 최대 300파운드²³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아일랜드

가 비협조적 관할권 거주 법인에 대한 CFC 면제 부인 지침 발표

[조세동향 25-02호]

- ▣ 아일랜드 국세청은 2025년 1월 24일, CFC가 조세목적상 비협조적 관할권의 납세 거주자인 경우 CFC 면제를 부인하는 지침을 개정하여 발표함²⁴⁰⁾²⁴¹⁾
 - ▶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i) 유효세율 면제 (ii) 낮은 이익률 면제 (iii) 낮은 회계상 이익 면제는 CFC가 조세목적상 EU 비협조 관할권 목록²⁴²⁾에 포함된 관할권에 거주하는 회계기간 중에는 적용되지 않음
 - (i) 유효세율 면제(effective tax rate exemption)는 회계기간 동안 CFC가 납부하거나 부담한 외국 세액이 해당 회계기간 동안 아일랜드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면제 조항임²⁴³⁾

239) 2025년 5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5만원임.

240) IBFD, "Ireland - Revenue Denies CFC Exemption to Entities Resident in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2025. 1.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1-27_ie_3.html, 검색일자: 2025. 2. 10.

241) 아일랜드 국세청, "Revenue eBrief No. 023/25 -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2025. 1. 24.,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ebrief/2025/no-0232025.aspx>, 검색일자: 2025. 2. 10.

242) 현재(2024년 10월 8일 기준) 조세목적을 위한 EU 비협조국 목록(EU list of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에 포함된 11개 국가는 미국령 사모아, 앵귤라, 피지, 괌, 팔라우, 파나마, 러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바누아투임(자료: EU, "EU list of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list-of-non-cooperative-jurisdictions/>).

243) IBFD, "Ireland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0. Anti-Avoidance (Last Reviewed: 1 November 2024)," 2024. 11. 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e_s_10.4.%23cta_ie_s_10.4., 검색일자: 2025. 2. 17.

- (ii) 낮은 이익률 면제(low profit margin exemption)는 CFC의 회계상 이익이 관련 영업비용(operating costs)의 10%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면제 조항임
- (iii) 낮은 회계상 이익 면제(low accounting profit exemption)는 CFC의 회계상 이익이 75만유로²⁴⁴⁾ 미만이고 해당 이익 중 비거래 소득(non-trading income)이 7만 5천유로²⁴⁵⁾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면제 조항임
- ▶ 또한 지침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배당과세면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가 적용되는 배당 소득은 미배당 소득으로 처리됨
- ▶ 마지막으로 필라2 규칙에 따라 발생하는 외국 적격소재국추가세(QDTT)가 CFC 규칙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려면 해당 외국 QDTT를 해당 CFC가 납부하거나 부담해야 함

나 혁신기업 투자에 대한 감면제도 신규 지침 발표

[조세동향 25-03호]

- ▣ 아일랜드는 2025년 3월 3일,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혁신기업 투자에 대한 감면제도의 운영을 설명하는 신규 지침(Guidance on Relief for investment in innovative enterprises)²⁴⁶⁾을 발표함²⁴⁷⁾
 - ▶ 혁신기업 투자(엔젤 투자)에 대한 감면제도는 혁신적인 중소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임²⁴⁸⁾
 - ▶ 적격 투자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적격 회사에 대한 적격 투자 매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16%의 감면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파트너십을 통한 투자의 경우 18%의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됨

244) 2025년 2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억 3,357만원임.

245) 2025년 2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336만원임.

246) 아일랜드 국세청, "Revenue eBrief No. 054/25 - Guidance on Relief for investment in innovative enterprises - Chapter 6A of Part 19 TCA 1997," 2025. 3. 3.,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ebrief/2025/no-0542025.aspx>, 검색일자: 2025. 3. 10.

247) IBFD, "Ireland - Revenue Begins Accepting Qualification Applications for 'Investment in Innovative Enterprises' Relief," 2025. 3.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3-05_ie_1.html, 검색일자: 2025. 3. 10.

248) Sarah Paez, "Ireland Rolls Out Capital Gains Tax Relief for Angel Investors," 2025. 3. 10., *Tax Notes International*, Volume 117, 검색일자: 2025. 3. 10.

- ▶ 적격 회사(qualifying company)는 계속기업 인증(certificate of going concern) 및 상업형 혁신 인증(certificate of commercial innovation)의 두 가지 인증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일랜드 국세청에 신청하여야 함
- ▶ 적격 주식에 대한 적격 투자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적격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처분하기 전 최소 3년간 보유해야 함

3 프랑스

가 고소득 자산가에 대한 재산세 도입 논의

[조세동향 25-03호]

- ▣ 프랑스 하원은 2025년 2월 20일 순자산이 1억유로²⁴⁹⁾를 초과하는 개인에게 2026년부터 최소 2%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²⁵⁰⁾
 - ▶ 고소득 자산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보유한 모든 자산²⁵¹⁾을 대상으로 하며, 순자산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소득세, 부동산세, 사회보장기여금, 고소득자 특별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이 납세자에게 최종 과세됨
 - 납세자가 거주자이거나 과세연도 이전 5년 내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전 세계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과세연도 이전 5년 내의 기간 동안 비거주자인 경우 보유하는 프랑스 내 자산을 대상으로 함
 - ▶ 해당 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며 프랑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형태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고소득 자산가에 대해 다른 유형의 재산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임

249) 2025년 3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71억 7천만원임.

250) IBFD, "National Assembly Adopts Minimum 2% Wealth Tax on Ultra-High-Net-Worth Individuals," 2025. 2.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2-21_fr_1.html, 검색일자: 2025. 3. 10.

251) 동산·부동산, 사업용 자산, 생명보험 계약, 신탁을 통해 보유한 자산을 포함함.

4 독일

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안 시행

[조세동향 25-01호]

- ▣ 독일 연방 하원은 세법 발전 및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에 관한 법안(Steuerfortentwicklungsgesetz)을 2024년 12월 30일 관보에 게재함에 따라 동 법안은 2024년 12월 31일 발효됨²⁵²⁾
 - ▶ 연방의회(Bundesrat)는 2024년 12월 20일에 세법 발전 및 소득세 과표 조정에 관한 수정 법안 초안을 승인함
 - ▶ 해당 법안은 독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다양한 조치를 포함했으나, 세법 개정안에는 납세자 개인에 유리한 공제액 확대 등의 조치를 포함함
 - ▶ 납세자의 기본 공제액을 2025년에는 1만 2,096유로,²⁵³⁾ 2026년에는 1만 2,348유로²⁵⁴⁾로 인상함
 - ▶ 2025년과 2026년도 소득세 과세 구간이 조정되며, 소득세 등급 중 최고 구간인 27만 7,826유로²⁵⁵⁾만 변동 없이 유지됨
 - ▶ 자녀 공제액(Kinderfreibetrag)을 2025년에는 3,336유로,²⁵⁶⁾ 2026년에는 3,414유로²⁵⁷⁾로 인상함
 - ▶ 자녀 한 명당 월별 아동 지원금(Kindergeld)을 2025년에는 250유로²⁵⁸⁾에서 255만 유로²⁵⁹⁾로, 2026년에는 259유로²⁶⁰⁾로 인상할 예정임

252) IBFD, "Revised Bill on Further Developing Tax Law, Adjusting Income Tax Brackets Enters Into Force," 2025. 1.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1-06_de_1.html, 검색일자: 2025. 1. 13.

253)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1,824만원임.

254)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1,862만원임.

255)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4억 1,911만원임.

256)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503만원임.

257)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514만원임.

258)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37만원임.

259)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38만원임.

260)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39만원임.

- ▶ 연대부가세(Solidaritätszuschlag) 면제 한도를 상향함
- ▶ 개인의 경우 2025년도는 1만 8,130유로²⁶¹⁾에서 1만 9,950유로²⁶²⁾로, 2026년에는 2만 350유로²⁶³⁾로, 부부 또는 동반 납세자의 경우 2025년도에 3만 6,260유로²⁶⁴⁾에서 3만 9,900유로²⁶⁵⁾로, 2026년에는 4만 700유로²⁶⁶⁾로 인상함

나 주거용 건물 에너지 관련 조치 세금 감면 증명서 통합

[조세동향 25-02호]

- ▣ 독일 재무부는 주거용 건물의 친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관련 조치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 증명서 통합 개정을 발표함²⁶⁷⁾
 - ▶ 독일 재무부(BMF,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Finance)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에너지 관련 조치에 대한 세금 감면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통일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 이는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관련 조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여러 증명서를 하나의 통합된 증명서로 일원화한 것임
 - ▶ 해당 증명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조치의 세금 감면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관련된 업체와 담당자들이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게 됨
 - 또한 재무부는 어떤 건물 개보수 조치가 자금 지원 대상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주택 소유자가 자가 주택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기후 보호 프로그램의 일부임

261)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2,733만원임.

262)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3,008만원임.

263)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3,068만원임.

264)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5,468만원임.

265)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6,016만원임.

266)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6,137만원임.

267) IBFD, "German Federal Ministry of Finance Publishes Information on Green Incentives for Energy-Related Measures on Buildings", 2025. 1.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1-13_de_1.html, 검색일자: 2025. 2. 5.

다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B2B 전자 인보이스 의무화

[조세동향 25-02호]

- ▣ 독일 정부는 디지털 전략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B2B 전자 인보이스 의무 발행을 결정함
 - ▶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전자 인보이스(e-Envoice)는 구조화된 전자 형식으로 발행, 전송, 수신되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인보이스를 의미하며 디지털 전략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함
 - ▶ 전자 인보이스 의무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일부 면세 공급(보험, 금융서비스 등), 소규모·소액 청구 등은 제외하는 예외 사항을 규정함
 - 공급자와 수취인이 모두 개인이 아닌 기업임(B2B)
 - 두 기업 모두 독일 내에 설립되어야 함
 -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장소가 독일임
 - 거래가 부가가치세 공제권 없이 면세되지 않음
 - ▶ 2025년부터 모든 기업은 전자 인보이스를 수령할 의무가 있으며 2026년도까지 종이 인보이스 발행이 가능하나 2027년부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자 인보이스 발행이 필수적 요건이 되며, 미발행 시 행정처벌 대상이 됨
 - ▶ 해당 조치로 전자 인보이스 발행 의무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초기 행정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동 회계 시스템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거래 매트릭스 관련 팩트 시트 발표

[조세동향 25-04호]

- ▣ 독일 재무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거래 매트릭스(Transaction Matrix)에 대한 팩트 시트(fact sheet)를 발표함²⁶⁸⁾

268) IBFD, "MoF Issues Fact Sheet on Transaction Matrix," 2025.4.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4-07_de_1.html, 검색일자: 2025. 4. 9.

- ▶ 2024년 10월 1일 의회를 통과한 제4차 행정·경제·국민 부담 완화법(Bureaucracy Reduction Act)에 따라,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가 확대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거래 매트릭스’ 제출이 의무화됨
 - (참고) 거래 매트릭스란 다국적 기업과 관련자 간 국제 거래 내용과 국제 거래 개요를 구조화된 표로 정리한 문서로, 세무조사 시 위험 기반 선정 및 감사 영역 식별에 활용됨
- ▶ 거래 매트릭스에 기재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거래의 내용과 유형(예: 상품 인도, 지속적 관여 등)
 - 거래 당사자(서비스 수신자 및 제공자 식별)
 - 거래 금액 및 대가(예: 대출 금액과 이자,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액)
 - 계약 근거(계약 문서 명칭)
 - 적용한 이전가격 산정 방법(예: 원가 가산법, 비교 가능 제삼자 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CUP) 등)
 - 관련 세법 관할권(세금이 부과되는 국가 등)
 - 거래가 해당 관할권에서 일반 과세 대상 여부(예: 특허박스 제도 등 특혜 세제의 적용 여부)
 - 미제출 시 과태료: 5,000유로²⁶⁹⁾ 부과
- ▶ 이는 독일 일반세법(GAO) 제90조 3항에 따른 문서화 의무의 일환임

마 연방 내각, 460억유로 규모의 기업 조세감면안 승인

[조세동향 25-06호]

- ▣ 독일 연방 내각(Bundesregierung)은 2025년 6월 4일, 독일 경제 입지 강화를 위한 세제 투자 즉시 프로그램 법안(Gesetz für ein steuerliches Investitionssofortprogramm zur Stärkung des Wirtschaftsstandorts Deutschland) 초안을 승인함
 - ▶ 본 법안은 독일의 경제 입지 경쟁력 제고, 경기 침체 이후 신뢰 회복과 경쟁 여건 개선,

269) 2025년 4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08만원.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로의 복귀를 목표로 독일 하원(Bundestag) 및 연방상원(Bundesrat)의 추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초안이며 주요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현재 세율은 15%이며 2032년부터 최종 세율을 10%로 인하할 예정이며 감면 시작 시점은 2028년 1월 1일 예정임
- ▶ **(전기차 감가상각 특례 신설)**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 구매한 업무용 전기차가 해당하며 감가상각 비율은 다음과 같음
 - 1년 차: 75%, 2년 차: 10%, 3~4년 차: 각 5%, 5년 차: 3%, 6년 차: 2%
- ▶ **(전기차 비과세 혜택 상한 증액)** 기존에는 차량가 7만유로²⁷⁰⁾ 이하 시 기준가의 25%만 과세하였으나, 개정 시 10만유로²⁷¹⁾ 이하로 상향할 예정임
- ▶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금액 상한 상향)**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출액은 최대 1,000만유로²⁷²⁾이며 개정 시 2026년 1월 1일부터 1,200만유로²⁷³⁾로 상향될 예정임

5

이탈리아

가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VAT 규정 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 명령 발표

[조세동향 25-01호]

- ▣ 이탈리아는 EU의 VAT 지침(2020/285)에 따라 소규모 기업을 위한 특별 부가가치세 제도를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입법 명령을 발표함²⁷⁴⁾
 - ▶ 해당 입법은 소규모 기업을 위한 특별 VAT 제도의 확대를 기존에 이탈리아 내에서만 적용되던 소규모 기업 특별 VAT 제도를 EU 회원국 간, 국경 간 거래를 수행하는

270) 2025년 6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012만원.

271) 2025년 6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5,732만원.

272) 2025년 6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7억 3,270만원.

273) 2025년 6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8억 7,924만원.

274) IBFD, "Tax Authorities Issue Implementing Rules on Amended VAT Scheme for Small Enterprises," 2025. 1. 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1-07_it_2.html, 검색일자: 2025. 1. 13.

소규모 기업에도 확대하여 적용함

- ▶ 2025년 1월 1일부터 자격을 갖춘 이탈리아 내 과세 대상자는 세무 당국에 정해진 양식을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맞춤형 식별 번호를 부여받아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적용 조건은 현재 및 이전 회계연도 기준 모든 EU 회원국 내 연간 총매출액이 10만 유로²⁷⁵⁾ 이하이며, 이탈리아 내 전년도 매출이 8만 5천유로²⁷⁶⁾ 이하여야 함
- ▶ 이탈리아에 내에 소재하는 과세 대상자도 다른 EU 회원국에서 특별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무 당국은 관련 제출 절차와 필요한 내용을 규제함
 - 또한 부가가치세 개정 지침에 따라 스트리밍으로 방송되거나 가상으로 제공되는 문화, 예술, 스포츠 이벤트는 고객이 이탈리아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둔 경우 이탈리아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됨

나 ▶ GloBE 정보보고서 제출을 위한 통지 절차 법령 발표

[조세동향 25-03호]

- ▣ 이탈리아 재무부는 최소 과세 지침(Minimum Taxation Directive, 2022/2523)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가 GloBE 정보보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GIR)를 다른 관할권에서 과세 당국에 통지하는 절차를 명시한 법령을 발표함²⁷⁷⁾
 - ▶ 해당 지침의 적용에 따라 이탈리아에 있는 각 구성 법인(CE, Constituent entity)은 GloBE 정보보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를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예외 및 지출 의무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 최상위 모기업(UPE, the Ultimate parent entity) 또는 다른 관할권의 지정 신고 법인이 해당 관할권에서 GloBE 정보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이탈리아 세무 당국과 해당 관할권 간 GloBE 정보보고서 자동 교환을 위한 유효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한 경우

275)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1억 5,033만원임.

276)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1억 2,778만원임.

277) IBFD,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ets Notification Procedure for GloBE Information Return Filing," 2025. 02.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2-27_it_1.html, 검색일자: 2025. 3. 3.

- ▶ 이번 법령은 통지 절차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통지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과세 당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고서 양식과 추가 지침 발행 예정을 명시함
- ▶ 해당 법인은 관련 회계연도 종료 후 최대 15개월 이내(또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을 적용받는 첫 회계연도의 경우 최대 18개월 이내)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 만약 통지서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할 경우, 최대 10만유로²⁷⁸⁾의 행정 벌금이 부과되며 지연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포함된 제출의 경우 벌금을 감경함

다 중소기업 대상 부가가치세 특별 제도 관련 분기별 보고서 양식 승인

[조세동향 25-04호]

- ▣ 이탈리아 과세당국은 EU 회원국에서 소규모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특별 제도를 적용받는 자격을 갖춘 이탈리아 소재 납세자가 분기마다 제출해야 하는 공식 보고서 양식(model form)을 승인함²⁷⁹⁾
 - ▶ 이탈리아 정부는 2024년 12월 3일자 관보에서 「소규모 기업 부가가치세 제도 지침」 및 「부가가치세 세율 지침」을, 2025년 1월 7일에는 개정된 「소규모 기업 VAT 제도에 대한 시행규칙」을 각각 발표함
 - ▶ 자격 요건을 갖춘 납세자는 각 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 이탈리아어로 된 해당 양식을 전자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분기에 이탈리아 및 기타 EU 회원국에서 수행한 재화 및 용역 공급의 총액(유로화 기준)을 명시해야 함
 - ▶ 만약 납세자가 기타 EU 회원국 전체에서 연간 매출 10만유로²⁸⁰⁾의 한도를 초과한 때도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초과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해야 함
 - ▶ 이는 2025년 3월 28일 발표된 프로토콜 번호 155649/2025을 근거로 함

278) 2025년 3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억 5,360만원

279) IBFD, "Tax Authorities Approve Model Form for Quarterly Communication of VAT Scheme for Small Enterprises," 2025. 3.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3-31_it_3.html, 검색일자: 2025. 4. 9.

280) 2025년 4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7,168만원

라 연구 인력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조세동향 25-06호]

- ▣ 이탈리아는 2025년 6월 5일 제정된 법률 제79호를 통해, 2025년 4월 7일자 법률 시행령 제45호를 수정·보완하여 연구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²⁸¹⁾
 - ▶ 동 제도는 이탈리아의 국가 회복 및 회복력 계획(PNRR, Piano Nazionale di Ripresa e Resilienza)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1만유로²⁸²⁾의 세액공제를 부여함
 -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구 인력 요건은 박사학위(PhD) 소지자 또는 연구계약에 따라 고용된 자이며,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정규직(permanent contract)으로 채용된 경우에 한함
 - ▶ 관련 법률은 2025년 6월 6일 관보 제129호에 게재되어, 2025년 6월 7일부터 발효 되었음

6 벨기에

가 OECD 기준 부합 내국 최저추가세액 신고서 초안 발표

[조세동향 25-04호]

- ▣ 벨기에 연방재무부는 2025년 4월 11일, 내국 최저추가세액(Domestic Minimum Top-up Tax, DMTT) 신고서 초안을 발표함²⁸³⁾

281) IBFD, "Italy Introduces Tax Credit for Enterprises Hiring Researcher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6-10_it_2.html, 2025. 6. 10., 검색일자: 2025. 6. 13.

282) 2025년 6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573만원

283) IBFD, "Tax Administration Publishes Draft Template of Domestic Minimum Top-Up Tax Return to Align with OECD," 2025. 4.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4-11_be_1.html, 검색일자: 2025. 4. 15.

- ▶ 이 초안은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GloBE) 모델 신고서(GIR-template)와의 정합성을 목표로 구성되었으며, DMTT 목적에 필수적인 정보만을 포함함
- **(신고서 구성)** 신고서는 과세 대상 벨기에 기업 및 다국적 기업 그룹 식별, 그룹 구조, 세이프 하버 조치 및 선택사항(Elections), DMTT 산정, 예납 내역, 최종 납부 세액, 연락 담당자 및 서명란으로 구성됨
- **(신고 마감일)** 최초 신고 마감일은 2025년 11월 30일로, 이는 2024 과세연도에 대한 글로벌 정보 신고서(GIR)의 마감일보다 7개월, 국가별보고서(CbCR) 제출일보다 1개월 앞섬
- **(신고 요건)** DMTT 신고는 그룹이 벨기에에서 필라 2 및 GloBE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가능함

나 2025년 세제 개편안 발표

[조세동향 25-05호]

- ▣ 벨기에 정부는 2025년 4월 24일,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전반에 걸친 세제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함²⁸⁴⁾
 - ▶ 법인세 분야에서는 참여 면세 제도, 투자공제, 청산준비금, 출국세, 캐리드 이자²⁸⁵⁾ 등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이 발표됨
 - ▶ 개인소득세 및 기타 세제 개정사항으로는 외국인 전문가 세제, 주택 관련 세제, 양육비 공제 개편 등이 포함됨
 - ▶ 부가가치세를 조정, 세무 벌칙 규정 및 정상화 제도, 제척기간 변경 등 제도적 개편도 병행됨
- ▣ **(법인세)** 기업의 세 부담을 조정하고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배당과세 면제제도, 투자공제, 청산준비금, 출국세, 캐리드 이자 과세 체계를 개정함

284) IBFD, "Government Presents Tax Plans: Proposes Stricter Requirements for Participation Exemption, Extends Exit Tax, Creates More Attractive Expat Regime," 2025. 4.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4-28_be_1.html, 검색일자: 2025. 5. 8.

285) 캐리드 이자(Carried Interest)는 주로 사모펀드(PEF)나 벤처캐피탈(VC)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운용사(펀드 매니저)가 펀드의 투자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성과보수로 가져가는 금액을 말함.

- ▶ 해외자회사 배당과세면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요건을 강화하고 과세 대상을 일부 확대함
- ▶ 해외자회사 배당과세면제제도 적용 요건으로, 최소 10% 이상의 지분 보유 또는 250만유로²⁸⁶⁾ 이상의 고정자산 투자가 요구됨²⁸⁷⁾
 - 집합투자회사(DBI-BEVEK/SICAV RDT)가 해외자회사 배당과세면제제도에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5%의 자본이득세가 부과됨
 - 유럽사법재판소(ECJ)의 John Cockerill 사건(C-135/24) 판결²⁸⁸⁾을 반영하여, 손실기업에 대한 그룹 내 기여(group contribution)로부터 발생한 이익도 면세 대상에 포함됨
- ▶ 투자공제제도의 공제율을 통일하고 이월 제한을 폐지함
 - 투자공제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월 제한이 폐지되어 공제 유연성이 확대됨
 -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공제율을 40%로 통일하여 일관성을 확보함²⁸⁹⁾
- ▶ 청산준비금에 대한 보유기간 단축 및 세율 인상을 통해 조세 회피를 방지함
 - 청산준비금에 대한 보유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함
 - 2026년부터 신규 적립분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5%에서 6.5%로 1.5%p 인상함
 - 기존 적립분은 3년 보유 후 15%의 세율로 분배 가능함
- ▶ 출국세는 기존의 법인에만 적용되던 것에서 주주까지 확대됨
 - 이는 기업의 국외 이전 시 주주가 '간주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출국세를 부과하는 방식임
- ▶ 캐리드 이자에 대한 과세 규정을 명문화하여 과세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 투자 펀드 매니저가 수령하는 성과보수에 대해 독립된 과세 체계를 도입하여 조세 투명성과 세원 포착을 강화함

▣ (개인소득세 및 관련 세제) 고소득 외국인 전문가 유치 및 세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소득세 공제 제도를 개편함

286) 2025년 5월 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억 5,110만원임.

287) 단, 소규모 기업의 경우 고정성 요건은 면제됨.

288) 그룹 기여로 발생한 이익의 면세 여부에 관한 판결임.

289) 기존에는 공제율이 30%, 40% 두 가지가 적용되었음.

- ▶ 외국인 전문가 세제를 완화하여 더 많은 고소득 인재 유치를 도모함
 - 외국인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과세 경비 정액 보상 한도를 기존 30%에서 35%로 인상함
 - 9만유로²⁹⁰⁾의 최대 한도는 폐지되어 보상 상한선이 사라짐
 - 제도 적용을 위한 최소 연간 과세소득 요건은 7만 5,000유로²⁹¹⁾에서 7만유로²⁹²⁾로 5,000유로²⁹³⁾ 인하됨
 - ▶ 자가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여 부동산 세제 지출을 축소함
 - 모기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포함하여 자가 주택에 대한 주택보너스(housing bonus)를 전면 폐지함
 - 이로 인해 기존 주택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되던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짐
 - ▶ 자녀 및 해외 가족에 대한 양육비 공제를 축소함
 - 자녀 양육비 공제율을 2025년에는 70%, 2026년에는 60%로 단계적으로 축소함²⁹⁴⁾
 - 유럽경제지역(EEA) 외 지역에 거주하는 수령인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 (간접세 및 관련 세제) 탄소중립 사회 전환과 조세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체계를 조정하고, 제재 및 신고제도를 개편함
- ▶ 일부 에너지 및 건설 관련 품목의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하여 환경세 부담을 강화함
 - 건물 철거 및 개조공사에 대해 6%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연장함
 - 화석연료 연소 보일러의 VAT율을 기존 6%에서 21%로, 석탄의 VAT율을 기존 12%에서 21%로 인상함
 - ▶ 납세자 권익 보호와 행정 효율화를 위해 벌칙 및 제척기간 제도를 개선함
 - 최초 위반에 대해 ‘선의 추정’의 원칙(rebuttable presumption of good faith)’을 도입함

290) 2025년 5월 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223만원임.

291) 2025년 5월 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853만원임.

292) 2025년 5월 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063만원임.

293) 2025년 5월 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90만원임.

294) 2024년 자녀 양육비 공제율은 70%임.

- 일반적인 세금 관련 제척기간을 3년으로, 탈세 등 사기의 경우 7년으로 통일함
- ▶ 세무 정상화 절차를 강화하여 기존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함
 - 소멸 시효 전 자본에 대해서는 30%의 가산세율을, 소멸 시효 후 자본에 대해서는 45%의 가산세율을 부과함
- ▶ 탄소세 성격의 소비세를 조정하고 항공세를 신설함
 - 장거리 항공편에 대해 5유로²⁹⁵⁾의 탑승세(embarkation tax)를 부과함
 - 향후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다양한 소비세 감면 및 면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예정임

다 저작권 소프트웨어 관련 혁신소득공제(IID) 절차 명확화

[조세동향 25-06호]

- ▣ 벨기에 정부는 2025년 5월 31일, 저작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혁신소득공제(IID)에 관한 실무 지침을 발표함²⁹⁶⁾
 - ▶ 저작권 소프트웨어가 지식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방 과학 서비스 정책기관(BELSPO)의 사전 검토를 받은 연구개발(R&D)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결과물이어야 함
 - ▶ 2025년 1월 체결된 정부협약에 따라 BELSPO와 연방 재무부는 사전 자문 요청(advice request)과 프로젝트 신고(notification) 절차를 통합·조화시키기 위한 지침을 수립함
- ▣ IID 프로젝트 신고 절차에 대한 세부 요건이 명확화됨
 - ▶ 신고 형식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프로젝트명은 일반적이지 않은(non-generic) 제목이어야 하며, 이전 신고와는 다른 R&D 활동을 포함해야 함
 - ▶ 연구개발 활동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최대 5페이지의 구조화된 텍스트 또는 슬라이드 10장 이내의 요약자료로 제출해야 함

295) 2025년 5월 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902원임.

296) IBFD, "Belgium Clarifies Innovation Income Deduction Procedures for Copyrighted Software," 2025. 6.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6-06_be_1.html, 검색일자: 2025. 6. 12.

- ▶ 신고 대상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되며, 이후 새로운 기술개발이 있는 경우 신규 신고가 필요함
 - ▶ 신고는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로 제출해야 함
 - ▶ 새로운 기술개발이 있는 경우 이전 신고와 명확히 구분되는 내용으로 새로운 신고가 가능함
 - ▶ 신고는 BELSPO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양식 내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의 R&D 성격을 설명해야 함
- ▣ IID 프로젝트 신고 시 포함해야 할 필수 정보가 명시됨
- ▶ 혁신소득공제를 신청하는 회사의 식별 정보를 기재해야 함
 - ▶ 프로젝트가 근본적 연구, 산업 연구 또는 실험적 개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해야 함
 - ▶ 프로젝트의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을 명시해야 함
 - ▶ 소프트웨어의 생성 또는 수정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이 수행 중임을 보여주는 증빙은 온라인 신청서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 ▶ 첨부 자료는 명확하고 구조화된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며, 최대 분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 ▣ IID 사전 자문 요청 절차의 주요 사항이 구체화됨
- ▶ BELSPO가 부여하는 자문의 유효기간은 납세자가 요청한 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연구자 원천징수세 면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사전 자문이 있는 경우 해당 자문과의 연계가 명확히 증명되면 IID 신청 시 활용할 수 있음
 - ▶ R&D 결과물인 소프트웨어가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제품과 실질적으로 차별화되지 않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기존 소프트웨어의 단순 개선은 의미 있는 확장, 갱신 또는 변경이 없는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님
 - ▶ 사전세무결정위원회(Ruling Commission)에 선제적 세무 판단을 요청하는 경우 BELSPO 자문 요청의 기간과 일치하도록 조율할 수 있음

- BELSPO의 부정적 자문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 IID 제도에 따라 납세자는 저작권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한 소득의 85%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 저작권 소프트웨어에는 기존 컴퓨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파생물 또는 개작물도 포함됨
 - ▶ 해당 공제는 벨기에에서 개발된 IP에 해당하는 수익에만 적용되며, 해외 개발분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요구됨

라 세제 개편안 제출

[조세동향 25-06호]

- ▣ 벨기에 정부는 2025년 5월 27일 향후 세제 개편에 관한 법안(No. 56 0909)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²⁹⁷⁾
 - ▶ 본 법안은 기존 연방정부 연정협약(Federal Coalition Agreement)에서 제시한 디지털세 도입, 지분면제 요건 강화(participation exemption), 청산 간주 배당에 대한 출국 시 과세(exit tax) 확대, 고액자산 과세 강화, 외국인 근로자(Expatriate)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반영함
 - ▶ 특히 주주가 청산배당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적용되는 출국 시 과세(exit tax) 요건을 확대하고, 증권계좌에 대한 연간세(TSA)에 특정 조세 회피 방지 규정을 도입하는 등 조세 회피 대응 조치를 강화함
 - ▶ 본 법안에는 향후 도입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Expatriate) 제도 변경 및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사회적 연대 목적의 추가 과세(solidarity tax) 등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음
- ▣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주주가 청산배당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적용되는 출국 시 과세(exit tax)가

297) IBFD, "Government Submits Tax Plans to Parliament Including Stricter Requirements for Participation Exemption and Extension of Exit Tax," 2025. 6.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6-02_be_1.html, 검색일자: 2025. 6. 12.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 소규모 기업 배당에 대한 VVPR-bis 제도²⁹⁸⁾를 개정하여 설립 연도 및 이후 2년 내 배당분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30%로 통일하고, 3년차 이후에는 15%로 인하함
- ▶ 청산준비금(liquidation reserve) 관련 세율을 변경하여 설정 시 10%, 5년 이후 분배 시 기존 5%였던 구조를 각각 10% 및 6.5%로 조정함에 따라 총 세부담이 기존 13.64%에서 15%로 증가함
- ▶ 지분면제 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요건을 강화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여, 배당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연 가능성을 제한함
- ▶ 납세자의 최초 위반에 대해 선의의 추정(rebuttable presumption of good faith)을 도입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세무상 정규화 제도(fiscal regularization)를 도입하여 자발적 시정의 유인을 강화함
- ▶ 사회보장기여 회피와 관련하여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20%의 자진신고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2025년 7월 1일부터 도입함
- ▶ 부가가치세율(VAT) 개편안을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조세구조의 단순화 및 재정 중립성을 도모함
- ▶ 연간 증권계좌세(TSA)에 대해 특정 조세 회피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Specific Anti-Avoidance Rule, SAAR)을 도입하고, 과세 기준금액 및 세율은 기존²⁹⁹⁾대로 유지하되 중개기관의 거래 보고의무 및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 ▶ 탑승세(embarkation tax)를 도입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함으로써, 여객 운송에 대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였음
- ▶ 사모펀드 운용인의 캐리드 이자(carried interest) 과세 규정을 신설하고, 2026 과세연도부터 25% 세율을 적용할 예정임

298) 벨기에의 VVPR-bis 제도는 중소기업이 2013년 이후 증자한 주식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단계적으로 경감되는 제도임.

299) 과세 기준금액은 100만유로(2025년 5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억 7,899만원임)이며 세율은 0.15%임.

7

룩셈부르크

가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액공제 규정 발표

[조세동향 25-01호]

-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24년 12월 23일,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법률(「다국적기업 그룹과 대규모 국내그룹에 대한 최저한세에 관한 2023. 12. 22. 법률」) 적용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을 발표함³⁰⁰⁾
- ▶ 이전 가능하고 과세관청과 조정 가능한 세액공제만이 구성기업의 적격 손익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며, 환급·이전·조정할 수 없는 세액공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 적격 환급가능 세액공제(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와 관련하여 기본 공제 대상자는 기본 공제 연도의 손익 계산에 세액공제의 액면금액을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함
 - 세액공제가 자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자산 가치의 공제 또는 소득으로 기록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세액공제가 기본 공제 연도 말로부터 15개월 내에 이전된 경우 판매가격이 기본 공제 연도의 이익으로 인식되고, 15개월 후에 이전된 경우 액면금액과 판매가격의 차액이 이전한 회계연도의 손실로 인식됨

300) IBFD, “Grand-Ducal Regulation Determines Rules on Tax Credits, Qualifying Holdings for Pillar Two,” 2025. 1.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1-03_lu_2.html, 검색일자: 2025. 1. 13.

8 오스트리아

가 2025년 「예산동반법」 초안 발표

[조세동향 25-05호]

- ▣ 오스트리아는 2025년 5월 2일, 2025년 「예산동반법(Budgetbegleitgesetz)」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개시함³⁰¹⁾
 -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2026~2029년 동안 물가상승률에 따른 소득세 구간 조정은 3분의 2 수준만 반영함
 - ▶ 2025년 7월 1일부터 주식 거래 형태의 대규모 부동산 거래를 세금 목적상 부동산 거래로 인정하도록 부동산 양도세를 변경함
 - 파트너십 또는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지분의 75%(현재 95%) 이상을 한 주주가 양도, 합병 또는 인수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세가 부과됨
 - ▶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용도변경³⁰²⁾으로 인한 가치 상승에 대해 2025년 7월 1일부터 30%의 추가세를 부과함
 - ▶ 2008년 7월 31일 이후 국내외 민간 재단 및 민간 재단에 준하는 신탁에 대한 기부금에 부과되는 재단 출연세(Stiftungseingangssteuer)를 2.5%에서 3.5%로 인상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 복권에 대한 도박 부담금을 16%에서 17.5%로 인상하고, 온라인 도박(전자복권) 관련 세금 및 면허세를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함
 - ▶ 간편경비계산제도를 확대하여 2025년에는 연매출 기준을 22만유로³⁰³⁾에서 32만유로³⁰⁴⁾로 확대하고 경비율을 12%에서 13.5%로 인상함
 - 2026년부터는 연매출 기준을 42만유로³⁰⁵⁾로 확대하고 경비율을 15%로 인상함

301) IBFD, "Austria - MoF Issues Draft Budget Accompanying Act 2025," 2025. 5.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5-06_at_1.html, 검색일자: 2025. 5. 8.

302) 예컨대 초지를 건축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음.

303) 2025년 5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4,418만원임.

304) 2025년 5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62만원임.

305) 2025년 5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억 5,703만원임.

- ▶ 2026년 1월 1일부터 여성 위생용품 및 피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도입함
- ▶ 통근자 세액공제(pendlereuro)를 자택과 직장 간 편도 이동거리 1km당 2유로에서 6유로로 인상하여 통근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는 직원의 경우 공제 한도를 인상함
- ▶ 2025년 및 2026년에 고용주가 지급하는 추가 급여 및 상여금은 연간 최대 1,000유로³⁰⁶⁾까지 소득세를 면제함
- ▶ 의견수렴은 2025년 5월 9일까지 진행됨

9 스위스

가 주거용 부동산세 개정안 관보 게재

[조세동향 25-01호]

- ▣ 스위스 연방의회(Bundesversammlung)는 2025년 1월 9일, 주거용 부동산세 개정안(No. FF 2025 23)을 관보에 게재함³⁰⁷⁾³⁰⁸⁾
 -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의 연방직접세는 연간 지출을 반영하여 산정
 - 특정 행정 비용과 역사적 기념물 복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 개인 소유의 임대 주택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 나열

306) 2025년 5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64만원임.

307) Fedlex Die Publicationsplattform des Bundesrechts, <https://www.fedlex.admin.ch/eli/fga/2025/23/de>, 검색일자: 2025. 1. 16.

308) Bloomberg Law News, "Switzerland Gazettes Law Amending Residential Property Taxation System," 2025. 1. 14.,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AJ6MHM4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ZyY2gvcmlvd3dWx0cy81ODFkNmNmMzZiZGVlODdkYzhiYmE4Y2EyMWEwNzU5OCJdXQ-951211850a151f58d45cd0aeb6ccfdaf0957d9fd&criteria_id=581d6cf36bdee87dc8bba8ca21a07598&search32=7x637HTep9CvbiWPoqkEcq%3D%3D1NPx06nLeF-RjijPPRP2MttcbiHfcrhAx75VGSh1wcTNJyVgD-ADXEQxCAhkxXhLUiwi_1B43er_o9QsHKIEmw%3D%3D, 검색일자: 2025. 1. 15.

- 첫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납세자는 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1만스위스프랑³⁰⁹⁾까지 소득공제 가능

▶ 개정안은 의회에서 투표를 거쳐 확정되며 투표 마감일은 2025년 4월 19일임

나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교환 관련 논의 시작

[조세동향 25-02호]

▣ 스위스 연방평의회(Bundesrat/Federal Council)는 2025년 1월 29일, OECD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한 국가 간 정보교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³¹⁰⁾³¹¹⁾

▶ 다국적 기업이 조세 관련 정보를 하나의 관할국에 제출하면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다른 관할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금 계산이 정확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임

▶ 또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국가 간 정보교환에 대한 국제법적인 근거를 검토하고자 함

▶ 이번 논의의 목표는 스위스가 OECD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된 정보교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연방평의회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호주, 영국,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한국, 그리고 EU 회원국)도 정보교환에 참여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

- 논의는 2025년 5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 국가 간 정보교환의 법제화는 별도의 법안을 통해 논의될 것이며 해당 법안은 2025년 상반기에 논의될 예정임

▶ 연방평의회는 OECD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된 국제적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목표는 스위스 기업에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과 스위스의 세원 확보임

309) 2025년 1월 16일 환율 기준 약 1,597만원임.

310) Der Bundesrat - Das Portal der Schweizer Regierung, "Bundesrat eröffnet Vernehmlassung zum Informationsaustausch in Sachen OECD-Mindestbesteuerung," 보도자료, 2025. 1. 29.,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medienmitteilungen.msg-id-103974.html>, 검색일자: 2025. 2. 12.

311) IBFD, "Federal Council Launches Consultation on Information Exchange Under Pillar Two," 2025. 1.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1-29_ch_1.html, 검색일자: 2025. 2. 12.

10 스페인

가 「법인세법」 등 세법개정안 승인

[조세동향 25-01호]

- ▣ 스페인 정부는 2024년 12월 23일, 2024년 종료될 예정이던 다양한 세금 제도를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을 승인함³¹²⁾

 - ▶ **(법인소득세)** 재생에너지 자가 소비시설 또는 화석에너지 대체 설비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50만유로³¹³⁾ 내에서 자유 감가상각(Free amortization)을 허용하는 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함
 - ▶ **(개인소득세)** 친환경 관련 세제 혜택 제도를 연장함
 - 가정의 난방 및 냉방 수요를 줄이는 작업에 대한 세액공제(20%)와 가스·석유·석탄 등 1차 비재생 에너지 소비를 개선하는 공사에 대한 세액공제(40%)는 2025년까지 연장하고 에너지 재생이 수행되는 건물에 대한 세액공제(60%)는 2026년까지 연장함
 - 신규로 취득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15%)와 배터리 충전 시스템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15%)를 2025년까지 연장함
 - ▶ **(부가가치세)** 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의 특별 보상 제도 적용을 제한하는 상향된 매출액 기준(15만유로³¹⁴⁾→25만유로³¹⁵⁾을 2025년까지 연장함
 - 농업, 축산업, 어업의 경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용이 아닌 세금의 정산 및 납부 의무가 없는 특별 보상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정부 등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대한 보상을 매출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함³¹⁶⁾

312) IBFD, “Government Extends Certain Tax Measures Through 2025, Postpones Implementation of Tax on Tobacco, E-Cigarettes,” 2024. 12.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2-27_es_1.html, 검색일자: 2025. 1. 14.

313) 2025년 1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4,956만 5,000원임.

314) 2025년 1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2,510만 9,500원임.

315) 2025년 1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7,518만 2,500원임.

316) Agencia Tributaria, “Capítulo 6. Los regímenes especiales en el IVA-Funcionamiento,” <https://sede.agenciatributaria.gob.es/Sede/ayuda/manuales-videos-folletos/manuales-practicos/manual-iva-2024/capitulo-06-regimenes-especiales-iva/regimen-especial-agricultura-ganaderia-pesca/funcionamiento-reagp.html>, 검색일자: 2025. 1. 20.

- 2025년까지 전년도 수입이 25만유로를 넘는 경우 특별 보상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음

나 주택의 임대 및 취득 관련 세금 조치 발표

[조세동향 25-02호]

- 스페인 정부는 2025년 1월 13일, 주택의 임대 및 취득과 관련한 세금 조치를 제안함³¹⁷⁾
 - ▶ **(소득세 면제)** 임대료가 급등하는 지역의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00% 면제함
 - **(면제조건)** 임대료를 기준가격지수(Índice de Precios de Referencia, IPR)³¹⁸⁾에 맞춰야 하고 현재 임대료가 IPR보다 높은 경우 임대료를 최소 5% 낮춰야 함
 - ▶ **(비거주자의 주택 취득 제한)** EU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스페인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과 관련한 세금을 부동산 가치의 최대 100%까지 부과함
 - ▶ **(세제혜택 적용 대상 제한)** 부동산투자제도(Sociedades Anónimas Cotizadas de Inversión en el Mercado Inmobiliario, SOCIMI)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SOCIMI 기업으로 제한함
 - ▶ **(관광 임대예 부가가치세 부과)** 관광 아파트 임대를 상업활동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다 2025년 세금 및 세관 통제 계획 발표

[조세동향 25-04호]

- 스페인 재무부(MoF)는 2025년 3월 17일, '2025년 세금 및 세관 통제 계획(Annual Plan for Tax and Customs Control for 2025)'에 대한 일반 지침을 발표함³¹⁹⁾

317) IBFD, "Government Proposes Tax Measures to Address Rising Housing Prices," 2025. 1.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1-15_es_1.html, 검색일자: 2025. 2. 7.

318) IPR은 스페인 정부가 임대 가격의 벤치마크를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주택 시장의 표준 임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319) IBFD, "MoF Approves Guidelines on Annual Plan for Tax, Customs Control for 2025,"

- ▶ 재무부는 본 통제 계획에서 납세자의 납세의무 준수를 유인하기 위해 다섯 가지 측면에서 과세관청(AEAT)이 수행할 주요 조치를 제시함
 - (정보 제공 및 지원 강화) 전화예약 시스템, 가상 인구조사 도우미(Virtual Census Assistant), Renta DIRECTA³²⁰⁾ 등
 - (납세의무 미준수 예방) 주요 세목별 납세 현황에 대한 자체 평가 시스템 도입, 소득세(법인 및 개인) 과세자료와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연계, 위험 분석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 (세금사기 조사 및 검증) 납세자의 생활 수준과 신고 소득 간 불일치 모니터링, 법인의 실질 운영 여부를 파악하여 유명회사(shell companies) 적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정례화 등
 - (징수) 행동유형 기반 체납자 선별 애플리케이션 개발, 은행 계좌의 자금 압류 절차 개선, 국가 차원의 파산 대응팀 구성 등
 - (자치지방정부와 협력) 과세 데이터 공유, 공동 조사 및 대응, 자산 거래 추적 등

11 포르투갈

가 조세피난처 내 보유한 해외 자산 보고 의무화

[조세동향 25-04호]

- ▣ 포르투갈 정부는 2025년 3월 6일,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소득세 신고 시 조세피난처(Tax Havens) 내 보유한 특정 해외자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함³²¹⁾
 - ▶ (보고대상 해외자산) 조세피난처 내에 있는 부동산, 자동차, 현금, 주식 등

2025. 3.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3-18_es_1.html, 검색일자: 2025. 4. 9.

320) 일부 납세자는 Renta DIRECTA를 통해 수정 없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음.

321) IBFD, "Government Mandates Reporting Foreign Assets in Tax Havens in PIT Return," 2025. 3.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3-10_pt_1.html, 검색일자: 2025. 4. 9.

- 부동산 소유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 자동차·보트·항공기, 현금·유가증권 등, 주식·지분·자본, 집합투자기구(CIUs) 등에서 발행된 증권, 주주대여금, 보험 또는 연금계약, 지분참여 형태로 보유한 자산 또는 증권 등
- ▶ 조세피난처 내 해외자산이 있는 경우와 해외자산이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법인 또는 지점과 관련된 경우 동 자산 내역을 개인소득세 신고 시 보고해야 함
-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므로 자동세무신고(automatic tax return process) 서비스³²²⁾를 통해 개인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라 할지라도 해외자산을 신고해야 함

나 조세 간소화 조치 승인

[조세동향 25-05호]

- ▣ 포르투갈 정부는 2025년 3월 27일, ‘조세 간소화 조치(Tax Simplification Measures)’를 도입하는 법령 제49/2025호를 승인함³²³⁾
 - ▶ 조세 간소화 조치는 조세제도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납세이해도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함
 - ▶ 조세 간소화 조치를 통해 모든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음
 - 단순화된 비즈니스 정보 양식,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 연간 인지세 및 고객명세서 관련 부속서 등 일부 신고서에 대해 자동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함
 -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간이 수출증명서를 발급함
 - 25유로³²⁴⁾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함
 - 개인소득세 신고에 대해 유연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기한을 제공함
 - 현재 필수적인 정기 세무조사 회의를 선택사항으로 바꾸어 절차를 간소화함

322) 포르투갈 세무당국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서비스

323) IBFD, “Government Approves Tax Simplification Measures,” 2025. 4.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4-01_pt_1.html, 검색일자: 2025. 5. 12.

324) 2025년 5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만 8,911원임.

- 재판대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세무서 방문 발급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조세 간소화 조치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12 스웨덴

가 DAC8 이행에 관한 공개 협의 개시

[조세동향 25-01호]

- 스웨덴 국세청은 2024년 12월 20일, 2011년 행정협력지침(2023/2226)의 개정 지침인 DAC8³²⁵⁾의 이행에 관한 공개 협의를 위한 법안을 제출함³²⁶⁾
 - ▶ 해당 법안은 암호화자산에 대한 정보교환에 관한 조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암호화 자산 보고, 자동정보교환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이하 CRS) 개정 및 DAC8의 추가 조항 등에 대한 조치가 포함됨
 - ▶ **(암호화자산 보고)** DAC8 및 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통합된 체계로 구현되어, 다음의 두 가지 새로운 법률을 포함함
 - 「암호화자산에 대한 조세 문제에 관한 특정 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
 - 「암호화자산에 대한 정보교환에 관한 법률」
 - ▶ **(CRS 개정)** CRS 업데이트를 DAC8에 통합하여 보고 대상 계정 식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CRS의 개정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기존 금융 계좌 정보교환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 6년간의 이행을 통해 확인된 규제 격차를 해소함
 - 금융 계좌 정보교환을 새로운 암호화자산 정보 시스템에 맞게 조정함

325) DAC8은 암호화폐 거래 정보교환 및 보고에 관한 조세분야 행정협력지침의 개정지침 이행에 관한 법안임.

326) IBFD, "Sweden Opens Public Consultation on Implementing DAC8," 2024. 12.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1-09_se_2.html, 검색일자: 2025. 1. 10.

- ▶ **(DAC8의 추가 조항)** 암호화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EU 회원국 간에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 및 기타 추가 조항도 함께 포함함
 - 다른 EU 회원국과의 외국 납세자 식별번호 보고 및 교환에 대한 더 엄격한 요건
 - 개인에게 적용되는 사전 세금 결정 중 금액이 150만유로³²⁷⁾를 초과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 교환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
- ▶ 제안된 조치는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며, 공개 협의 기간은 2025년 3월 28일에 종료됨

나 고용주를 위한 해외 근무 과세 개정안 제안

[조세동향 25-03호]

- ▣ 스웨덴 재무부는 2025년 2월 13일, 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함³²⁸⁾
 - ▶ 이 개정안의 목적은 스웨덴의 경제적 고용주에 의해 해외에서 임시로 수행되는 근무가 특정 조건하에서 스웨덴 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임
 - 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소득세법」(1991:586)은 스웨덴 기업 또는 스웨덴 내 외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서 고용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 해외 거주자가 해외에서 수행한 근무가 특정 조건³²⁹⁾하에 스웨덴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법률 자문은 해외에서 임시로 수행되는 근무가 스웨덴의 경제적 고용주와 관련이 있을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해당 근무가 스웨덴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함
 - ▶ 스웨덴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구조상 이러한 법안의 명확화는 사실상 덴마크 거주자에게만 중요한 의미를 가짐

327) 2025년 1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억 5,529만원임

328) IBFD, "Sweden Proposes Amendments to Taxing Work Performed Abroad for Swedish Employers," 2025. 2.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2-19_se_1.html, 검색일자: 2025. 3. 10.

329) 수행된 업무가 스웨덴의 경제적 고용주와 관계 있어야 하며 업무의 성격이 스웨덴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며, 해외에서 수행된 업무가 임시로 제한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를 의미함.

- 이는 스웨덴과 덴마크 간 특정 조세 문제에 관한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스웨덴이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됨
- ▶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5년 6월 30일 이후 수행된 근무에 대해 급여 또는 그와 유사한 보상이 지급되는 경우에 처음 적용됨

다 ▷ 대규모 그룹 내 기업 관련 추가 세법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25-04호]

- ▣ 스웨덴 재무부는 2025년 3월 20일, 대규모 그룹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세법 개정안을 담은 각서 No. Fi2025/00675를 발표함³³⁰⁾
 - ▶ 해당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됨
 - **(외국세액공제 분배 정보 제공)** 기업은 외국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된 세액의 분배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이연법인세자산 계산 명확화)** 불인정 이연법인세자산과 특별 이연법인세자산의 계산 규정이 지점, 고정사업장, 혼성기업, 역혼성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모기업이나 주요 기업에도 적용됨
 - **(보고 주체의 선택권 부여)** 보고 대상 기업은 다른 그룹에 할당된 이연법인세를 조정된 법인세비용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짐
 - **(소수지분 소유자의 영향 반영)** 소수지분 보유자의 직접 보유 지분뿐 아니라 다른 주주 과세 기업을 통해 간접 보유한 지분도 고려하여, 주주 과세 기업의 보고 이익을 조정함
 - ▶ 법안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되며,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임

330) Bloomberg Tax, "Sweden MOF Issues Memorandum on Additional Tax Act Amendment Proposal Regarding Companies in Large Groups," 2025. 3. 25.,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28N28EO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 m9kdWN0L3RheC9zZWZyY2gvcmVzdWx0cy9jMzIyY2NlMTY5NzliYTY4OTk4MjMxM2U5NmVjODUzNiJdXQ-6a6218f0919317a6642f02db9030c7a45a76f7fa&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criteria_id=c322cce16979ba689982313e96ec8536, 검색일자: 2025. 3. 27.

라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ROT 공제율 한시적 인상 추진

[조세동향 25-05호]

- ▣ 스웨덴 정부는 2025년 4월 17일 2025년 봄 수정예산안을 발표하며, 건설업 지원을 위한 한시적 세제 조치를 중심으로 한 경기 대응 방안을 제시함³³¹⁾
 - ▶ 본 예산안은 대규모 조세 개편 없이 한시적 세제 인센티브 중심으로 구성됨
 - ▶ 건설업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ROT(Reparation, Ombyggnad, Tillbyggnad) 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함
 - 2025년 5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ROT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0%로 20%p 상향함
 - ROT 공제는 주택의 수리, 개조, 증축에 소요되는 인건비(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 개인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로, 자재비·장비비·교통비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해당 조치는 건설 부문 고용 안정화 및 내수 부양을 위한 단기 대응책으로 제안됨

13 노르웨이

가 관광객 대상 숙박세 도입 법안 발의

[조세동향 25-05호]

- ▣ 노르웨이 정부는 2025년 4월 10일, 단기 숙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율 과세를 허용하는 「방문자 부담금 법안(Prop. 96 L (2024-2025))」을 국회에 제출함³³²⁾

331) IBFD, “Spring 2025 Budget in Depth: Government Proposes Temporary ROT Deduction Increase to Boost Construction Industry,” 2025. 4.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4-17_se_1.html, 검색일자: 2025. 5. 8.

332) IBFD, “Norway to Impose Local Visitor Tax on Short-Term Accommodation,” 2025. 4.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4-11_no_1.html, 검색일자: 2025. 5. 8.

- ▶ 본 법안은 지자체가 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공공 기반시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30일 미만 단기 숙박에 대해 3%의 숙박세를 자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 숙박세는 호텔, 민박, 디지털 플랫폼(Airbnb 등)을 통한 유료 숙박 등 모든 유료 단기 숙박 제공자에게 적용될 예정으로 세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 숙박요금의 3%이며, 지자체별로 계절적 요인에 따라 특정 시기에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됨
 - 지방정부가 과세권자가 되며, 세입은 반드시 관광 관련 기반시설 및 서비스 재정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함
 - 또한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시행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음
- ▶ 숙박 제공자가 세금 징수 의무를 부담하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사업자가 제3자(중개 플랫폼)를 통해 결제·예약을 처리하는 경우 해당 중개업체가 징수 책임을 부담함
- ▶ 법안은 향후 유람선 관광객 대상 방문세 도입 또한 검토 중이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2025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임

14 덴마크

가 각종 세법 개정안 관보 게재

[조세동향 25-01호]

- ▣ 덴마크 의회는 2024년 12월 30일, 「법인세법」, 「주식저축계좌법」 및 「주식이익과세법」 등의 세법 개정 법률 제1619호를 관보에 게재함³³³⁾
 - ▶ 법인 등이 ‘비과세 포트폴리오 주식’에서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 폐지를 발표함³³⁴⁾

333) IBFD, “Denmark Gazettes Law Abolishing Taxation of Dividends from Tax-Exempt Portfolio Shares, Other Measures under Entrepreneur Package,” 2025. 1.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1-06_dk_1.html, 검색일자: 2025. 1. 10.

334) 기존 세법에서는 비과세 포트폴리오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 법인은 배당금에

- 법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면제는 배당금 분배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요건으로 함
- 면제 혜택은 포트폴리오 회사로 인정받기 위해 「자본이득세법」 제4조 제c항 (aktieavancebeskatningslovens § 4 C)에 명시된 요건³³⁵⁾을 충족하는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적용됨
- ▶ 법인이 최초 주식시장 상장 후 7년간 재고자산 기반 과세(inventory-based taxation) 대신 자본금 기반 과세(capitalization-based taxation)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도입함
- ▶ 법인 등은 세무서에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세액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tax credits)을 요청할 수 있음
 - 2027년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2,500만크로네³³⁶⁾에서 3,500만크로네³³⁷⁾로 인상함
 - 세액공제 한도의 인상은 특히 연구개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 법인 등이 이월결손금을 2025년 기준 약 2,080만크로네³³⁸⁾까지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이월에 관한 규정을 조정할 예정임
 - 현행 세법상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 한도는 2025과세연도의 경우 980만크로네³³⁹⁾임
 - 기준 금액만 변경될 예정이며 손실 이월에 대한 원칙은 변경되지 않음
 - 공제 한도의 인상으로 투자 지출이 많은 기업의 이월결손금 상계 가능성이 확대됨

일정 비율을 곱하여 해당 금액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야 함.

335) 규제시장 등에서 거래가 허용된 포트폴리오 회사의 주식 보유가치는 포트폴리오 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평균의 85%를 초과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36) 2025년 1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0억 4,200만원임.

337) 2025년 1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0억 5,880만원임.

338) 2025년 1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억 6,718만원임.

339) 2025년 1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억 5,665만원임.

나 OECD 행정지침 이행을 위한 세법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25-02호]

- ▣ 덴마크 국세청은 2025년 2월 3일, 최저한세 규정, 특정 국가의 적격 유통업자 보수, 투명기업 재분류 규정 조정, 이전가격(TP) 문서화 규정 완화 및 국제 공동 과세 및 공시 요건 등에 관한 OECD 행정지침 적용에 대한 협의안을 발표함³⁴⁰⁾

 - ▶ 2024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필라2에 대한 OECD 행정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최저한세법(Minimumsbekætningsloven)」에 따른 규칙과 「법인세법(Selskabsskatteloven)」에 따른 국제 공동 과세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여 두 규칙 간의 상호작용이 의도하지 않은 과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함
 - ▶ 이종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간소화된 방식을 선택한 국가에서 덴마크 기업이 적격 유통업자와의 거래를 통제하는 경우, 일반적인 독립기업원칙에서 일부 벗어난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안함
 - 덴마크는 2024년 2월 OECD의 “Amount B 보고서”에 부합하는 규칙을 제안하기 위해 특정 유통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결정 간소화를 추진 중에 있음
 - ▶ 과세대상 기업의 범위, TP 문서 작성 요구 사항, 그리고 문서 작성이 필요한 통제 거래 범위에 대한 규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임
 - 납세자의 총 통제 거래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에 500만DKK³⁴¹⁾ 미만인 경우, 통제 거래에 대해 TP 문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규정 도입을 제안함
 - 다만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거래 또는 덴마크와 조세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 또한 현금 지급이 이루어진 배당금 및 출자금 형태의 통제거래에 대해서는 TP 문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도록 제안되었으며, 조세 투명기업을 통해 이루어진 특정 투자에 대해서도 TP 문서가 필요하지 않도록 제안됨

340) IBFD, “Amendment Bill in Depth: Tax Ministry Seeks to Amend Minimum Taxation Act, Other Tax Laws, Simplify TP Documentation,” 2025. 2.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2-04_dk_1.html, 검색일자: 2025. 2. 10.

341) 2025년 2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억 455만원임.

- ▶ 투명기업의 재분류에 관한 「법인세법」 제2조 제C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여, 관할국 간 분류 차이(즉 혼성불일치)를 악용하는 투명기업의 사용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과세 면제를 허용함
- ▶ EU의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고려하여 방어 조치 규칙이 적용되는 국가 목록에 대한 최종 개정안을 제안함
- ▶ 본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협의에 대한 의견 접수기간은 2025년 3월 3일까지임

다 신규 녹색자산에 대한 추가 감가상각 허용 법안 협의

[조세동향 25-02호]

- ▣ 덴마크 국세청은 2025년 1월 31일, 신규 녹색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액의 일시적 증가 시행에 관한 협의를 위한 법안을 발표함³⁴²⁾
 - ▶ 이 법안은 2022년 6월 24일 체결된 녹색 세제 개혁에 대한 협정(Aftale om grøn skattereform)의 일환으로, 2025년 1월 30일 체결된 녹색 투자 기간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임
 - ▶ 법안에 제안된 내용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하였고 전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규 자산의 취득 비용의 108%를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투자 기간을 도입함
 - 자체 에너지 공급을 통해 화석연료로 구동되거나 구동 가능한 기계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승용차, 선박 및 소프트웨어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증가된 감가상각기준액에 포함되지 않음
 - ▶ 적격자산의 범위는 덴마크 「감가상각법」 제5조 제D항에 명시된 내용과 거의 동일하며, 해당 조항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16%의 감가상각이 가능한 녹색 투자 기간을 제공함

342) IBFD, "Ministry of Taxation Opens Consultation on Bill to Allow Additional Depreciation Under Green Investment Window," 2025. 2.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2-03_dk_1.html, 검색일자: 2025. 2. 10.

▶ 이번 협의는 2025년 2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라 DAC8 이행을 위한 법안 도입

[조세동향 25-03호]

☒ 덴마크는 2025년 2월 26일, 2011년 행정협력지침(2023/2226)의 개정 지침인 DAC8을 덴마크 법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함³⁴³⁾

▶ 이 법안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암호화자산 보고)**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암호화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이 정보는 EU 회원국 간에 교환되어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사용됨
- **(정보교환 범위 확대)** 법안은 EU 회원국 간의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하여 DAC8에 따라 전자화폐에 대한 보고 및 정보 교환을 포함함
- **(세무장관의 권한)** 세무장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보고 의무와 세금 행정협력지침에 대한 기타 개정안을 구현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규정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OECD 모델 규정)** 법안은 또한 암호화자산에 관한 보고 및 정보 교환과 관련된 OECD 모델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안은 2025년 5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변경 사항은 DAC8의 이행 기한에 맞춰 추후 시행될 예정임

마 OECD 최저한세 이행 및 이전가격 간소화 개정안 발의

[조세동향 25-04호]

☒ 덴마크 세무장관은 2025년 4월 9일, OECD 최저한세 지침에 부합하고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 법안(L 194호)을 의회에 제출함³⁴⁴⁾

343) IBFD, "Denmark Introduces Bill to Implement DAC8," 2025. 2.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2-27_dk_1.html, 검색일자: 2025. 3. 10.

- ▶ 본 법안은 OECD 필라 2 행정지침(2024년 6월 및 2025년 1월)을 반영하고, 최저한 세법 및 법인세법 내 국제통합과세 규정을 정비하여 이중과세 등의 예기치 못한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OECD 지침 반영)** 필라 2에 대한 OECD 행정지침을 이행하고, 「최저한세법」과 「법인세법」상의 국제통합과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이전가격 간소화)** 2024년 2월 발표된 OECD “Amount B 보고서”에 따라 일정한 유통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방식을 단순화하고, 일부 국가 소재 특수관계 유통 기업과의 거래에 대해 일반 정상가격 원칙에서 예외를 적용함
 - **(제한세 적용 확대)** 부동산 관련 소득에 제한세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의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제한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자와 관련한 원천징수 의무를 강화함
 - **(TP 문서화 예외)** 중소기업(SME)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하³⁴⁵⁾의 특수관계 거래에 대해서는 TP 문서화 의무를 면제하고, 배당·출자 등 현금성 거래와 조세투명기업을 통한 일부 투자에도 문서화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 **(투명기업 분류 규정 보완)**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2C조³⁴⁶⁾를 개정하고, 투명기업을 활용한 국가 간 분류 차이(하이브리드 불일치)를 통한 소득 비과세 문제에 대응함
 - **(EU 조세회피처 목록 반영)** EU 블랙리스트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방어적 조치 대상국 목록을 수정함
- ▶ 본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최저한세법」 관련 개정 사항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임

344) IBFD, “Tax Minister Proposes Reforms to Align With OECD’s Minimum Tax Guidelines, Simplify TP Documentation,” 2025. 4.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4-10_dk_3.html, 검색일자: 2025. 4. 15.

345) 총 특수관계 거래액이 연간 500만DKK 미만이고, 연말 기준 총 미수·미지급금이 5,000만DKK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346) 법인세법 제2C조는 국가 간 법인 분류 차이를 악용하여 투명기업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의 소득이 이중 비과세되는 문제(소위 ‘하이브리드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기업 형태의 오남용을 차단하려는 목적임.

바 OECD 최저한세 지침 준수 및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 간소화

[조세동향 25-06호]

- ▣ 덴마크 의회는 2025년 6월 3일, OECD 최저한세 행정지침을 반영하고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L 194A)을 통과시킴³⁴⁷⁾

 - ▶ 본 법안은 특정 국가의 자격 있는 유통업자 보수 규정 조정, 투명 기업 재분류 규칙 개정,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제 공동 과세 규정에 대한 일부 부담 완화 조치를 포함함
 - ▶ 또한 「최저한세법(Minimum Taxation Act)」 및 「법인세법(Corporation Tax Act)」의 규정을 조정하여 두 법률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과세상 충돌을 방지함
- ▣ 이 법안은 다양한 국제조세 기준을 반영하여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문서화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지님

 - ▶ OECD가 2024년 6월 및 2025년 1월에 발표한 행정지침을 반영하여 최저한세 규정을 OECD 지침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국제적 조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음
 - ▶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자격 있는 유통업자에 대해 OECD 「Amount B 보고서」(2024년 2월)에 따른 단순화된 이전가격 방식을 일반적 정상가격 원칙에서 벗어난 단순화 방식으로 허용함으로써 이전가격 결정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 덴마크 내 부동산과 관련하여 제한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과세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과세 회피 가능성을 방지하였음
 - ▶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 면제 기준을 도입하여 약 1,500개 중소기업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였음
 - ▶ 투명 기업에 대한 재분류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 간 법인 분류 차이를 이용한 혼성 불일치를 방지하였음

347) IBFD, "Parliament Enacts Reforms to Align With OECD's Minimum Tax Guidelines, Simplify TP Documentation," 2025. 6.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6-04_dk_2.html, 검색일자: 2025. 6. 13.

- ▶ EU 비협조 조세관할지역(조세회피국) 목록을 반영하여 방어 조치 대상국 명단을 최신화함으로써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였음

▣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 완화 조치는 다음과 같음

- ▶ 연간 총 거래액(채권·채무 제외)이 500만덴마크크로네³⁴⁸⁾ 미만이고, 연말 기준 총 채권 및 채무가 5천만덴마크크로네³⁴⁹⁾ 미만인 경우 이전가격(TP) 문서화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소규모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음
- ▶ 무형자산 거래 또는 덴마크와 조세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관련 자와의 거래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고위험 거래에 대한 문서화 기준을 유지하였음
- ▶ 배당 및 출자(현금 기준), 세무상 투명 기업을 통한 특정 투자 거래에 대해 문서화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단순 거래에 대한 문서화 부담을 완화하였음

▣ 법안의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음

- ▶ 대부분의 개정 조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납세자에게 제도 적용 기간을 부여함
- ▶ 「최저한세법」 관련 조항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OECD GloBE 규정 시행 일정과 정합성을 확보하였음

사 **주주 대출 과세 완화 및 지속적 용역공급 과세이연 허용**

[조세동향 25-06호]

- ▣ 덴마크 의회는 2025년 6월 3일, 「기업가 패키지 협약(2024 Entrepreneurial Package Agreement)」의 일환으로 「소득세법(Ligningsloven)」 및 「감가상각법(Afskrivningsloven)」 등을 개정하는 법안(L 171호)을 통과시킴³⁵⁰⁾

348) 2025년 5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억 5,865만원임.

349) 2025년 5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5억 9,050만원임.

350) IBFD, "Parliament Relaxes Anti-Abuse Rules on Shareholder Loans, Allows Tax Deferral on Continuous Services," 2025. 6.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6-05_dk_1.html, 검색일자: 2025. 6. 13.

- ▶ 개정안은 지속적 용역공급 및 비상장회사의 주주 대출에 대한 과세 방식을 개선하여 기업 환경을 지원하고, 세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또한 지속적 용역공급 거래와 관련한 세무당국의 사전 유의 사항을 반영하여 과세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포함함
- ▣ 비상장회사 주주 대출에 대한 반복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 회피 방지 규정을 정비하고, 상환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세무상 계정 제도를 도입함
- ▶ 기존에는 주주가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되었으며,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이후 신규 대출 시에도 과세되는 문제가 있었음
 - ▶ 개정안은 주주가 최초로 대출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액을 회사의 세무상 계정에 충당하도록 함
 - ▶ 동일 주주가 이후 다시 자금을 인출할 경우, 이 인출액이 기존 상환금액 범위 내에 있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 ▶ 이에 따라 주주는 이미 과세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과세 부담 없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함
- ▣ 지속적 용역공급 거래에 대해 과세를 수익 수령 시점으로 이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제 요건은 과세 대칭성 원칙에 따라 제한함
- ▶ ‘지속적 용역공급’은 용역 제공 기간 또는 대가가 불확정적인 거래를 의미하며, 예로는 매출 또는 이익 기반의 성과급 계약이 있음
 - ▶ 개정안은 용역 제공자가 수익을 실제 수령하는 시점에 따라 점진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현금 수령 이전 전체 용역 공급 가치에 대해 미리 과세되던 부담이 완화되며, 과세 시점과 현금 수입 시점이 일치함으로써 납세자의 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 기존에는 서비스 제공자(예: 주식 구매자)가 지급금이 자본화된 가치를 초과할 경우 공제가 가능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됨
 - 거래 대상 자산이 감가상각, 비용 공제 또는 양도차익 계산 대상이 아닌 경우
 - 용역 수혜자인 매도자가 덴마크 비거주자이거나 과세되지 않는 경우

- ▶ 한편 매도자는 지급금이 자본화된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과세되지 않으며, 이는 매수자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이러한 규정은 과세 대칭성(symmetry)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 ▣ 법안은 관보 게재일의 다음 날부터 발효되며, 일부 규정은 소급 적용되고 나머지는 2026년부터 시행됨

- ▶ 세무당국의 사전 유의사항에 따른 조치는 2025년 3월 19일 이후 체결된 상호자산 이전 계약(mutual asset transfers)에 소급 적용됨

- ▶ 그 외 개정 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15 핀란드

가 2025년 세제 개편안 발표

[조세동향 25-05호]

- ▣ 핀란드 정부는 2025년 4월 23일, 중기 재정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VAT), 기타 간접세를 포함한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공개함³⁵¹⁾

- ▶ 이번 세제 개편은 기업 환경 개선, 조세 형평성 제고, 저소득층 세부담 완화를 주요 목표로 함

- ▶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구조 조정, 공제제도 개편, 소비세 조정 등 포괄적인 조치가 포함됨

- ▣ (법인세)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

- ▶ 2027년 1월 1일부터 법인세율을 기존 20%에서 18%로 2%p 인하함

351) IBFD, "Government Announces New Tax Measures, Reduction of CIT Rate," 2025. 4.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4-24_fi_1.html, 검색일자: 2025. 5. 8.

- ▶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최대 25년까지 허용함
- ▶ 인위적인 주식 교환을 통한 배당소득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 조치를 도입함
- ▶ 자영업자의 연금보험료 산정 기준을 실질 소득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자영업자 연금제도(Yrittäjän eläkelaki, YEL)의 개편을 검토 중임
 - 현재는 자영업자가 연금 기준소득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실제보다 낮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음

▣ (개인소득세)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층의 과세 구조를 단순화함

- ▶ 저소득 및 중간소득층의 근로소득세를 인하하여 가처분소득을 확대함
- ▶ 고소득층의 근로소득세 공제 단계를 폐지하고, 세율 조정을 통해 최고 한계세율을 52%로 인하함
 - 다만 이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지 않음
- ▶ 고액 연금 수령자에 대한 추가세(surtax)를 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함
- ▶ 특정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일부 가전제품 및 물품 수리에 대한 적용 확대를 검토함
- ▶ 재택근무 공제(home office deduction), 자전거 수당(bicycle benefit), 노동조합 회비 공제는 2026년부터 폐지함
 - 노조 회비 공제 폐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됨
- ▶ 부양 자녀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금액을 추가로 인상함
- ▶ 역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25%로 낮추고, 해외에서 귀국하는 핀란드 국적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함
- ▶ 2026년 1월 1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면세 한도를 각각 3만유로³⁵²⁾ 및 7,500유로³⁵³⁾로 상향하고, 상속세 납부 이자율을 인하함

▣ (부가가치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품목의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함

352) 2025년 5월 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743만원임.

353) 2025년 5월 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86만원임.

▶ 현재 14%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2026년부터 13.5%로 인하함

▣ (기타 간접세) 건강 및 환경 관련 조세를 중심으로 소비세를 조정함

- ▶ 주류 소비세는 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자동 인상되도록 함
- ▶ 전자담배, 니코틴 파우치, 청량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함
- ▶ 채굴 활동에 대한 조세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광물세를 인상함

16 네덜란드

가 2025년 세금 계획안 승인

[조세동향 25-01호]

▣ 네덜란드 상원은 2024년 12월 17일, 재무부 장관이 하원에 제출한 2025년 세금 계획안을 승인함³⁵⁴⁾

- ▶ 네덜란드 재무부는 지난 2024년 9월, 2025년 세법개정안(2025 Tax Plan)을 발표한 바 있으며 상원에서 승인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 (법인세) 법인세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³⁵⁵⁾
 - EBITDA 기준 이자공제 한도가 완화되어 이자비용의 20%에서 최대 24.5%까지 공제 가능하도록 함
 -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100만유로³⁵⁶⁾를 초과하는 채무 면제를 받게 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함

354) IBFD, "Netherlands - Upper House of Parliament Approves 2025 Tax Plan Including Amendments to EBITDA-Based Interest Deduction, R&D Incentives," 2024. 12.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12-17_nl_1, 검색일자: 2025. 1. 13.

355) IBFD, "Netherlands - Tax Plan 2025 In Depth: Government Publishes 2025 Corporate Tax Changes, Individual Income Tax Rates, Tax Credits," 2024. 12.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2-19_nl_2.html, 검색일자: 2025. 1. 13.

356) 2025년 1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억원임.

- ▶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Wage tax)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³⁵⁷⁾
 - **(업무 관련 비용)** 2025년에 적용되는 업무 관련 비용제도(werkkostenregeling) 비율은 첫 40만유로³⁵⁸⁾에 대해 2%,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1.18%임
- ▶ **(환경세)** 환경세(environmental tax)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³⁵⁹⁾
 - **(비행세)** 2025년부터 네덜란드 공항에서는 승객 1인당 29.40유로³⁶⁰⁾를 부과하며, 2세 미만의 아동과 네덜란드 공항을 경유하는 환승 승객에게는 비행세를 면제함
 - **(산업에 대한 CO₂ 세금)** CO₂ 환산 배출량이 면제 대상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CO₂ 환산 톤당 87.90유로³⁶¹⁾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EU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나 예정되었던 플라스틱세 취소

[조세동향 25-05호]

- ▣ 네덜란드는 2025년 4월 25일, 플라스틱세(plastic tax)로도 알려진 폴리머세(polymer tax)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함³⁶²⁾
 - ▶ 최초 발표된 플라스틱세의 목적은 화석 기반 플라스틱(fossil-based plastics)의 생산을 감축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장려하기 위함이었음
 - ▶ 그러나 제조업체들이 네덜란드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폴리머 부문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등 플라스틱세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여 플라스틱세 도입이 취소되었음

357) IBFD, "Netherlands - Tax Plan 2025 In Depth: Government Publishes 2025 Wage Tax and Environmental Tax Figures," 2024. 12.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2-19_nl_5.html, 검색일자: 2025. 1. 13.

358) 2025년 1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억원임.

359) IBFD, "Netherlands - Tax Plan 2025 In Depth: Government Publishes 2025 Wage Tax and Environmental Tax Figures," 2024. 12.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2-19_nl_5.html, 검색일자: 2025. 1. 13.

360) 2025년 1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만 4,100원임.

361) 2025년 1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만 1,850원임.

362) IBFD, "Netherlands - Netherlands Cancels Planned Plastic Tax," 2025. 5.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5-02_nl_1.html, 검색일자: 2025. 5. 8.

- ▶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플라스틱세 도입 취소로 인한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일정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폐기물세(afvalstoffenbelasting)의 세율을 인상하고 면제 매립지에 대한 요금을 인상할 수 있음
 -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이산화탄소 부과금(CO₂-heffing voor afvalverbrandingsinstallaties)으로 발생한 수입을 재할당하고 2030년에 부과금을 톤당 295유로³⁶³(현재 톤당 약 152.10유로³⁶⁴)로 인상
- ▶ 네덜란드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2026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힘

다 2026년 세금 계획의 잠정 목록 발표

[조세동향 25-05호]

- ▣ 네덜란드는 2025년 4월 25일,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2026년 세금 계획(Tax Plan)에 포함될 조치들의 잠정 목록을 발표함³⁶⁵
 - ▶ Box 3 과세(저축 및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될 예정임
 - 기타 자산(other assets)(예: 주식, 채권, 두 번째 주택 등) 범주에 대한 간주 수익률을 7.78%(현재 5.88%)로 인상함
 - 기본 공제를 5만 1,396유로³⁶⁶(현재 5만 7,684유로³⁶⁷)로 인하함
 - ▶ 그 외 2026년 세금계획에 포함 예정인 법안은 다음과 같음
 - 스포츠, 문화, 미디어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을 최종적으로 취소하는 법안이 포함될 예정임
 - DAC9 이행 법안이 포함될 예정임
 - 글로벌최저한세 지침을 반영한 법안이 포함될 예정임

363) 2025년 5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6만원임.

364) 2025년 5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만원임.

365) IBFD, "Netherlands - Government Releases Provisional List of Tax Plan 2026 Measures, Upcoming Tax Legislation," 2025. 4.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4-28_nl_3.html, 검색일자: 2025. 5. 8.

366) 2025년 5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041만원임.

367) 2025년 5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023만원임.

- 2027년부터 현행 정액으로 부과되는 항공세 대신 비행 거리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항공세를 도입하는 법안이 포함될 예정임
-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운영 관련 법안이 포함될 예정임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1 일본

가 적격소재국 추가세 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5-02호]

- ▶ 2025년 2월 4일 일본 정부는,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이하 QDMTT)와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ayment Rule, 이하 UTPR)을 적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³⁶⁸⁾
 - ▶ 일본이 제안한 QDMTT은 필라2의 핵심적인 규칙인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GloBE)에 따른 것으로, 대규모 다국적 기업 그룹이 각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
 - ▶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이하 IIR)³⁶⁹⁾이 그 다음으로 적용되며, 최종 모기업 관할국이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해외 자회사의 수입에 대해 추가로 과세할 수 있음
 - ▶ 최종 모기업 관할국이 IIR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으면 UTPR이 적용되며, UTPR을 시행하는 자회사 관할국이 추가로 과세할 수 있음
 - ▶ 제출된 법안의 적용대상은 일본 다국적 기업 그룹 또는 일본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 다국적 기업이며, 규정이 적용되는 기업들은 각 회계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

368) Tax Note, “Japan Sends UTPR, Domestic Minimum Top-Up Tax Bill to Parliament,” Stephanie Soong, <https://www.taxnotes.com/tax-notes-international/oecd-pillar-2-global-minimum-tax/japan-sends-utpr-domestic-minimum-top-tax-bill-parliament/2025/02/10/7r144>, 2025. 2. 10., 검색일자: 2025. 2. 10.

369) 일본은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IIR 규정을 채택하여 시행 중에 있음. 일본 재무성, 「第211回国会における財務省関連法律」, https://www.mof.go.jp/about_mof/bills/211diet/st050203h.pdf, 검색일자: 2025. 2. 10.

터 15개월 이내(특정한 상황에서는 18개월)에 신고·납부해야 함

나 세무조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

[조세동향 25-03호]

- ▣ 일본 국세청은 AI를 활용하여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세무 분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³⁷⁰⁾³⁷¹⁾
 - ▶ 일본 국세청은 2022업무연도부터 소득세 조사에 AI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 업무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에 AI를 활용함
 - 인공지능(AI)은 납세자가 과거에 제출한 세금 신고서 및 조사 결과를 학습하고 분석하여, 신고 누락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2023업무연도 동안 AI가 판별한 조사대상에 대해 1,665억엔³⁷²⁾의 추정세액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약 193억엔³⁷³⁾ 증가하였음
 - ▶ 일본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추가 징수된 소득세액은 통계 공표가 개시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2023업무연도의 세무조사 건수는 60만 5,077건으로 2022업무연도의 63만 7,823건에 비해 약 3만건 이상 감소함
 - 2023업무연도의 소득세 추정세액은 1,398억엔³⁷⁴⁾이며, 신고 누락액은 9,964억엔³⁷⁵⁾으로 2022업무연도의 소득세 추정세액 1,368억엔³⁷⁶⁾과 신고 누락액 9,041억엔³⁷⁷⁾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370) The Sankei Shimbun, 「税務調査にAI導入「強まる監視網」・効率的に追徴税増額も調査官のスキル影響懸念」, <https://www.sankei.com/article/20250212-M4ULHZCQWJPLLAZSWZ22SAMZDY/>, 2025. 2. 12., 검색일자: 2025. 3. 10.

371) 『디지털 투데이』, 「日 국세청, AI 도입했더니…세무조사 효율성·추징세액↑」,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318>, 2025. 2. 13., 검색일자: 2025. 3. 10.

372) 2025년 3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6,431억원임.

373) 2025년 3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04억원임.

374) 2025년 3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3,796억원임.

375) 2025년 3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조 8,334억원임.

376) 2025년 3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3,500억원임.

377) 2025년 3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조 9,225억원임.

다 상속 토지 소유권 이전登記 시 「등록면허세」 면제 규정 적용기한 연장

[조세동향 25-04호]

- ▣ 일본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면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7년 3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³⁷⁸⁾
 - ▶ 상속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개인이登記하기 전 사망한 경우
 - 상속³⁷⁹⁾에 의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개인이 그 상속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이전登記를 받기 전 사망한 경우, 2025년 3월 31일까지 사망한 개인을 토지 소유권자로 하는登記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함³⁸⁰⁾
 - ▶ 소액의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 개인이 100만엔³⁸¹⁾ 이하의 토지에 대해 2025년 3월 31일까지 소유권 보존登記 또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登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함³⁸²⁾

라 「방위특별법인세」 시행 발표

[조세동향 25-06호]

- ▣ 일본 국세청은 2025년 5월,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방위특별법인세」 시행을 발표함³⁸³⁾
 - ▶ 이 법안은 2025년 3월 31일 공포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26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은 「방위특별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 (세율 및 공제액) 계산된 법인세에서 연 500만엔³⁸⁴⁾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4% 세

378) 일본 국세청, 「相続による土地の所有権の移転登記等に対する登録免許税の免税措置について」,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sonota/0018003-081-01.pdf>, 검색일자: 2025. 4. 7.

379) 상속인에 대한 유증 포함.

380)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84조의 2의3 제1항

381)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03만원임.

382)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84조의 2의3 제2항

383) 일본 국세청, 「防衛特別法人税が創設されました」, 2025년 5월,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pdf/0025004-109_1.pdf, 검색일자: 2025. 6. 11.

384) 2025년 6월 11일 기준 한화 환산 시 약 4,726만원임.

- 을을 적용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경우 기본공제액을 월수에 비례 적용
- (세액공제) 법이 정하는 공제순서³⁸⁵⁾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
- (신고의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³⁸⁶⁾하여야 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간신고 의무가 있음
- (신고서식) 기존 법인세 및 지방 법인세 신고서 양식에 신고 항목을 추가함

2 중국

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세금 환급제도 전면 개선

[조세동향 25-05호]

- ▣ 중국은 2025년 4월 27일, 미국과의 무역 갈등의 맥락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세금 환급 문턱을 낮추어 외국인 유입 관광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함³⁸⁷⁾
 - ▶ 재무부, 중국인민은행, 기타 정부 부처는 공동 성명을 통해 상점에서 200위안³⁸⁸⁾ 이상을 지출하는 관광객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함
 - 현금 청구에 대한 최대 환급 금액은 2만위안³⁸⁹⁾으로 인상되며, 적격 세금 환급 상품 목록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관광객이 더욱 쉽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 이번 발표에서는 환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 내용을 포함함

385) ① 분배 시 조정 외국세 상당액의 공제 ② 공제 대상 소득세 상당액의 공제 ③ 허위 회계에 따른 과다 신고 경정에 따른 공제 ④ 외국납부세액 공제

386) 과세표준이 0이거나 기준 법인세액이 0이더라도 반드시 신고 필요

387) IBFD, "China Reduces Tax Rebate Threshold for Foreign Tourists Amid US Trade Conflict," 2025. 4.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4-28_cn_1.html, 검색일자: 2025. 5. 12.

388) 2025년 5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만 8,582원임.

389) 2025년 5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5만원임.

- **(점포 확대)** 각 지역별로 세금 환급이 가능한 상점을 추가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세액공제 등급을 추가함으로써 새로 개업한 상점이 세금 환급 상점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신고 절차를 최적화함
- **(상품 다양화)** 각 지역별로 고품질의 특색 있는 상품의 구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세금환급을 위해 구입해야 하는 물건값의 하한선을 낮추고 상한선을 높임으로써 환급 대상이 되는 상품의 범위를 확대함
- **(서비스 개선)** 환급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세금 환급 기관과 환전소 및 해외관광 서비스센터 등 기관 간 협력을 지원함

3 홍콩

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도입을 위한 법 초안 발표

[조세동향 25-01호]

- ▣ 홍콩 정부는 2024년 12월,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이하 GloBE 규칙)을 채택하고, 홍콩 최저한세 규정(Hong Kong Minimum Top-up Tax, 이하 HKMTT) 도입에 대한 법 초안을 발표함³⁹⁰⁾
 - ▶ GloBE 규칙은 필라2의 핵심적인 규칙으로 연간 통합 수익이 7억 5천만유로³⁹¹⁾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이 각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
 - GloBE 규칙에 따르면 홍콩의 적격 국내 최저한세 규정(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인 HKMTT가 우선 적용되며,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홍콩 정부는 관할 범위 내 다국적 기업 그룹으로부터 추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음

390) Tax Note, "Hong Kong Issues Draft Legislation for Global Minimum Tax Regime," Kiarra M. Strocko, 2025. 1. 6., <https://www.taxnotes.com/tax-notes-international/corporate-taxation/hong-kong-issues-draft-legislation-global-minimum-tax-regime/2025/01/06/7ph2t>, 검색일자: 2025. 1. 13.

391) 2025년 1월 1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1,254억원임.

-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이하 IIR)이 그 다음으로 적용되며,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최종 모기업 관할국이 실효세율 15% 미만인 해외 자회사의 수입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음
- HKMTT나 IIR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ayment Rule, 이하 UTPR)이 적용되며,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다른 구성기업의 관할국으로 과세권을 이전하고, 다른 국가가 UTPR을 시행하는 경우 추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음
- ▶ 홍콩 정부는 HKMTT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나라들로부터 과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2027~2028년부터 매년 약 150억홍콩달러³⁹²⁾를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함

4 인도

가 중산층에 대한 조세감면 예산안 제안

[조세동향 25-02호]

- ▣ 인도 재무부는 2025년 2월 1일, 중산층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소득세 부담 완화 내용을 포함한 2025~2026년 예산안을 제안함
 - ▶ **(소득세 면제)** 연간 소득이 120만루피³⁹³⁾ 이하인 개인에게 소득세를 면제하며, 약 1천만명의 납세자가 면세점 이하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됨
 - ▶ **(세율 적용구간)** 각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세 세율을 인하할 것이며, 약 8,750만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 ▶ **(기타소득세)** 복권 당첨, 게임이나 경마 등에서 얻은 상금에 대해 각 회계연도별로 1만 루피³⁹⁴⁾를 초과하는 총 상금에 대해 부과하던 세금을 각 건별로 1만루피³⁹⁵⁾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

392) 2025년 1월 1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조 8,282억원임.

393) 2025년 2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90만원임.

394) 2025년 2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만 6,000원임.

395) 2025년 2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만 6,000원임.

- ▶ 새로운 예산안은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가계소비와 저축,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직접세 약 1조루피,³⁹⁶⁾ 간접세 약 260억루피³⁹⁷⁾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나 「소득세법」 간소화 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5-03호]

- ▣ 인도 재무부(MOF)는 2025년 2월 13일, 「소득세법」의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가독성을 향상시킨 「소득세법」 간소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³⁹⁸⁾
 - ▶ 이전의 「소득세법」에서는 타 법률이나 규칙을 준용하는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납세자가 이를 해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음
 - ▶ MOF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누적된 개정 사항, 복잡한 법률 용어, 지나치게 상세한 법률 조항, 중복된 규정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2만 976개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호주와 영국의 법률 간소화 사례를 참고하여 간소화 법안을 입안함
 - ▶ 이 법안은 기존의 개정 사항을 통합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단순화하며, 1,200개 이상의 단서와 900개 이상의 설명을 삭제하여 「소득세법」을 재구성하였으나, 정책적 변화나 세율 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음
 - ▶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납세자는 타 법률이나 규칙을 참조할 필요가 없이,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 6% 균등화 부담금 제도 철회 추진

[조세동향 25-04호]

- ▣ 인도 정부는 2025년 3월 25일, 온라인 광고에 대한 인도의 6% 균등화 부담금 제도를

396) 2025년 2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조 6,015억원임.

397) 2025년 2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316억원임.

398) Tax Note, "Income Tax Act Simplification Bill Sent to Indian Parliament," Kiarra M. Strocko, <https://www.taxnotes.com/tax-notes-international/legislation-and-lawmaking/income-tax-act-simplification-bill-sent-indian-parliament/2025/02/17/7r3r8>, 2025. 2. 17., 검색일자: 2025. 3. 10.

철회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재정법안³⁹⁹⁾을 승인함⁴⁰⁰⁾

- ▶ 균등화 부담금 제도는 2016년 6월부터 비거주 사업체 등이 인도 내에서 온라인 광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적인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0년 3월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거주 전자 상거래 사업체에 대해서도 2% 균등화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확대됨
- ▶ 인도 정부의 균등화 부담금 제도 철회 결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⁴⁰¹⁾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음

라 1% 원천징수 대상인 사치품 목록(TCS) 발행

[조세동향 25-05화]

- ▣ 인도 CBDT(Central Board of Direct Taxes)는 2025년 4월 22일, 상품 가치가 100만 루피⁴⁰²⁾를 초과하는 경우 판매자가 1%의 원천세(Tax Collected at Source, TCS)를 징수해야 하는 ‘특정 상품 목록’을 발행함⁴⁰³⁾
 - ▶ 구매자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정된 상품에 대한 TCS는 2025년 4월 22일부터 적용됨
 - ▶ 특정 상품 목록에는 손목시계, 선글라스, 예술 작품(서화, 골동품 등), 수집품(동전, 우표 등), 선박 및 항공기(요트, 헬리콥터 포함), 가방(핸드백, 지갑 등), 스포츠웨어(신발, 골프키트, 스키웨어), 홈시어터 및 경주용 말 등이 포함됨

399) 인도 재무부, “THE FINANCE BILL, 2025,” https://www.indiabudget.gov.in/doc/Finance_Bill.pdf, 검색일자: 2025. 4. 7.

400) Tax Note, “India Aims to Abolish 6 Percent Equalization Levy,” Stephanie Soong, <https://www.taxnotes.com/tax-notes-international/digital-economy/india-aims-abolish-6-percent-equalization-levy/2025/03/31/7rt6m>, 2025. 3. 31., 검색일자: 2025. 4. 7.

401)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1년 1월 균등화 부담금 제도가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난하며 보복 관세 부과를 고려하였으나, 다자간 글로벌 세제 협정을 타결할 수 있도록 보복 관세 부과를 보류해 왔음.

402) 2025년 5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34만원임.

403) IBFD, “Tax Authority Issues List of Luxury Goods Subject to 1% Tax Collection at Source (TCS),” 2025. 4.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4-24_in_1.html, 검색일자: 2025. 5. 12.

5

싱가포르

가 자발적 정보교환 관련 FAQ 발행

[조세동향 25-01호]

- ▣ 싱가포르 국세청은 2025년 1월 1일, 싱가포르의 자발적 정보교환 제도(Spontaneous Exchange of Information, 이하 SEOI)의 지침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FAQ를 발행함⁴⁰⁴⁾

 - ▶ 싱가포르는 2024년 7월 OECD BEPS 프로젝트 참여 회원의 최소 기준 중 하나인 SEOI 참여를 선언한 바 있음
 - ▶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 관할권 내의 관련 당국과 다음의 결정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교환해야 함
 - 특혜 제도와 관련한 결정, 이전 가격과 관련된 일방적 사전 가격 책정 합의 또는 기타 국가 간 일방적 결정, 과세 소득의 하향 조정을 규정하는 국가 간 결정, 고정사업장 관련 결정, 특수관계인(사) 도관 결정
 - ▶ 적용 대상은 결정이 적용되거나 특혜적 대우를 받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거래를 하는 납세자, 납세자의 직접적인 최종 모회사 등이 됨
 - 이때 A가 B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C가 A와 B에 대해 각각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A와 B를 SEOI 목적상 '관계인(related)'으로 간주함

404)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FAQs on Spontaneous Exchange of Information," <https://www.iras.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faqs-on-spontaneous-exchange-of-information.pdf>, 검색일자: 2024. 12. 16.

6 인도네시아

가 사치품에 대한 VAT 세율 인상,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사치세 인하

[조세동향 25-01호]

-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일부 사치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1%에서 12%로 인상함⁴⁰⁵⁾

 - ▶ 2021년 10월 29일 공포된 UU HPP(Tax Regulation Harmonization)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율의 점진적 인상이 허용되었으며, 2022년 4월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율이 10%에서 11%로 한 차례 인상된 사실이 있음
 - ▶ 이번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안은 당초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적용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세율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인하여 일부 사치품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됨
 - ▶ 2025년 1월 1일부터 아래의 공급에 대해서는 12%의 세율이 적용됨
 - 고급 식품류(쌀, 과일, 육류, 생선, 갑각류)
 - 고급 서비스(국제적 교육용역, VIP 의료서비스)
 - 가정용 전기(3,500~6,600VA의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12월 16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3%의 사치세를 감면할 예정임을 발표함⁴⁰⁶⁾

 -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에 대해 사치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도 사치세를 감면할 예정임
 - ▶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6~12%의 사치세율을 적용받으며, 세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사치세는 최대 9%로 제한됨

405) VAT Calc, "Indonesia luxuries VAT rise 11% to 12% 2025," Jacinta Caragher, 2025. 1. 1., <https://www.vatcalc.com/indonesia/indonesia-vat-rises-to-11-1st-april-2022-12-by-2025/>, 검색일자: 2025. 1. 13.

406) JAKARTA GLOBE.ID, "Hybrid Cars in Indonesia to Get 3 Pct Luxury Tax Incentive," Jayanty Nada Shofa, 2024. 12. 16., <https://jakartaglobe.id/business/hybrid-cars-in-indonesia-to-get-3-pct-luxury-tax-incentive>, 검색일자: 2025. 1. 13.

7 호주

가 임대용 건물 개발 인센티브 관련 지침 발표

[조세동향 25-01호]

- ▣ 호주 국세청은 2024년 12월 23일, 임대용 건물(Build to Rent, 이하 BTR) 개발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및 자격 기준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함⁴⁰⁷⁾

 - ▶ BTR 개발과 관련한 소유주에 4%의 투자용 부동산 가속 상각 공제가 허용됨
 - 건물의 구조적 개선 및 변경을 포함하며, 주택의 증축 또는 변경 및 개량공사로 인해 임대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자격이 유지됨
 - BTR 개발 공사가 호주 서머타임(AEDT) 기준 2023년 5월 9일 오후 7시 30분 이후에 시작된 건부터 적용됨
 - ▶ 관리형 투자신탁(Managed Investment Trust, MIT)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적격 자금에 15%의 최종 원천징수 양허세율이 적용됨
 - 임대형 주택 개발 단지 내 주택 임대 계약에 따른 임대 수입 지급
 - 주택과 관련한 자본이득세상의 이득에 기인하는 금액
 - BTR 개발 사업 소유주의 회원권과 관련한 자본이득세상의 이득에 기인하거나 그 일부인 경우
- ▣ BTR 개발 인센티브의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다음의 적격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함

 - ▶ 일반 대중에게 임대 가능한 50개 이상의 주거용 건물로 구성된 BTR 개발임
 - ▶ 주거용 건물이자 과세 대상 호주 부동산이며, 상업 및 주거의 복합용 건물이 아님
 - ▶ BTR 개발 지역의 주택 및 공용구역을 적어도 15년 이상 단일 기관이 소유하고 있음

407) Australian Taxation Office, "Build to rent development tax incentives,"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assets-and-property/build-to-rent-development-tax-incentives>, 검색일자: 2025. 1. 13.

- ▶ 해당 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하거나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 ▶ 대상 주택 중 최소 10%가 관련 법령의 저가 주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 BTR 개발을 선택한 후 15년의 기간 동안 해당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을 시키지 못할 경우 부당사용세(misuse tax)가 적용될 수 있음
- ▶ BTR 개발 부동산의 소유주는 BTR 개발 승인양식(NAT 75663)을 제출하여, 해당 인센티브 적용 선택을 알려야 함
 - 개시일이 지정된 경우 해당 일자 전에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양식을 수령한 날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간주함

나 녹색 세액공제 법안 상원 통과

[조세동향 25-02호]

- ▣ 호주 상원은 2025년 2월 10일, 주요 광물 및 녹색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 법안을 통과시킴⁴⁰⁸⁾⁴⁰⁹⁾
 - ▶ 본 법안은 137억호주달러⁴¹⁰⁾ 규모의 생산 세액공제로, 전 세계적인 순 제로(Net zero)⁴¹¹⁾ 전환 추세에 따라 호주의 풍부한 청정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제적 수요를 활용하여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되었음
 - ▶ 주요 광물 프로젝트는 31개 광물⁴¹²⁾ 중 하나를 처리하는 비용의 1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소 프로젝트는 킬로그램당 2호주달러⁴¹³⁾를 공제하며, 2027년에서 2040년

408) Parliament of Australia, “Future Made in Australia (Production Tax Credits and Other Measures) Bill 2024,” https://parlinfo.aph.gov.au/parlInfo/search/display/display.w3p;query=Id%3A%22legislation%2Fems%2Fr7297_ems_00fa0e2e-bb91-4c72-9a66-086436d63677%22#_ftn2, 검색일자: 2025. 2. 11.

409) Bloomberg Tax, “Australian Senate Passes Green Tax Credits Bill,” <https://news.bloomberglaw.com/business-and-practice/australian-senate-passes-green-tax-credits-bill> 검색일자: 2025. 2. 11.

410) 2025년 2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조 5,518억원임.

411)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포함한 전 세계 인위적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가능한 한 0에 가깝게 감축하고 잔여 배출량을 대기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

412) 고순도 알루미늄, 안티몬, 비소, 베릴륨, 비스무트, 크롬, 코발트, 플루오르, 갈륨, 게르마늄, 흑연, 하프늄, 인듐, 리튬, 마그네슘, 망간, 몰리브덴, 니켈, 니오브, 백금족 원소, 희토류 원소, 레늄, 스칸듐, 셀레늄, 규소, 탄탈, 텔루르, 티타늄, 텅스텐, 바나듐, 지르코늄

사이에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최대 10년간 적용할 수 있음

- ▶ 세액공제의 혜택을 적용받는 프로젝트 운영자는 세액공제에 대한 대가로 지역사회에 특정 혜택을 제공해야 함
- ▶ 본 법안은 하원을 거친 후 왕실의 동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이 통과된 후 추가적인 공개 협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임

다 감사원의 AI 거버넌스 권고안에 동의

[조세동향 25-03호]

- ▣ 호주 국세청은 2025년 2월 24일 호주 국립감사원(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이하 ANAO)에 의해 이루어진 AI 거버넌스 감사에 대한 보고서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함⁴¹⁴⁾415)
- ▶ ANAO는 호주 국세청이 AI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 계획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감사 기준은 AI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 AI 모델의 설계, 개발 및 배포를 위한 조치, AI 도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 현황 등임
 -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국세청은 AI 도입에 있어 부분적으로 효과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함
 - 대표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AI 모델 중 약 74%가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데이터 윤리 평가를 받지 않았음(2024년 8월 기준)
- ▶ ANAO는 공개된 감사 결과보고서에 일곱 가지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⁴¹⁶⁾ 호주 국

413) 2025년 2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32원임.

414)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welcomes ANAO audit report on Governance of AI," <https://www.ato.gov.au/media-centre/ato-welcomes-anao-audit-report-on-governance-of-ai>, 검색일자: 2025. 2. 28.

415)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t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https://www.anao.gov.au/work/performance-audit/governance-of-artificial-intelligence-the-australian-taxation-office>, 검색일자: 2025. 2. 28.

416) 제시된 권고안은 ① 자동화 및 AI 전략과 전사적 전략 간의 연동 ② 기관 전체의 조직구조와 AI 도입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명확한 정의 ③ AI 관련 데이터의 악용 가능성과 통제방안 검토 ④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는 AI 도입 지원 조치 개선 ⑤ AI의 효과적 설계, 개발, 배포 및 검증을 위한 정책 개발 ⑥ AI 및 자동화 전력에 대한 성과 측정 및 평가 체계 구축 ⑦ AI 도입 관련 정보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세정은 이러한 권고안에 대해 모두 동의하며 AI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나갈 예정임

라 2025~2026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5-04호]

▣ 호주 재정부는 2025년 3월 25일, 2025 회계연도(2025년 7월~2026년 6월) 예산안 (Budget 2025-26: Building Australia's Future)을 발표함⁴¹⁷⁾

- ▶ 호주 정부의 2025~2026년도 예상 수입(revenue)과 지출(expense) 규모는 각각 약 7,503억호주달러(이하 AUD)⁴¹⁸⁾와 7,857억AUD⁴¹⁹⁾임
 - 정부 수입 중 세목별 비중은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3,578억AUD⁴²⁰⁾, 기업 및 자원임대세(Company and resources rent taxes) 1,455억AUD⁴²¹⁾, 상품 및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993억AUD⁴²²⁾ 순이었음
 - 지출 분야에서는 사회보장 및 복지(Social security and welfare) 2,910억AUD⁴²³⁾, 기타 목적(Other purposes) 1,497억AUD⁴²⁴⁾, 보건/의료(Health) 1,248억AUD⁴²⁵⁾ 순으로 비중이 컸음
- ▶ 조세 관련 주요 사항으로는 세율 인하, 세제 혜택 그리고 환급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 2026년 7월 1일부터 18,201⁴²⁶⁾~45,000⁴²⁷⁾AUD 사이의 과세대상 소득구간의 세율을 16%에서 15%로 인하하고, 2027년 7월 1일부터는 해당 세율을 추가로 14%까지 인하할 예정임

책임성 강화임.

417) Department of Finance, "Budget 2025-2026: Building Australia's future," 2025. 3. 25., <https://budget.gov.au/content/overview/index.htm>, 검색일자: 2025. 4. 7.

418)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2조 5,974억원임.

419)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93조 6,473억원임.

420)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15조 8,749억원임.

421)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8조 4,677억원임.

422)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7조 6,689억원임.

423)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6조 9,937억원임.

424)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2조 1,656억원임.

425)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0조 1,821억원임.

426)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06만원임.

427)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72만원임.

- 수소 및 핵심광물 생산(hydrogen and critical minerals production)에 대한 약 137억AUD⁴²⁸⁾ 규모의 세제 혜택(Tax incentive)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음
- 모든 가구와 약 100만개의 중소기업(small businesses)에 대해 2025년 말까지 에너지 요금 감면(energy bill relief)을 연장하고, 지금까지 지급한 50억AUD⁴²⁹⁾의 요금 감면에 더해 약 18억AUD⁴³⁰⁾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임⁴³¹⁾

마 신규 창업자를 위한 캠페인 “Ready for Business” 발표

[조세동향 25-06호]

▣ 호주 국세청은 2025년 5월 26일, 신규 창업자(new small business)가 세금, 퇴직연금(super), 사업자 등록 임무를 초기에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발표함⁴³²⁾⁴³³⁾

▶ 호주는 약 50%의 사업체가 창업 후 3년 이내 폐업하며, 이 중 상당수는 사업 초기에 각종 세무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음

- 향후 수 개월간 호주사업자등록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보유자에게는 ABN 보유자의 의무, 사업 구조, 상품 및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의 등록 및 납부, 고용주의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전송할 예정임
- 다수의 소상공인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함에도 일부는 실수 또는 고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국세청의 캠페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GST 확인 및 납부)** 국세청은 매년 약 80억호주달러⁴³⁴⁾가량의 GST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small business)의 납부 미이행으로 인한

428)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조 976억원임.

429)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조 4,152억원임.

430)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5,894억원임.

431) Department of Finance, “Cost of living : Helping with the cost of living,” <https://budget.gov.au/content/01-cost-of-living.htm#m1>, 검색일자: 2025. 4. 7.

432)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announces additional support for new small business owners,” <https://www.ato.gov.au/media-centre/ato-announces-additional-support-for-new-small-business-owners>, 검색일자: 2025. 6. 12.

433) super란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인 “Superannuation”의 약칭임.

434) 2025년 6월 1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조 883억원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⁴³⁵⁾

- (부업(side hustle)의 과세대상 여부 확인) 현재 약 70만명 이상의 납세자가 직 경제(gig economy) 또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⁴³⁶⁾
- (PAYG(Pay As You Go) 분납제도 활용) 신규 창업자가 창업 직후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신고 시점에서 고액의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음⁴³⁷⁾
- ▶ 월 데이(Will Day) 부국장(Deputy Commissioner)은 본 캠페인에 대해 “소상공인이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침(guidance), 수단(tool), 팁(tips)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함

8

뉴질랜드

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세법 통과

[조세동향 25-04호]

- ▣ 뉴질랜드 국회는 2025년 3월 25일, 「2024-25년 비상대응 및 구제조치에 대한 세법」(The Taxation(Annual Rates 24-25, Emergency Response, and Remedial Measures) Bill)을 통과시켰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⁴³⁸⁾⁴³⁹⁾
- ▶ 2018년 이후의 물가 반영 및 스타트업의 인재유치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직원주식 제도(Employee Share Schemes, ESS)⁴⁴⁰⁾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함

435) 모든 소상공인이 GST 납부 대상은 아니나 연간 총수입에서 GST를 차감한 금액이 75,000호주달러(2025년 6월 1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45만 원입) 이상이거나, 택시, 리무진 또는 승차공유(ride-sourc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GST 납부대상자 등록 후 납부해야 함.

436) 호주 국세청은 사업을 수익 창출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으로 보고 있으며, 부업이 사업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국세청 웹사이트(ato.gov.au/areyouinbusiness)를 통해 확인할 것을 권장함.

437) 직원이 있는 사업주가 직원의 임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

438) New Zealand Government, “Tax legislation passed to support growth,” <https://www.beehive.govt.nz/release/tax-legislation-passed-support-growth>, 검색일자: 2025. 2. 28.

439) New Zealand legislation, “Taxation (Annual Rates for 2024-25, Emergency Response, and Remedial Measures) Bill,” <https://www.legislation.govt.nz/bill/government/2024/0073/11.0/versions.aspx>, 검색일자: 2025. 4. 9.

440) 기업의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제공하는 제도

- 직원에게 연간 제공 가능한 주식 총액이 기존 5,000뉴질랜드달러(이하 NZD)⁴⁴¹⁾에서 7,500NZD⁴⁴²⁾로, 제공되는 주식의 시장가치 대비 할인(discount) 허용 한도는 2,000NZD⁴⁴³⁾에서 3,000NZD⁴⁴⁴⁾로 각각 상향되었음
- 해당 개정안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제공되는 주식부터 적용될 예정임
- ▶ 홍수·지진 등의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제공해 왔던 세금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국회를 통한 기존 법률 개정 없이 뉴질랜드 총독(Governor-General)의 행정명령(Order in Council)⁴⁴⁵⁾으로 즉각 시행 가능하도록 비상사태 대응 절차를 개정함
- ▶ 기존의 1학년 등록금 면제 제도(first-year fees free scheme)를 졸업학년 등록금 면제 제도(final-year fees free scheme)로 대체하였음
 - 취약계층(disadvantaged)을 중심으로 한 학습자(learners)의 학업 과정 완수를 장려하고, 졸업자에 대한 보상 및 학습 전체 비용 절감을 위한 목적임
 - 「조세행정법(Tax Administration Act 1994)」 내 신규 조항을 신설하여 국세청장(Commissioner)이 제도를 관리하고 자격 요건을 인터넷상에 공개할 의무가 부여되었음
 - 2025년 1월 1일 이후 학업(study) 또는 훈련(training)을 시작하는 학습자에 해당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최대 12,000NZD⁴⁴⁶⁾까지 적용됨⁴⁴⁷⁾

441)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10만원임.

442)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16만원임.

443)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4만원임.

444)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6만원임.

445) 뉴질랜드 총독(Governor-General)이 주재하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uncil)에 의해 제정되는 일종의 2차 입법(Secondary legislation,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 국회법(Acts of Parliament)을 제외한 뉴질랜드 정부가 법적 효력이 필요한 결정을 집행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수단(main method)임.

446) 2025년 4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85만원임.

447) Teritary Education Commission, "Entitlement - final-year Fees Free," <https://www.legislation.govt.nz/bill/government/2024/0073/11.0/versions.aspx>, 검색일자: 2025. 4. 9.

나 체납세액 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 운영

[조세동향 25-05호]

- ▣ 뉴질랜드 국세청은 2025년 4월 10일, 고객에게 연락하여 체납세액(tax debt)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음⁴⁴⁸⁾

 -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세청이 선정한 외부업체(third-party provider)인 Baycorp을 통해 5,000뉴질랜드달러⁴⁴⁹⁾ 미만의 체납세액을 가진 약 3천명에게 연락 예정
 - 시범사업의 수행업체로 선정된 Baycorp는 국세청과 지난 수년간 해외에 체류 중인 학자금 대출을 성공적으로 회수한 이력이 있음
 - ▶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밝힘
 - 체납세액이 소규모인 사람들 중 상당수가 개별적으로 접촉이 어렵기에 외부 업체의 도움이 필요함
 - 국세청은 벌금(penalties)과 이자의 누적을 방지하고, 체납세액을 비용효율적 방식으로 징수할 방법을 강구하였으며, 외부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체납 문제 해결에 효율적인지 확인하고자 함
 - ▶ Baycorp는 대상자에게 이메일, SMS 및 전화로 연락을 취해 체납세액을 확인하고, 국세청의 셀프서비스 옵션을 안내 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⁴⁵⁰⁾
 - 셀프서비스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납세자는 국세청과 연결됨
 - 시범사업은 2025년 4월 10일부터 5개월 동안 운영될 예정임

448) Inland Revenue, "Pilot for new tax debt service," 2025. 4. 10., <https://www.ird.govt.nz/media-releases/2025/pilot-for-new-tax-debt-service>, 검색일자: 2025. 5. 1.

449) 2025년 5월 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23만원임.

450) 유선을 통해 납세자에게 각종 세무 관련 사항을 지원하는 뉴질랜드 국세청의 서비스

IV 국제기구

1 OECD

가 필라1 Amount B 이행을 위한 가격 자동화 도구 발표

[조세동향 25-01호]

- ▶ OECD는 2024년 12월 19일,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마케팅 및 유통활동의 이전 가격 세제 일부와 관련하여 단순화·간소화된 접근방식을 제공하는 필라1 Amount B와 관련하여 가격 자동화 도구(Pricing Automation Tool)와 요약 자료를 공개함⁴⁵¹⁾
 - ▶ 가격 자동화 도구는 최소한의 데이터 입력만으로 적용 대상자의 Amount B 산정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도록 개발되었으며,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를 위해 단순화·간소화 혜택을 최적화하기 위해 고안됨
 - 가격 자동화 도구는 표준 가격 산정표(Pricing Matrix)의 변경 사항 및 Amount B 조정 기능과 관련된 기타 데이터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개정될 예정임
 - Amount B 지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각 관할국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회계연도 동안 관할국 내 적용 대상자의 범위 내 거래에 대해 Amount B의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수의 포괄적 이행체계의 회원국들이 Amount B의 채택을 여전히 고려 중임
 - ▶ 요약 자료는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Amount B를 적용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를 포함하여 Amount B의 메커니즘에 대한 개요를 제공함

451) OECD, "International tax reform: Release of new tools for the implementation of Amount B relating to the simplification of transfer pricing rules," https://www.oecd.org/en/about/news/announcements/2024/12/release-of-new-tools-for-the-implementation-of-amount-b-relating-to-the-simplification-of-transfer-pricing-rules.html?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9-12-2024&utm_content=Read%20more&utm_term=ctp&utm_medium=email&utm_source=Adestra, 검색일자: 2025. 1. 13.

- 1단계는 OECD 이전가격 지침 제1장에서 적절하게 설명된 적격 거래가 Amount B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적격 거래를 일련의 정성적·정량적 기준에 따라 평가함
- 2단계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표준 가격 산정표 적용 등으로 구성된 Amount B 체계를 적용하여 Amount B 범위 내 적격 거래의 가격을 책정함

나 필라2 경과적격지위 목록 및 신고서 교환 MCAA 등 발표

[조세동향 25-02호]

- ▶ OECD는 2025년 1월 15일,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하여 경과기간 동안의 국내 입법안 적격 지위 목록과 관련 행정지침을 발표함⁴⁵²⁾
 - ▶ “경과적격지위 중앙입법안목록(Central record of legislation with transitional qualified status)”은 IIR(소득산입규칙), DMTT(소재국추가세) 또는 QDMTT(적격 소재국추가세) 세이프하버 입법을 완료하여 경과기간의 적격 지위에 해당하는 국가의 목록임⁴⁵³⁾
 - 향후 필라2 전체 입법 이행은 상호검토(peer review)에 의할 예정이지만, 2024년 BEPS 포괄적 이행체계는 다국적기업그룹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간소화된 절차로서, 경과기간 동안의 국내 입법안 적격 지위를 확인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함⁴⁵⁴⁾

452) OECD, “Global minimum tax: Release of compilation of qualified legislation and information filing and exchange tools,” https://www.oecd.org/en/about/news/announcements/2025/01/global-minimum-tax-release-of-compilation-of-qualified-legislation-and-information-filing-and-exchange-tools.html?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016-01-2025&utm_content=Read%20more&utm_term=ctp&utm_medium=email&utm_source=Adestra, 검색일자: 2025. 2. 7.

453)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Administrative Guidance on the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Central Record of Legislation with Transitional Qualified Status,”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global-minimum-tax/administrative-guidance-globe-rules-pillar-two-central-record-legislation-transitional-qualified-status.pdf>, 검색일자: 2025. 2. 7.

454) OECD, “Qualified Status under the Global Minimum Tax - Questions and Answers,”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global-minimum-tax/qualified-status-under-the-global-minimum-tax-questions-and-answers.pdf>, 검색일자: 2025. 2. 7.

-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한 국가로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목록은 향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임

▶ 포괄적 이행체계는 목록 발표와 연계하여 필라2 모델규정 제9.1조에 대한 행정지침을 추가로 제공함⁴⁵⁵⁾

- 행정지침은 일반정부에 의하거나 2021년 11월 30일 이후에 제정된 신규 법인세 규정에 따라 발생한 특정 이연법인세 자산을 다국적 기업 그룹의 실효세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임

▣ OECD는 2025년 1월 15일,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GIR) 개정안, GIR 제출과 교환을 위한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 및 XML 스키마(사용자지침) 등 공조 행정을 위한 도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GIR 개정안⁴⁵⁶⁾은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GloBE 규칙에 따른 과세권이 없는 관할국의 경우에 적용되는 간소화 및 명확화 내용을 담음⁴⁵⁷⁾

- 부록은 정보 교환을 통해 GIR을 수신할 것이라는 통지를 관할국이 다국적 기업 그룹에 요청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함

- GIR 개정안과 관련하여 GloBE 모델규정 제8.1.4조 및 제8.1.5조에 대한 추가 행정지침을 발간함⁴⁵⁸⁾

▶ GIR MCAA는 조세문제 상호행정협약에 따른 GIR 자동교환에 대한 요건과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GIR XML 스키마는 공통 전자 형식에 GIR의 내용과 구조를 반영

455)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Administrative Guidance on Article 9.1 of the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global-minimum-tax/administrative-guidance-article-9-1-globe-rules-pillar-two-january-2025.pdf>, 검색일자: 2025. 2. 7.

456) GIR은 2023년 7월 최초 발간됨.

457)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GloBE Information Return (January 2025),"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2025/01/tax-challenges-arising-from-the-digitalisation-of-the-economy-globe-information-return-january-2025_b03274ed.html, 검색일자: 2025. 2. 7.

458)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Administrative Guidance on Article 8.1.4 and 8.1.5 of the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January 2025),"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global-minimum-tax/administrative-guidance-article-8-1-4-article-8-1-5-globe-rules-pillar-two-january-2025.pdf>, 검색일자: 2025. 2. 7.

하도록 함⁴⁵⁹⁾

- 추후 GIR 제출 및 교환 전에 적용되어야 하는 데이터 일관성 및 품질에 대한 검증 규정과 관련한 추가 작업이 공통접근 방식(common approach)으로 수행될 예정임

다 BEPS Action 14 상호합의 절차에 대한 상호 검토 결과 발표

[조세동향 25-03호]

- ▶ OECD는 2025년 3월 4일, BEPS Action 14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에 대한 상호검토(peer review) 결과를 발표함⁴⁶⁰⁾
 - ▶ BEPS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2022년 12월 상호검토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에 합의하여 이중과세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시성을 개선하고자 함
 - 새로운 방법론은 의미 있는 MAP 경험이 없는 관할국에 대해 간소화된 상호검토를 적용하고, 의미 있는 MAP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관할국에 대해서는 정식 상호검토를 적용하도록 함
 - 간소화된 상호검토의 주요 목적은 MAP 경험이 거의 없는 관할국에 대한 상호검토를 통해 보다 강화된 MAP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로 대상 관할국은 MAP 도입을 위한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할 의지를 보여줌
 - ▶ OECD는 2025년 3월 도미니카, 아이슬란드, 몬테네그로, 페루 등 10개국에 대한 간소화된 상호검토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상호검토 진행 계획에 따라 각 관할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459)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the Exchange of GloBE Information (January 2025),"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global-minimum-tax/multilateral-competent-authority-agreement-exchange-of-globe-information.pdf>, 검색일자: 2025. 2. 7.

460) OECD, "Inclusive Framework on BEPS shows progress in making dispute resolution more effective," https://www.oecd.org/en/about/news/announcements/2025/03/inclusive-framework-on-beps-shows-progress-in-making-dispute-resolution-more-effective.html?adestra-project=OECD%20Tax%20News&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06-03-2025&utm_content=BEPS%20Action%2014%20-%20Web%20announcement&utm_term=ctp&utm_medium=email&utm_source=Adestra, 검색일자: 2025. 3. 10.

라 필라1 Amount B 관련 통합 보고서 발행

[조세동향 25-04호]

- ▣ OECD는 2025년 2월 24일, 필라 1 Amount B 이전가격 보고서와 관련 주제에 대해 2024년 발표된 자료를 포괄하는 통합보고서를 발행함⁴⁶¹⁾
 - ▶ 해당 보고서는 2024년 2월에 발행된 Amount B 이전가격 보고서⁴⁶²⁾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2024년 6월 발표된 추가 지침⁴⁶³⁾과 2024년 9월 발표된 모델 CAA⁴⁶⁴⁾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를 포함하며, 2024년 12월 발표한 Amount B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와 수익 계산 자동화 도구⁴⁶⁵⁾는 포함하지 않음
 - ▶ Amount B는 저역량 관할국의 필요에 초점을 두고 기본 마케팅 및 유통활동에 대한 정상가격 원칙 적용을 위한 간소화되고 효율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것임
 - ▶ 본 통합 보고서는 기존 발간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참조하기 용이하도록 단일 문서로 정리한 것임

마 GloBE 모델규정 통합 주석서 및 사례 보고서 업데이트

[조세동향 25-06호]

- ▣ OECD/G20 BEPS 포괄적 프레임워크(Inclusive Framework on BEPS, IF)는 2025년 5월 9일,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모델규정에 대한 통합 주석서(Consolidated

461) Taxnotes, “OECD Issues Consolidated Amount B Transfer Pricing Report,” 2025. 3. 3., <https://www.taxnotes.com/tax-notes-international/transfer-pricing/oecd-issues-consolidated-amount-b-transfer-pricing-report/2025/03/03/7r9q5>, 검색일자: 2025. 3. 27.

462) 2024년 2월 발행된 기존 Amount B 보고서는 마케팅 및 유통활동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는 접근법에 관한 내용으로 각 관할국은 적격 기준 유통업체에 대한 Amount B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463) 2024년 6월 추가 지침은 관할국에 관한 정의의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Amount B의 포괄적 이행 체계에서 정치적 공약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대상 관할국의 정의를 포함함.

464) 2024년 9월 발표된 모델 CAA는 양자 간 조세조약이 체결된 관할국의 Amount B 이행에 도움을 주며, 포용적인 틀을 가진 국가들은 모델 CAA를 관할국이 아닌 경우로 범위 확장이 가능하여 잠재적 이중과세를 완화하거나 국내법 및 행정관행과 일치시키는 데 필요한 메커니즘을 제공

465) 2024년 12월 기업 및 과세당국이 Amount B를 구현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Amount B의 메커니즘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요를 제공하고, 데이터 입력을 기반으로 Amount B의 수익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자동화 도구를 발표

Commentary) 및 사례(Illustrative Examples) 보고서를 업데이트하여 발간함⁴⁶⁶⁾⁴⁶⁷⁾

- ▶ 이번 업데이트는 2024년 4월 25일에 발표된 이전 버전 이후 IF에서 승인된 추가 행정 지침(Agreed Administrative Guidance) 문서를 반영함
- ▶ 2023년 버전을 기반으로 최근 정책 명확화를 반영하고, 각국 과세당국과 다국적기업(MNE)의 GloBE 규칙 이행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 확장된 조문별 가이드 외에 2025년 버전에는 ‘부록 B(Annex B)’가 신설되어 2025년 3월 31일 기준 각 관할권별 적격 소득산입규칙과 적격 소재국추가세 법령을 제시함
- ▶ 아울러 2025년 5월 9일에는 2022년 3월 14일과 2024년 4월 25일에 발표된 사례 보고서(Illustrative Examples document)⁴⁶⁸⁾도 업데이트되어, 이후 발표된 행정 지침에 따른 새로운 사례들이 포함됨
 - 사례는 주석서의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니며, 참고용 사례로만 사용됨

466) IBFD, “OECD - OECD Updates Consolidated Commentary to GloBE Model Rules and Illustrative Examples,” 2025. 5.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5-13_o2_1.html, 검색일자: 2025. 5. 27.

467)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Consolidated Commentary to the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2025),” 2025. 5. 9.,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tax-challenges-arising-from-the-digitalisation-of-the-economy-consolidated-commentary-to-the-global-anti-base-erosion-model-rules-2025_a551b351-en.html, 검색일자: 2025. 5. 29.

468)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Examples,” 2025. 5. 9.,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global-minimum-tax/tax-challenges-arising-from-the-digitalisation-of-the-economy-global-anti-erosion-model-rules-pillar-two-examples.pdf>, 검색일자: 2025. 5. 29.

2 EU

가 미국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최저한세법 개정 검토

[조세동향 25-05호]

- ▣ 유럽연합(EU)은 4월 25일, 미국과의 세제 갈등 완화를 위해 2025년 5월 초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15%)에 대한 지침(Minimum Tax Directive)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⁴⁶⁹⁾

 - ▶ 이번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반발과 EU 기업 및 과세당국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 (미국 세액공제 조정 검토) 미국 세제에 증가성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기업에 대한 EU 최저한세 적용을 완화하고자, 미국의 세액공제 방식에 대한 기술적 조정 또는 미국의 자체 최저세제도(GILTI)에 대한 증가성 인정 방안을 검토 중임
 - (UTPR 규정 개편 또는 예외 연장)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UTPR)의 전면 폐지, 2026년까지 한시 적용 중인 세이프하버(safe harbour) 규정의 영구화 또는 보다 정교한 대안 도입을 논의함
 - (세액공제 관련 OECD 규정 개정 논의) 미국 세액공제가 현재 OECD 규정상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⁴⁷⁰⁾ 해당 기준을 변경하여 실효세율 계산 시 미국 기업의 UTPR 적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임

469) Bloomberg Tax, "EU to Consider Changing Its Minimum Tax Law to Quell US Tensions," 2025. 4. 25.,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KABRJ4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OL3RheC9zZWYyY2gvcmlvZDx0cy8zYzFmYzAwNTA5MjM1ZGRlNzZjNTI2NGU2OTdlYmFmNjJdXQ-0a093a6883561fac01a4f014acb13f6524a1fc3a&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criteria_id=3c1fc00509235dde76c5264e697ebaf6, 검색일자: 2025. 4. 30.

470) 미국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자국 법인세에서 공제(Foreign Tax Credit, FTC)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OECD GloBE 규정상 실효세율 산정 시에는 실제 납부된 세액만을 대상조세(Covered Taxes)로 간주하므로 미국 기업의 FTC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실효세율 계산에서 인정되지 않음. 이로 인해 미국 기업은 실효세율이 15% 미만으로 계산되어 다른 국가의 UTPR 적용 위험이 발생함.

- (EU-미국 제도 간 병존 방안) 미국의 GILTI 제도와 EU의 최저한세 규정 간의 병존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 방식 조율 필요성이 제기됨
- ▶ EU 산업계와 과세당국은 법령의 복잡성 및 행정 부담을 지적하며 간단하고 실효성 있는 세이프하버 설계를 촉구하고 있음
- ▶ 향후 일정으로는 5월 회의 이후 6월 EU 대사급 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안이 제안될 예정이며, 그 외 주요 논의 과제로 다음이 포함됨
 - (이전가격 규범 정비) 2023년부터 계류 중인 다국적기업 간 이전가격 규제의 EU 단일 기준 마련을 재추진함
 - (UN 조세 논의 대응) UN 차원의 국제조세 협상과 EU 조세법 간 중복 여부 검토 및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함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5년 제1호

2025년 6월 27일 인쇄

2025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이 영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주)현대아트컴

ISSN 3058-2059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